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535-01

#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Output  
Evaluation of Korea Rural Industry Policies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용 렬(연구위원)

연구 원: 정 은 미(연구위원)

연구 원: 민 자 혜(초청연구원)





## 요 약

---

이 연구는 농어촌산업화 정책지원사업들의 추진실태와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그레이드된 농어촌산업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1) 농어촌산업화 정책 추진 실태와 성과평가, (2)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안 제시, (3) 농어촌산업화 지원체계의 효율적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함.

향토산업의 성과지표를 비교해 보면, 사업 초인 2009년도에 비해 사업종료년도인 2011년에 참여업체 매출액 50%, 일자리 46%, 참여농가 소득 32%, 수출실적 24%가 증가하였음. 또한 실적 보정 후의 투입대비 성과평가 결과, 사업지구당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55억 원의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음.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미시행지역보다 기업매출액 증가율이 31.4% 더 높았으며, 소득 총액으로 정규직 임금소득 128억 원, 일용직 임금소득 257억 원, 농가소득 48억 원에 해당하는 파급효과를 올렸음.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을 위해 사업 담당 지자체 공무원,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참여기업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9.6%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전체 응답자의 55.7%가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 첫째, 법인격 없는 추진단, 정책 수혜대상 불분명, 추진 주체의 역량 부족 등이 지적되며, 둘째로, 사업화를 위한 향토자원의 경제성 한계, 셋째, 사업비 배분 문제로 사업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정액사업비를 지원하는 문제, 사업내용 고려없이 자본보조사업비와 경상보

조사업비의 획일적 배분, 연차별 국비 배분액 조정의 미흡 등이 지적됨. 넷째로,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 미흡과 광역 지자체의 역할 미비, 다섯째로,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분야의 정책지원 배제 등이 지적됨. 따라서 정책 과제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주체 재정립, 사업비 배분 탄력적 적용,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농어촌산업 관련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등의 대책이 필요함.

농어촌산업정책의 방향은 첫째, 농어촌산업의 단기와 중장기 방향과 목표 정립.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농어촌 산업화 정책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촌 산업화 정책의 연계 및 분리 추진. 셋째,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역량 강화. 넷째, 중앙부처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다섯째, 전후방 연계 산업 강화를 통한 농어촌산업체계 구축. 여섯째, 생산(농)-가공(공)-유통·판매(상)의 효율적 협력을 통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임.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안으로는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제시함. 단기적 관점은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차별화와 연계 강화를 기본 축으로 지자체에 권한 위임 추세 반영하고자 함. 이를 위해 사업내용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수산물, 지역특산물, 지역문화관광자원 등의 유무형자원의 활용한 산업화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함.

사업시행 주체는 해당 시·군을 통한 해당 사업의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 진행하고, 영리법인,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체가 사업을 운영함. 사업기간은 4년부터 5년까지 차등화하고, 사업비 규모: 30억 원~60억 원으로 함. 연도별 사업비 배분은 단계별 추진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차등배분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초기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집중 투자함.

추진체계는 선정과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즉,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선정과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와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음. 제1안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권한 위임하는 것임.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선정, 모니터링, 사후관리까지 총괄 추진하는 체계임. 제2안으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형태임. 이는 중앙정부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선정, 모니터링, 사후관리까지 총괄 추진하는 체계임. 또한 이들 이외에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첫째, 자립화 프로그램 강화해야 하며, 둘째,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간 추진체계 연계·통합 운영이 필요함.

중장기 관점에서는 우선,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업으로 분리 및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목표로 첫째, 농어촌의 우수한 자원 발굴을 통한 농어촌산업 인프라 구축, 둘째, 농어촌의 전후방 연계를 통한 농어촌산업 육성, 셋째, 농어촌의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넷째, 농어촌 역량과 농어촌산업 주체 역량 강화, 다섯째, 농어촌 협력체계 강화로 됨

이를 위해 우선 농어촌산업정책의 이원화가 필요한데,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인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과 기초자치단체단위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이원적 시행이 중요함. 그리고, 효율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첫째, 지역의 역할 강화해야 하며, 둘째,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과 기초자치단체단위사업간의 연계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셋째, 농어촌자원 발굴의 체계화를 시켜야 하며, 넷째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 다섯째, 사업추진 주체의 효율적 법인화(영리법인,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유도, 여섯째,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농어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농공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Output Evaluation of Korea Rural Industry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sound suggestions to the rural industry policy by identifying the areas for improvement concerning the rural industry support policy.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1)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outcome of rural industry policy, (2) present measures for implementing the second indigenous loc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and (3) suggest efficient ways to support rural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n the performance of the indigenous loc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it was found that sales of participating companies in the project have increased by 50% in 2011 from 2009 and jobs increased by 46% during the same period. The income of participating farm households has increased by 32% and exports increased by 24%. Also, an input-output analysis has shown that each project district has created a plus effect of 2.2 billion won at least to a maximum of 5.5 billion won.

The problems that have surfaced in the indigenous loc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are lack of legal personality for the project implementing group, unclear designation of policy beneficiaries, the implementing group's lack of capability, and limited economic feasibility of indigenous resources. Thu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achieve the following goals: reestablishment of project implementing body for indigenous local industry development, flexible distribution of working expenses, system empowerment for continuous post-management, and closing of loopholes or elimination of blind spots in rural industry support policies.

The direction of rural industry policy is set on achieving the following goals: first, establishment of short and mid-and-long term direction and goals for rural industries; second, association and separation of rural industry policies of regional(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s; third, expansion and empowerment of local autonomy; fourth,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and system construction for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ifth, construction of a rural industry system through strengthened linkage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and sixth, invigoration of rural industry through efficient cooperation among farmers, manufacturers, and tradesmen.

As for short-term measures to implement the second indigenous loc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the plan is to feed into the policy trend of delegating power to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ject differentiation and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the indigenous loc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and the regional strategic food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In the mid and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nd link provincial and local projects. To this end, the policy goals should be set as follows: first, construction of rural industry infrastructure through finding of good resources in rural areas; second, rural industry development through linkage of upstream and downstream industries in rural areas; third, increas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fourth, empowerment of rural communities and strengthening of the capability of industry participants; and finally,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system among farmers, manufactures, and tradesmen.

Researchers: Yong-Lyoul Kim, Eun-Mee Jeong, and Ja-Hye Min

Research period: 2012. 5. - 2012. 10.

E-mail address: kimyl@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 1. 연구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 주요내용 ..... 5
- 3. 연구방법 ..... 6

### 제2장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관련 정책

- 1.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의 개념 ..... 8
- 2.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의 동향 ..... 14
- 3.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 관련 정책 ..... 19

### 제3장 농어촌산업화 지원 정책의 메가트렌드

- 1. 농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28
- 2. 국내 농어촌지역 산업화 지원정책의 트렌드 ..... 31
- 3. 일본 농어촌지역 산업화 지원정책의 트렌드 ..... 38
- 4. 농어촌산업정책 방향 관련 이슈 ..... 52

### 제4장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원 현황과 성과

- 1. 지원현황 ..... 55
- 2. 성과분석 ..... 62
- 3.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 77
- 4.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97

### 제5장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 1. 농어촌산업정책의 모습 ..... 105

2. 농어촌산업정책의 목적과 시기별 강조점 .....	115
3. 농어촌산업정책의 방향 .....	118
참고 문헌 .....	156
부록 1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건의사항 .....	161
부록 2 설문조사표 .....	175
부록 3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리스트 비교 ...	185



## 표 차 례

---

### 제2장

표 2- 1.	연도별 전산업 평균 사업체수 추이 .....	15
표 2- 2.	연도별 전산업 평균 종사자수 추이 .....	16
표 2- 3.	연도별 제조업 평균 매출액 추이 .....	17
표 2- 4.	연도별 평균 GRDP 추이 .....	18
표 2- 5.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실적 .....	20
표 2- 6.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 예산 .....	21
표 2- 7.	농어촌산업화 관련 정책 종합 비교 .....	26

### 제3장

표 3- 1.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40
표 3- 2.	일본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의 종류 .....	46

### 제4장

표 4- 1.	분석대상 사업 및 유형 구분 .....	57
표 4- 2.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	60
표 4- 3.	유형별 예산액 및 집행액 .....	61
표 4- 4.	지역별 예산액 및 집행액 .....	62
표 4- 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	64
표 4- 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 .....	66
표 4- 7.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정규직) .....	66
표 4- 8.	향토산업육성사업 특성화지표 성과 .....	70
표 4- 9.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성과 .....	74
표 4-10.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역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 .....	75

표 4-1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따른 임금소득과 농가소득 효과 .....	76
표 4-12.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 .....	76
표 4-13.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1순위) .....	91
표 4-14.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	95
표 4-15.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 시 문제점(1순위) .....	99
표 4-16.	향토산업육성 산업화 현황 .....	101

## 제5장

표 5- 1.	농어촌산업정책의 정책적 범위 .....	106
표 5- 2.	5+2 광역경제권과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 비교 ..	110
표 5- 3.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비교 .....	114
표 5- 4.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공간적 차별화 ...	115
표 5- 5.	포괄보조사업 자율시행방식으로 변경시,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시행 준비 여부 .....	129
표 5- 6.	자립화방안 수립의 실효성 여부 설문조사결과 .....	133
표 5- 7.	2011년에 종료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의 법인화 실태 ....	147
표 5- 8.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개최 시 도움 정도 .....	154

## 그림 차례

---

### 제2장

그림 2-	1. 농어촌산업의 개념도 .....	14
-------	---------------------	----

### 제3장

그림 3-	1. 농업·농촌의 변화 .....	29
그림 3-	2. 농어촌산업정책 개요 .....	32
그림 3-	3. 농어촌산업정책의 전개 .....	36
그림 3-	4. 일본 「농업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구조 비교 .....	39
그림 3-	5. OECD 국가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53

### 제4장

그림 4-	1. 산업 유형별 지원 현황 .....	58
그림 4-	2. 지역별 사업지원 현황 .....	59
그림 4-	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추이 .....	63
그림 4-	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유형별 평균 .....	64
그림 4-	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일자리 추이 .....	65
그림 4-	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 유형별 평균 .....	65
그림 4-	7.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참여농어가 소득 .....	67
그림 4-	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농어가 소득 유형별 평균 .....	68
그림 4-	9.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의 연도별 수출실적 .....	69
그림 4-	10.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의 수출실적 유형별 평균 .....	69
그림 4-	1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방법 .....	71
그림 4-	1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성과 .....	72
그림 4-	1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 .....	78

그림 4-1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부문별 지역 발전 기여도 .....	78
그림 4-15.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비의 적절성 .....	79
그림 4-16.	사업비의 적절한 규모(부적절에 응답 시) .....	80
그림 4-17.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기간의 적절성 .....	80
그림 4-1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	81
그림 4-19.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 .....	81
그림 4-20.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 .....	82
그림 4-2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	83
그림 4-22.	공모제 방식의 적절성 .....	84
그림 4-23.	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	84
그림 4-24.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	85
그림 4-25.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업무부담 .....	86
그림 4-26.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적절성 여부 .....	86
그림 4-27.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업무부담 .....	87
그림 4-28.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적절성 여부 .....	87
그림 4-29.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업무부담 .....	88
그림 4-30.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 .....	89
그림 4-31.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1순위) .....	90
그림 4-32.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문제점 .....	90
그림 4-33.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 .....	92
그림 4-34.	완전자율 방식을 시행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 .....	92
그림 4-35.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	93
그림 4-36.	향토산업 코디네이터 역할 전담 실무 조직 .....	93
그림 4-37.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실효성 여부 .....	94
그림 4-38.	인센티브 방식의 도움 정도 .....	95
그림 4-39.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활용된 향토자원의 분류도 .....	100

그림 4-40. 식품류 향토자원의 산업화 정도 .....	101
---------------------------------	-----

## 제5장

그림 5- 1. 농어촌산업정책 기능과 정책투입 기간 .....	116
그림 5- 2.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의 시기별 강조사항 .....	118
그림 5- 3. 중앙정부 중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	128
그림 5- 4.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	132
그림 5- 5. 사업추진주체의 법인화 예시: 영리법인화 .....	146
그림 5- 6. 농상공 등 제휴촉진법의 개요 .....	153
그림 5- 7. 중장기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	155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 □ 농어촌사회 변화에 따른 농어촌 산업화 지원정책 재정비 필요

-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비농어가 인구 비중 증가,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등 농어촌 지역의 여건 변화 및 포괄보조제도 도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재정비 필요
-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속도는 둔화되지만 고령화 지속
  -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되어온 산업화의 물결은 농가인구의 대량 이동을 발생시키면서 농가 경영주의 노령화와 가구원수의 감소, 영농 승계자의 감소와 이로 인한 농가 호수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또한 이로 인해 농촌의 인구과소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음.
  - 행정구역으로 읍·면부를 합한 농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 인구 대비 18.5%에 머물렀음.

- 그러나 2010년에는 1970년대 이후로 감소하기만 했던 농어촌 인구 변화 추세가 바뀌었음. 2010년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2005년보다 약간 증가한 876만 명을 기록하였음(김정섭 외, 2012).
  - 읍지역의 인구는 1995년 이후로 증가한 반면에 면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였음. 읍 지역 인구는 1990년에 360만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420만 명이 되었음. 면 지역 인구는 750만 명에서 456만 명으로 감소하였음(김정섭 외, 2012).
  - 농어촌 인구 감소 추세는 거의 멈춘 듯하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2000년에 농어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였던 것이 2010년에는 20.6%(김정섭 외, 2012)임.
- 비농어가 인구 비중 증가
- 농가인구의 경우 역시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의 10.8%에서 2005년 7.1%로 급격히 감소하여 10년간 29.3%가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9%(289만 명)로 크게 감소(김병률 외, 2012).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에 따르면 군청 소재지 읍에 소재한 행정리 중 약 48%가 농가 비율이 30% 이하로 집계(수도권과 광역시에 속한 행정리 제외)되는 등 농어촌에도 비농업적 특성을 갖는 마을이 다수
-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 감소(김병률 외, 2012)
-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0.76%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은 5.71%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1.69% 증가하였음.
  -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0년 47.2%에서 2010년 31.4%로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같은 기간 20.6%에서 28.3%로 증가하였음.
- 도농간 소득격차는 확대되다 둔화되지만 소득증가 속도 차이 큼(김병률 외,



2012).

-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수준의 95% 이상이었으나 1995년 이후 도농간 평균소득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2002년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하여 농가소득은 약 73%이었음. 이후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76.7%로 격차가 둔화되었음.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4.6%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 증가속도 격차가 확대되었음.
- 이러한 농촌사회의 부정적 변화는 농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러한 농촌의 퇴행적 현상을 둔화시키거나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강화가 필요함.

#### □ 기존 농어촌 산업화 정책의 추진체계 재편을 통한 농어촌산업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도모 필요

- 갈등 최소화 방안,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적절한 컨설팅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 조사 결과(보도자료, 2011. 11. 29)에 따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 참여자간 갈등’(38%)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35%)이라고 응답하였고, 정부의 중점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53%)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사업구조가 복잡(생산·제조가공·R&D·마케팅 연계)하고, 원료 생산자부터 제조·가공업체, R&D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역량의 확보가 필수이지만, 대부분의 시·군지역이 여기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데 기인

하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산업화 관련 정책의 시너지 효과 배가를 위한 노력 필요
  - 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연계협력하는 시스템 필요.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를 떨치고, 정책간 장점을 살려 농어촌 산업화 증진에 활용 필요.
  -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협력추진체계를 보다 효율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 필요성의 종합

-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심화 방지와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방지를 위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 필요
- 기존 농어촌 산업화 정책의 추진체계 재편을 통한 정책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모색, 농어촌산업 활성화와 지역 활성화 도모 필요
  - 향토산업육성사업 1차 지원목표('13년까지 200개소) 달성에 따른 후속 정책의 마련 필요.
  - '05년부터 추진된 신활력사업의 종료('10년), 광특회계 개편 및 포괄보조제도의 도입('10년부터) 등에 따른 농어촌산업화 지원 정책의 개편 필요
- 이에 따라 농어촌산업정책들이 지역산업 활성화에 확실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정책들의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함.
- 또한,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방향과 포괄보

조 제도의 정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등 농어촌 산업화 지원체계의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1.2. 연구목적

-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은 오래 전 부터 이루어져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과소화, 고령화, 경제력 위축은 계속되고 있음.
- 2004년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차원에서 신 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하였고, 이후 농촌활력증진 사업을 거쳐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포괄보조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으나, 농촌지역산업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많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농어촌산업화 정책지원사업들의 추진실태와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농어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그레이드된 농어촌산업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1) 농어촌산업화 정책 추진 실태와 성과 평가, (2)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안 제시, (3) 농어촌산업화 지원체계의 효율적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함.

## 2. 연구 주요내용

-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관련 정책

-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메가트랜드 분석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분석
-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관련 정책 리뷰, 트렌드 분석, 기존 정책 성과분석 선행연구, 추진체계 등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각 사업의 성과분석: 투입-산출분석, 성과지표 분석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시·군 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농어촌산업 동향 분석
- 인터뷰 및 설문조사
  - 트렌드 분석, 정책성과분석, 방향설정
  - 각 사업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자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 병행
  -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
  - 심층인터뷰는 연구진이 담당
- 사례분석
  - 국내외 사례지역 방문 조사 분석

- 전문가 워크숍
  -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 전문가, 공무원, 사업담당자를 대상
  - 추진체계 방향 설정
  - 새로운 농어촌산업화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와 정보 교환, 과제 상황 점검
  
- 원고위탁
  - 관련 전문가에게 특정분야 원고 의뢰

## 제 2 장

### 농어촌산업의 개념과 관련 정책

#### 1.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의 개념

##### 1.1.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농어촌산업의 개념

-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은 1차적으로 농어촌이라는 공간개념과 산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촌공업
  - 최양부·김형모(1980)는 규범적 정의(normative definition)와 사실적 정의(factual definition)를 통해 농촌공업의 정의를 내리고 있음.
  - 규범적 정의의 농촌공업은 농업 및 농촌지역과 긴밀히 연관된 공업을 말하면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농업생산, 농산물, 기타 농촌의 부존자원, 그리고 농촌주민들과 전후방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실적 정의에서는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제조활동과 제조업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음. 경영주체가 농민이라든가, 전후방연관관계를 맺어야 한다든가 하는 제한요소를 벗어난 개념임.

- 서종혁 외(1986)에서는 농촌공업이란 농촌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적 범역에 입지하고 있는 일체의 제조업이라고 규정하였음. 여기서 농촌지역은 농림수산업이 지역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총칭한다고 보고, 편의상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군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이동필(2001)은 최양부·김형모(1980)와 같은 기준으로 농촌공업(rural industry)을 규범적인 개념(normative definition)과 실제적인 개념(factual definition)으로 구분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을 읍·면·리로 하였고, 농촌공업은 5인 이상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농촌공업이라는 개념은 농어촌산업 중 농촌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지연산업(박석두 외, 2004)
- 지연산업이란 지역내 자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중소·영세기업의 집단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입각하여 역내의 원료와 노동력으로써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기적 생산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연산업을 ①지역 내 업체 입지의 집단성, ②원료, 노동력, 기술, 자본 등 공급체계의 지역성, ③사회적 분업체계, ④중소기업 이하의 규모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지연산업은 원료공급과 노동력 공급을 지역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향토산업(이동필 외, 2007)
- 향토산업을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특성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또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음.
  - 향토산업을 지역성, 문화적 전통성,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특징화 하고 있음. 즉, 향토자원이 가진 지역적 범위와 문화적 전통성에

기초한 동질감을 바탕으로 산업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갖추는 3요소로 구성됨.

- 향토산업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향토자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농어촌산업(이동필 외, 2008)

-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구분
- 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림수산물의 생산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산업부문을, 주로 농산업 및 가공부문과 연관 서비스업에 한정
- 광의의 농어촌산업은 농산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입지하고 있는 모든 2차, 3차 산업을 포함

## 1.2. 외국의 농어촌산업의 개념

○ 미국의 농촌산업 개념

- Robock(1952)은 농촌산업에 대한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농업원료의 활용과 농업활동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 농촌산업을 “농업원료(agricultural raw materials), 임산원료(forestry raw materials), 또는 지역농업시장(local agricultural markets)과 근접 입지할 때 주요 입지 이점을 갖게 되는 산업들”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농촌산업 정의는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것으로, 농업부문의 직접적인 입지영향과 무관한 농촌지역의 산업들은 농촌산업에서 제외하였음.
  - Robock은 미국의 453개의 산업 세분류(4 digit) 항목 중 41개의 항목을 농촌산업으로 구분해내고 이를 다시 농업형 농촌산업(agricultural rural industries), 임업형 농촌산업(forestry rural industries), 농촌 시장형 산업(rural market industries)로 세분화 하였음<sup>1</sup>



- 미국 USDA의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에서는 농촌산업(rural industry)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리는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Briefing Rooms와 Rural Conditions and Trends에서 언급된 농촌산업에 자료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음.
  -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의 Briefing Rooms에서 언급된 농촌산업(rural industry)을 살펴보면 공공부문(public sector), 소비자 서비스(consumer service: 도소매업, 건강사업, 사교육서비스), 제조업(manufacturing), 생산자 서비스(producer services),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농림수산업, 기타 농업연관산업(related industries)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촌에 위치한 모든 종류의 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Rural Conditions and Trends라는 발간물의 “Rural Industry Issue”를 통해서 보면 농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세분류(4 digit)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음. 농촌산업의 제조업은 농산물 가공 제조업(farm-related value-added manufacturing)과 임산물 가공 제조업(forest-related value-added manufacturing)으로 구분하고 있음(ERS, 1998). 그리고 농촌산업의 서비스업은 농가 관련 고용(farm-linked employment) 분야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농가 및 농업 관련 고용(farm and farm-related employment) 부문과 식품 및 섬유 시스템(food and fiber system) 부문으로 세분되고 있음(ERS, 1999). 단, ‘식품 및 섬유 시스템’ 부문은 대도시지역과 비대도시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국내 전체(domestic) 통계만을 제시하고 있음.

○ 영국의 농촌산업 개념

- 영국에서도 농촌산업(rural industry)의 개념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의하

---

1 Robock의 농촌산업 분류에 대한 비판은 Kuhlman, J.M., 1953, “Notes: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5(3), pp.436-438 참조.

고 있는 것은 없음.

-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농업부(DEFRA)에서는 rural busin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림업, 농산물 공급 산업, 농산물 유통, 식품가공, 곡물가공, 농촌관광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 호주의 농촌산업 개념

- 호주 New South Wales의 Great Lakes Council(2006)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농촌산업(rural industry)은 (a)농산물과 같은 1차 생산물(primary products)에 대한 처리 혹은 가공하는 산업, (b)농업에 사용되거나 혹은 1차 생산물에 대한 처리 혹은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공장이나 장비들의 일상적인 역할이나 정비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것은 농업과 관련된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호주의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ZSIC) 체계에 기초하여 농촌산업(rural industries)을 보면, 크게 농업(agriculture), 상업적 어업(commercial fishing), 임업 및 벌목(forestry and logging), 농업에 대한 서비스(services to agriculture) 등 크게 4개 하위 부문으로 구성(Queensland Government, 2005; 2008)하고 있음.
  - 농업에는 원예 및 과수재배, 곡식·면양 및 축산, 낙농, 가금류, 기타 축산, 기타 농작물 재배 포함
  - 농업에 대한 서비스의 예는 양털 깎기, 곡식 및 과일 수확 등
  - 상업적 어업에는 양식업(aquaculture)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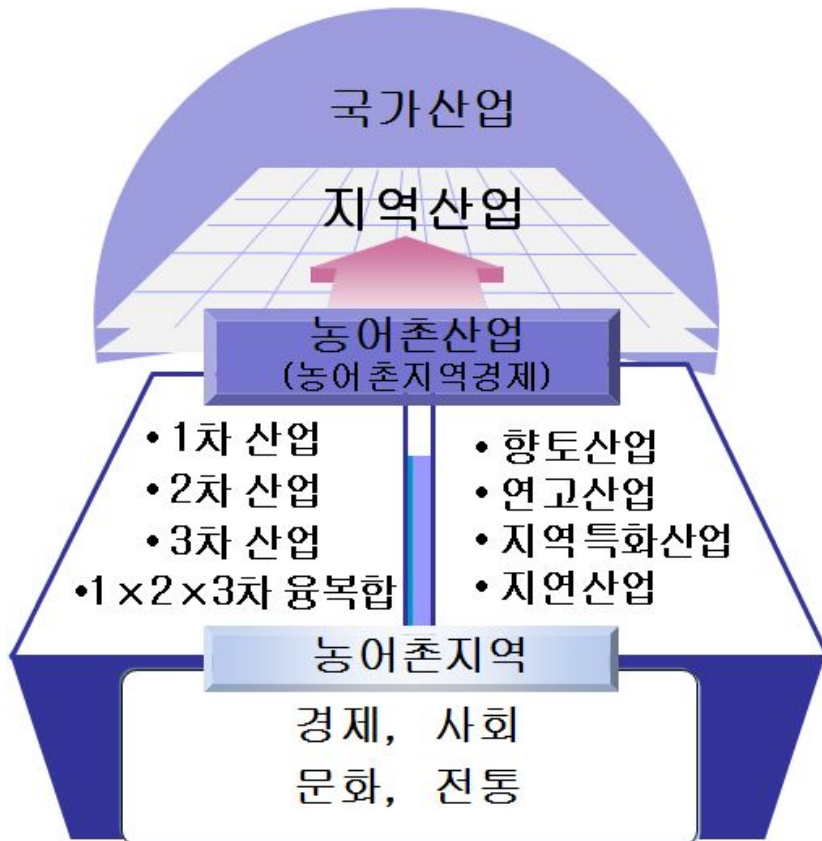
### 1.3. 농어촌산업의 개념화

- 농어촌산업이라는 용어는 농업생산활동이 농촌지역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은 농업관련 혹은 농업 외 산업들이 농촌지역에 증대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강조되어 왔음.

- 그러나 농어촌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에 근접한 개념들은 있어 왔음.
  - 농촌의 공업화 시도에 따른 농촌공업의 개념,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한 지역연고산업과 지연산업,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들이 모두 농촌산업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농어촌산업을 개념화할 수 있음.
  - 농어촌산업이란 농촌(읍면)이라는 지역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적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향토산업, 지연산업, 지역특화산업, 지역연고산업 등을 포괄함)으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rural-based industry)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5항에서는 농어촌산업을 “농어촌의 특산물, 전통문화,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산업의 특성
  - 원료, 자본, 노동력 공급의 탈지역성
  - 경제활동(생산, 유통, 서비스)의 지역성
  - 농어촌에 위치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
  - 농어촌에 입지한 모든 기업활동
  - 향토산업, 지연산업, 지역특화산업, 연고산업, 지장산업 등 농어촌과 관련된 각종 산업유형들을 포괄

그림 2-1. 농어촌산업의 개념도



## 2.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의 동향

-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인한 성과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와 지자체 통계연보 등 통계자료를 통해 농어촌산업의 변화를 살펴봄.
  - 2009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구분하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그리고 GRDP 등의 지표를 통해 변화 추이를 분석함.

- 가설: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GRDP 증가가 높을 것임.

## □ 사업체 수

- 전국 사업체기초통계를 통해 연도별 사업체수 추이를 볼 때, 시·군별 사업체 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평균 132개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역은 평균 233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균 증감율은 -0.15%로, 전체 군지역 평균 증감율이 -0.03%임을 고려할 때 사업체 수의 감소가 더 심각한 군들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됨.

표 2-1. 연도별 전산업 평균 사업체수 추이

단위: 개,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sup>1</sup> ( '09-'07)	평균 증감율 <sup>2</sup> ( '09-'07)
전국	14,064	14,072	14,196	132	0.36
군지역 (A+C)	3,710	3,714	3,739	28	-0.03
사업추진지역(A+B)	9,329	9,393	9,562	233	0.59
사업추진군지역(A)	3,628	3,638	3,642	14	-0.15
사업추진시지역(B)	13,961	14,068	14,373	412	1.22
사업미추진군지역(C)	3,725	3,728	3,756	31	-0.01

주1: 각 지자체별 증감량을 평균

주2: 각 지자체별 증감율을 평균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 □ 종사자 수

- 연도별로 종사자 수 추이를 볼 때, 시·군별 종사자 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시·군·구 별로 평균 4,277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역은 평균 3,560명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균 증감율은 3.6%로, 전체 군지역 평균 증감율 3.6%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 연도별 전산업 평균 종사자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09-‘07)	평균 증감율 (‘09-‘07)
전국	68,723	70,712	72,999	4,277	3.7
군지역 (A+C)	15,608	16,110	16,738	1,130	3.6
사업추진지역(A+B)	41,541	42,751	45,101	3,560	3.8
사업추진군지역(A)	15,511	15,825	16,442	931	3.6
사업추진시지역(B)	62,690	64,628	68,387	5,697	4.0
사업미추진군지역(C)	15,625	16,160	16,791	1,165	3.6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 각년도.

## □ 매출액

- 전국 광업제조업조사 통계<sup>2</sup>를 통해 제조업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시·군별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평균 7,685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역은 평균 7,012억 원 증가하였음.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균 증감율은 15.8%로, 전국 평균 11.1%나 전체 군지역 평균 증감율 14.4%에 비해 증감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러나 이는 평균 증감량 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절대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목적 상 향토자원인 1차 농수산물을 가공·육성하는 경우가 많고, 매출액 자료를 제공하는 공식통계가 한정되어 있어, 광업제조업총조사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통계 자료를 기초로 분석을 시도함.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2-3. 연도별 제조업 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09-‘07)	평균 증감율 (‘09-‘07)
전국	4,072,037	4,798,746	4,840,459	768,516	11.1
군지역 (A+C)	1,354,069	1,611,018	1,617,412	244,794	14.4
사업추진지역(A+B)	2,368,199	2,954,187	3,069,400	701,202	13.3
사업추진군지역(A)	910,482	955,100	1,040,699	130,217	15.8
사업추진시지역(B)	3,552,593	4,578,444	4,717,720	1,165,127	11.1
사업미추진군지역(C)	1,433,064	1,729,448	1,721,540	265,198	14.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

## □ GRDP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군별 통계연보 등을 통해 연도별 평균 GRDP(2005년 기준가격)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기준 평균 1,109억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지역에서는 평균 72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GRDP의 증가가 전국 평균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의 평균 증가율은 1.3%로, 그 외 군지역 평균 증가율 3.3%에 비해 GRDP 증가율이 낮은 지역들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 중 군지역은 2005년 기준년가격으로 비교할 때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오히려 평균 GRDP의 절대값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들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

표 2-4. 연도별 평균 GRDP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07	2008	2009	평균 증감량 (‘09-‘07)	평균 증감율 (‘09-‘07)
전국	4,160,766	4,274,472	4,307,377	110,918	1.6
군지역 (A+C)	1,098,002	1,142,966	1,168,448	69,626	3.0
사업추진지역(A+B)	2,575,873	2,607,347	2,647,924	72,052	1.6
사업추진군지역(A)	1,193,052	1,167,625	1,164,053	-28,999	1.3
사업추진시지역(B)	3,699,415	3,777,120	3,853,570	154,155	1.8
사업미추진군지역(C)	1,080,841	1,138,513	1,169,241	87,190	3.3

주: GRDP는 2005년 기준가격 적용

자료: 통계청, 시·군통계연보, 각년도.

#### □ 가설의 기각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상향식 공모사업임. 따라서, 지역의 역량과 지역경제력이 강한 지역이 많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설정했던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지역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GRDP 증가가 높을 것” 가설은 기각
  - 사업체 수의 평균 성장률, 종사자 수의 증가량, 매출액의 증가량, GRDP의 평균 증가율에 서 모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한 군지역이 실시하지 않은 군지역보다 낮았음.
- 이는 외형적인 지역경제의 성장이 큰 지역이 상향식 공모방식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더 많이 선정될 것이라는 편견을 깨는 것임.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같은 공모제 사업에 더 열의가 있으며, 사업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줌.



### 3. 농어촌산업(rural industry) 관련 정책

#### 3.1. 농림수산식품부

##### 3.1.1. 향토산업육성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학·연·관 등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지원계획은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는 것으로 목표로, 매년 30개 사업을 시행함.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로, 3년간 총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임.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등이며,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규정함.
- 추진절차는 전전년도에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농식품부에서 대상자원을 선정한 후, 전년도에 사업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을 최종확정하여 3년간 사업을 추진함.
- 지원내용은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와 생산기반 조성 등 H/W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시행에 있어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 2012년 현재 30개 사업에 총 40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표 2-5.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실적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대상(개소)	169	19	30	30	30	30	30
예산(억원, 국고)	1,578	43	90	286	344	406	409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어촌산업팀 내부자료, 2011

### 3.1.2.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포괄보조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림수산물부 지역개발과와 각 시·도에서 주관하며,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이며, 시행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됨.
-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농공단지는 정액지원, 세부내역 사업별로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을 결정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이므로 선정절차는 사업자가 사업을 신청한 후, 지자체에서 선정 및 예산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됨.
- 지원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사

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필요로 함.
- 지원실적으로는 2012년 기준 총 2,03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

표 2-6.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 예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2011	2012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35,580	243,477	203,095
〈지역개발계정〉	221,914	230,588	192,923
〈제주계정〉	13,666	12,889	10,1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내부자료, 2011

### 3.1.3.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 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배경 하에, 산·학·연·관 주체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 가용자원(지역 특화품목)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지방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주관하며, 시행절차는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해당 지자체의 선발과정을 거쳐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 사업 규모 및 기간은 시범사업('05~) 20개소, 본사업('08~) 22개소, 광역사업('09~) 12개소가 운영되며, 기본 3년/격년제로 시행, 평가 후 1-2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지원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50%로 구성됨.

## 3.2. 지식경제부

### 3.2.1.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 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관기관으로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3개 이상의 참여기관의 참여가 필수조건임.
- 선정절차는 사업계획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과 지역에서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중앙 단위에서 사업계획 검토 조정을 거친 후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2011년 사업부터는 지역에서 기획·평가·관리까지 모두 시행하고 있음.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 추진(3년 선지원후 주관기관

을 영리법인화 시행),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3.2.2.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음.
-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줌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추진체계는 지자체에서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을 거쳐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며, 특구위원회에서는 추후 운영 평가를 담당함.
- 현재 추진중인 지역특구는 전국 148개로,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과 연계됨. 현재 규제특례(59개 법률, 금번 5개 신규 특례 포함)는 일반적인 규제특례 61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53개,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15개로 구성됨.
- 특구지정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선정·기획시 인센티브 부여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3.3. 농어촌산업화 관련 정책 시사점

- 지역 자율성 확대를 지향
  - 정책 집행 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
  - 포괄보조사업 시행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혁신 시도
  - 지역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선진지 견학, 학습활동 등의 소프트웨어적 사업내용을 일정 비중 투자토록 유도
  - 참여자간 사업단을 만들고, 하부에 운영위원회, 실무추진단, 사무국을 두게 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 지역의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 도모
  -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전후방 연계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
  -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산업화는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 3차 산업이 융복합화 되도록 유도
  
-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산업 정책 수행
  - 신활력사업을 필두로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짐
  - 포괄보조사업을 통해 모든 시·군이 재량으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호를 열어 줌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사업 분리 추진 미흡
  - 사업 시행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공간단위가 중첩되면서 오는 비효율성 존재
  - 일부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공간적 범위를 차별화해 시너지를 유도하기도 함

- 관련 부처간 협력 중요
  - 농어촌산업 분야의 정책을 주로 수행하는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의 협력은 매우 중요
  - 두 부처의 사업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수행될 경우,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해 시너지 발휘 필요

표 2-7. 농어촌산업화 관련 정책 종합 비교

	향토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주무부처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부	지경부	지경부
사업기간	2007~	2005~2007(1기) 2007~2010(2기)	2010~	2005~	2004~	2004~
사업목적	농어촌지역에 부존(賦存)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증진 및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학·연·관 등 사업주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	주민, 지자체, 외부의 혁신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인재 육성, 네트워크 결성, 지역산업 육성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도모	-중앙정부 주도의 평균적 농어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어)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학·연이 주도하는 기술과 경영이 융합된 시스템 농업 구축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수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방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소득 증대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전국적으로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줌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효율성 제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사업주관: 시·도지사 -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지자체 및 지역혁신협의회 -RIS(지역내 주민, 기업, 연구소, 대학, NGO, 언론 등 산·학·연·관 지역혁신 주체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시행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복수 시·군, 시·도의 농업산업클러스터 사업단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지자체
추진절차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작성제출(지자체)→자체평가 실시 후 농식품부 제출(시·도)→단계별 심사·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통보, 세부실행계획수립(농식품부)	사업계획수립(신활력지자체)→사업계획의 평가 및 수정·보완(해자부·균형위·공동추진단)→사업추진(신활력지자체)→사업실적 평가(자문위·공동추진단)	시·도자율편성사업(사업신청(사업자)→선정 및 예산신청(지자체))	사업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해당 지자체 선발과정→농식품부 제출→지자체별 사업계획을 전문평가단 구성, 선정	사업계획 공고→사업계획서 제출→평가위원회 개최(지역)→사업계획 검토 조정(중앙)→협약 체결	특구지정 신청 및 특구계획 제출(지자체)→특구계획 승인 및 지정(특구위원회)→특구 운영(지자체)→특구 운영평가(특구위원회)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차부담 50% -3년간 추진단별 30억원 이내	-낙후도에 따라 차등지원 -신활력사업 전체에 대한 포괄지원	국고 50%, 지방비 50%(농공단지 제외 지원)	-국고 50%, 지방비 50% -단, 시설비는 차부담 20%	-국비출연금의 15~30%이상(현금 포함) 매칭 부담 -과제당 국비 6억원 이내의 지원(총 3년 이내)	별도 예산 지원 없음



	향토산업육성사업	신활력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내용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지원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 -전통적인 농어업자원이 전래기술·문화·관광 자원자원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S/W 개발 중심이 되며 H/W 사업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는 낙후성기준과 리적인 연관 필요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어촌체험·관광 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75%) -S/W분야(브랜드 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조직 구축, R&D, 홍보 및 공동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H/W분야(공동이용시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중심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적으로 허용	-전국 148개,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
사업비	'09년까지 418억원 '10년 345억원, '11년 406억원, '12년 409억원	-1기: 낙후도에 따라 70개 시군에 20억~30억원 차등 지원 -2기: 기본 사업비 19억~29억원 차등 지원 평가 후 우수시군 20여 곳에 최고 10억 사업비 추가 지원	'09년까지 4,801억원 '10년 2,356억원, '11년 2,435억원, '12년 2,031억원	~'08년 770억원, '09년 256억원, '10년 324억원, '11년 280억원	-8년간 총 6,981억원 -'10년 537억원, '11년 586억원	별도 예산 지원 없음
지원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농어촌정비법 제72조	-신활력지역 발전구상('04.7.15)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국가균형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추진),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사업특징		'08년 2기 신활력사업은 유사정책사업과 통합,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개편·운영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하여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토목 건축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 필요	-구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사업	'11년 사업부터 지역에서 기획·평가·관리 시행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 추진(3년 선지원후 주관기관을 영리법인화 시행)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 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 제시	-현재 규제특례(59개 법률, 금번 5개 신규 특례 포함)는 일반적인 규제특례 61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53개,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15개로 구성

## 제 3 장

### 농어촌산업화 지원 정책의 메가트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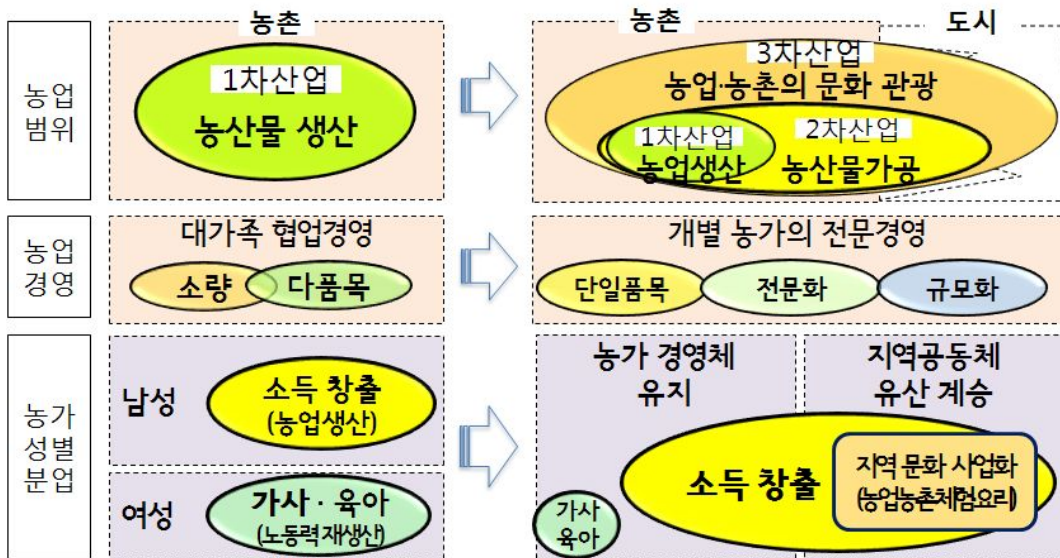
#### 1. 농업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농업의 범위는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 산업에서 농산물 가공과 판매라는 2차 산업과 농업·농촌 문화의 체험과 관광이라는 3차 산업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그림 3-1).
  - 농업의 범위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확대하는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농업의 일반적인 추세임.
  - 특히, 개방농정을 실시하는 국가라면,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농업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2~3차 산업의 장려를 통해 농업인구를 유지하려는 농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업생산이 과거 대가족과 마을공동체의 협업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다품목 소량 생산이었다면, 오늘날은 개별농가의 전문경영으로 단일품목을 전문화하고 규모화하는 농업경영 방식으로 변화함.
- 오늘날 농업의 변화는 주체의 범위와 활동 영역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농업에서 농업생산의 보조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여성농업인이 오

늘날에는 농업의 2~3차 산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사회적 독립의 기회로 삼고 있음.

- 여성농업인이 농업에서 2,3차 산업화의 주체로서 농업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속성인 보살핌과 상호배려의 능력이 2~3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요소가 되고 있음.

그림 3-1. 농업·농촌의 변화



- 산업적인 관점에서 농업의 변화를 해석하자면, 농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가공, 유통 및 판매, 체험 및 관광 등 농업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재조합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농촌의 변화에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주체를 발굴하며 지역농업에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모든 활동이 농촌산업화의 핵심 과제임.
  -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별 농업경영과 농산물가공~판매~관광에 걸쳐 지역농업 관련 주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에서 원활히 순환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미함.

○ 농어촌지역산업화의 원동력을 공급측면에서 찾아보면,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중소규모 농가나 고령 또는 20~30대 신규 진입자는 농업인구의 87%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줄곧 농업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었음 (통계청, 2012)<sup>3)</sup>. 그러나 이들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다품목 소규모 생산에 여전히 참가하여 총 생산량의 30%를 생산하고,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고유의 맛을 유지·보전하고 있음. 이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소속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능동적인 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귀농·귀촌인구가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들은 도시에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므로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여 이용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기존 농어촌 인구에게 부족한 정보력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농업에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해 줄 주요 인적 자원임.
- 셋째, 산업 전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차원에서 관련 또는 비관련 다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융합화가 진행 중임. 기존 산업에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둔화되고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함.

○ 농어촌지역산업화의 원동력을 수요측면에서 찾아보면, 고품질 다양성, 안전성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농식품의 사용가치가 중시되는 경향임.

- 소비자의 니즈는 편의성, 안전성 추구 등 빠른 속도로 복합화, 다양화되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는 건강과 웰빙 추세에 따라 재래 방식의 농식품 기술이 상품 관련 아이디어와 창조적으로 재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

3) 그동안 농업정책의 대상은 경영규모가 중규모 이상의 농가이거나 40~50대 전문농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비율은 전체 농가 중 13%에 불과함. 이는 농산물판매 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농가 비중이 전체 농가의 13%라는 사실에서 유추함.

출하는 것이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식품은 농업기술 성숙과 경쟁 격화로 새로운 농식품, 서비스의 창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식품의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될수록 슬로우푸드의 발전 가능성은 커지고 전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며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가 각광을 받음. 그에 따라, 단일품목의 대량생산보다 다품목 소량 생산이 갖는 장점이 드러날 기회가 됨.

## 2. 국내 농어촌지역 산업화 지원정책의 트렌드

### 2.1. 지원정책의 특징과 경향

#### ○ 지역산업정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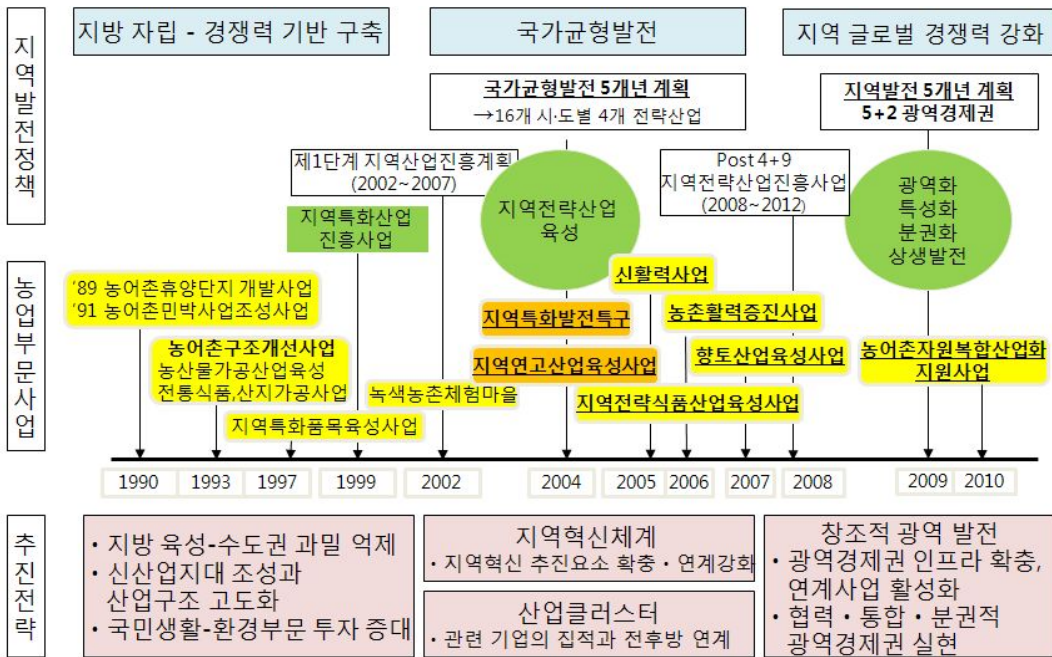
- 지역산업정책이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선별적 지원,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산업인력 양성, 지역의 기업유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우리나라에서 지역산업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로 2009년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임.

#### ○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어촌산업정책이 시행됨.

-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경제가 고도성장하였으나 농공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그 결과 농어가 소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농어가의 소득증

대를 위한 정책 사업이 실시됨.

그림 3-2. 농어촌산업정책 개요



-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공업을 유치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원함. 1984년 10월 7개소의 시범 농공단지를 지정한 이후 1990년까지 전국 농어촌지역 126개 시·군에 총 220개소가 지정되었고, 2011년 12월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에 430개소(조성완료 360, 조성중 51, 미개발 19)가 있음.

○ 1989년 GATT의 BOP조항 졸업<sup>4)</sup>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

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Balance of Payment : 국제수지)란, GATT에 가입한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제수지 사정이 어려운 국가에 한해 잠정적으로 수입제한을 허가하고 있

방이 시작되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1989년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 1991년 농어촌민박조성사업을 실시함.

- 1980년대는 경제의 외부환경이 변하면서 나타난 경제호황과 그로인해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함. 1970년과 비교하여 1990년에 실질임금은 4배 정도 상승했는데 노동생산성 지수는 7배나 올랐음.
  -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으로 우리 사회 중산층(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 상층)의 물질적 기반을 향상시켰고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은 1990년대 소비의 다양성을 선도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
  - 이러한 추세에서 도시 중산층의 여가 생활의 일환으로 관광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농어촌지역도 관광지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농외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1993년 UR 타결 및 1994년 WTO 협정의 체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개방농정에 돌입하면서 농업구조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생산 외에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이나 전통식품, 산지가공산업 육성 사업을 실시함.
- 농업구조조정 기조는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규모화, 전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반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함.
  - 특히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여성일감맞기사업, 전통식품 육성 등 여성농업인의 장점인 농산물 가공에 소규모 지원을 시작함.

---

다. 수입제한 국가는 2년마다 수입제한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BOP 협의회와 협의하고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하면 즉시 수입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규정한 것이 GATT 18조 B항이다. 독일은 1957년, 일본은 1964년 BOP조항을 졸업했다.

- 1999년부터 지역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산업정책이 도입됨.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원동력으로 ‘지역특화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지역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전개됨.
  - 농어촌에서 지역특화품목은 기존에 형성된 주산지 생산의 개념을 확장하여 생산 외에도 가공, 유통, 판매를 지역에서 총괄하여 농어촌지역의 부가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음.
  
- 2002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며 16개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을 지원하였고, 2004년 지역혁신의 추진요소를 확충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지역혁신체계와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후방을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함.
  - 농어촌지역은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필두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외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농촌관광을 적극 추진함.
  - 2004년 신활력사업,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2007년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추진하기 시작함.
  - 농어촌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은 그 대상이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대부분인데, 기존 농식품 생산~가공~유통~판매에서 다수의 소규모 관계자 또는 주체가 이미 복잡다단하게 결합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농식품산업을 규모화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생산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계열화하는 방법임.
  - 이 시기 농어촌산업화의 주요 정책은 해당 지역에서 소량 생산되는 특화품목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 또는 관광까지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향임.
  -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간 균형 달성,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직접적 격차 해소(정태적 균등화) 전략이었음. 그러므로 하드웨어 인프라(네트워크형 인프라가 아닌 포인트형 인프라)구축사업을 우선시한 반면, 지식창출과 확산, 활용 부문간 조화를 미처 고려하지 못함. 이는 재원 균



등 배분 구조에 따라 지역별 산업구조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었다는 비판도 있음.

- 2008년부터 지역산업화 정책은 낙후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역발전정책의 전략으로 삼음. 또한 지역 간 연계를 강조하여 광역 경제권과 기초 생활권 구상으로 구체화되고 권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성을 제고함.
  - 농어촌산업정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사업인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음.

## 2.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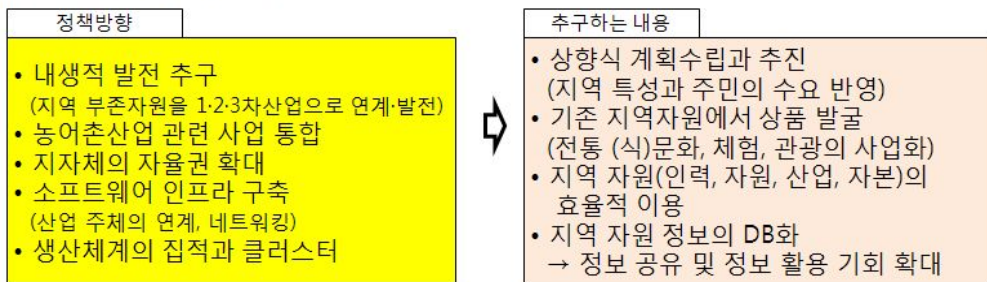
- 농어촌산업정책은 2004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의 정책 양상이 크게 변화함.
  - 2000년 이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본격화 되었음.
  - 농업·농촌에서도 농촌 관광이 증가하며 농산물 가공이나 농산물 직거래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를 묶어 사업화 하는 경우가 발생함.

그림 3-3. 농어촌산업정책의 전개

□ 기존 농외소득 중심 농어촌산업정책



□ 새로운 농어촌산업 육성 정책



자료: 이동필(2010)로부터 재구성

- 200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산업은 하드웨어 인프라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발적 지원이었음.
  - 주요 사업은 농공단지 개발,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및 민박사업,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임. 일부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의 지원사업도 있으나 농어촌산업정책이라기보다 농어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소액 지원됨.
  -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규모가 클수록 지자체의 관리·감독이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주체의 역량과는 별도의 방식으로 사업이 선정되고 지원되었음.
  - 농어촌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농촌지역에서 소득원 개발에 다양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됨.
  - 그러나, 농어촌산업화 지원사업이 연계성 없는 개별단위 사업의 지원이

라는 점 때문에 단발성 사업으로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음. 해당 사업으로 인해 파급되는 농어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원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연계사업을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체계 구축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음.

- 2004년 이후 농어촌산업은 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의 연계를 강조함.
  - 주요 사업은 신활력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등이 있음.
  -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농어촌산업화 정책이 시도되었고 이는 지역 내 주체가 부존자원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활용한다는 내생적 발전을 추구함. 그러므로 농어촌산업화 계획부터 관련주체들이 참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특성과 관련주체의 수요가 적극 반영되도록 함.
  - 농어촌의 해당 사업과 연계하는 모든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연계 사업이 도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함. 이는 지역자원에서 상품을 발굴하거나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단일 사업의 효율성보다 연계 사업의 통합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그러므로 주요 지원 내용은 시설이나 설비 등 하드웨어 인프라 지원보다 산업주체의 연계나 네트워킹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강조함. 이는 지역자원 정보의 DB화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정보 활용의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함.
  -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생산체계의 집적과 클러스터 형태의 산학연이 협력하는 농어촌산업정책을 추구함.
  - 향후 농어촌산업정책의 핵심은 지역 내 관련주체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과 상향식 계획수립, 지자체의 사업 관리와 자율적인 지원자금 집행력이고 이러한 요소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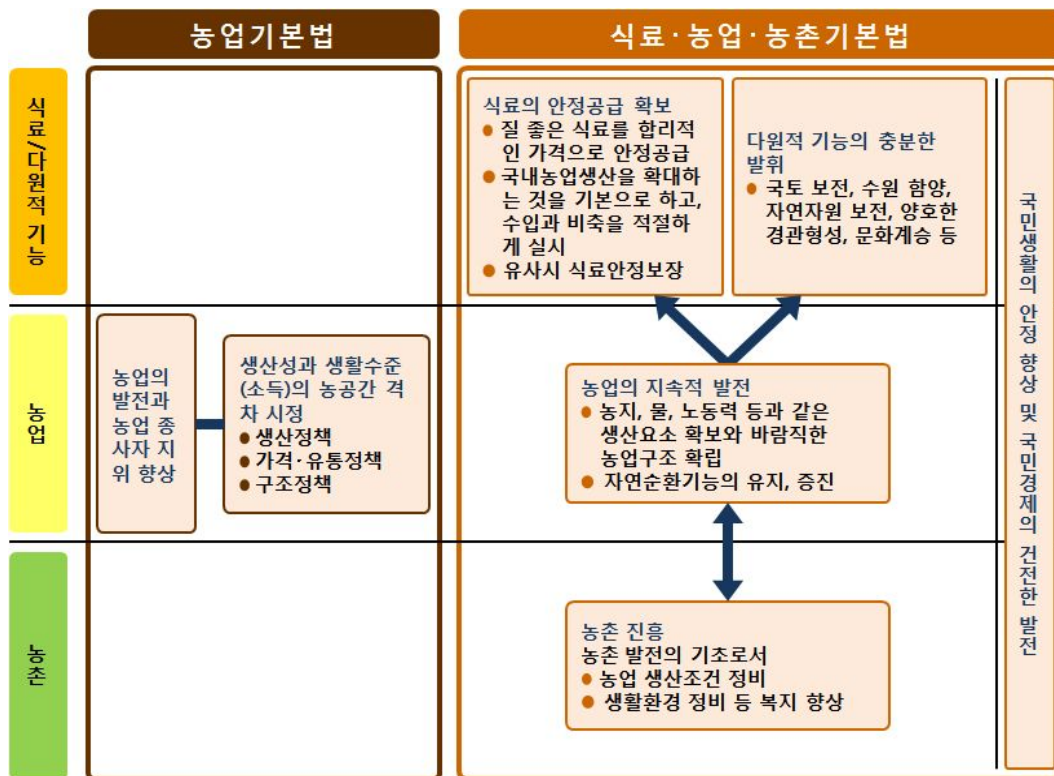
### 3. 일본 농어촌지역 산업화 지원정책의 트렌드

#### 3.1. 일본 농업정책의 전환

- 일본 농업은 UR 협정 이후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2001년에 새로 시작되는 WTO/DDA 농업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1999년 7월 「농업기본법」을 폐기하고,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함.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 영역을 식료·농업·농촌의 3부분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함.
  - 그 목적 달성을 위해 ①식료의 안정적 공급 달성, ②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농촌의 진흥이라는 4가지 기본 이념을 설정하고, 식료·농업·농촌의 3부분에서 실시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범주를 명시함.<sup>5)</sup>
  
- 2010년 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정하도록 규정함(제15조).
  - 기본계획에는 ①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인 방침, ②식료자급률의 목표치, ③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등을 명시함.
  - 2010년의 기본계획은 자민당 농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농촌표’를 모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후 작성한 것이므로 기존 법과 큰 차이가 있음.

5)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食料·農業·農村基本政策研究會, 『食料·農業·農村基本法解説』, 2000, 大成出版社 참조.

그림 3-4. 일본 「농업기본법」과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구조 비교



자료: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白書』, 2010, p.4.

- 2010년 기본계획은 일본농업이 “농업소득의 대폭 감소, 심각한 영농 후계자 부족, 비효율적인 농지 이용, 농산어촌의 활력 저하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지만 농정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반성하며, “식료·농업·농촌정책을 일본 국가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전체가 농업·농촌을 떠받치는 사회”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 주요 정책으로 ①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②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생산체제로의 전환, ③농업의 6차 산업화를 농정의 3대 핵심 사항으로 정하고 식료·농업·농촌정책의 기본방침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함(표 3-1).

표 3-1. 일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00년 기본계획	2005년 기본계획	2010년 기본계획
식료자급률 목표		공급열량기준 식료자급률: 45%(2010년)	공급열량기준 식료자급률: 45%(2015년) 생산액기준 : 45%(2015년)	공급열량기준 식료자급률: 50%(2020년) 생산액기준 식료자급률: 70%(2020년)
실시 할 대 책	식료 안정 공급 확보	식료소비에 관한 시책 비상 시 식량안정보장	식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바람직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식육 추진	식의 안전과 소비자 신뢰 확보 국산농산물 중심으로 식·농의 연대 강화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전개 종합적인 식료안전보장 확립 수입국으로서 식료안정공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교섭에 대응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바람직한 농업구조 확립 기술 개발 및 보급 농산물 가격 형성과 농업경영 안정 자연순환기능 유지 및 증진	바른 농업구조 확립을 위해 핵심 영농자 및 인재 육성·확보 농지의 유효이용 촉진 경영안정대책 확립 다양한 경영발전 대책 추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대 촉진 농산물·식품 수출 촉진 경영발전의 기초 조건 정비 농업생산의 기초 정비 농업생산환경시책 도입 바이오매스자원 이용	호별소득보상제도 창설, 생산 경영관계시책 재정리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등에 의한 소득증대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자의 농업경영 추진 우량농지 확보와 유효이용 촉진 농업재해에 의한 손실 보전 농작업 안전대책 추진 농업생산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의 철저한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지탱해주는 조치 추진
	농촌 진흥	농촌의 종합적 진흥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자원보전시책의 구축 농촌경제의 활성화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생활 실현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도시·농촌의 교류, 도시 및 주변지역 농업의 진흥 집락기능 유지와 지역자원·환경 보전 농산어촌활성화비전 책정
	회단적 사항			기술·환경정책 등의 종합적인 추진 “농”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대축의 구축
	단체 재정비등			효율적인 재편정비에 대한 시책 강구

자료: 각각의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발췌 작성.

- ①재생산 가능한 경영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 ②다양한 용도·수요에 대응한 생산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③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을 육성·확보하는 정책으로 전환, ④우량 농지 확보와 효율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확립, ⑤활력있는 농산어촌 재생을 위한 시책 종합화, ⑥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실현을 위한 정책 확립

- 2010년 기본계획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의욕 있는 다양한 농업인을 육성·확보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임. 자민당 정권 하에서는 대규모 농가에게 지원 대책을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대규모 농가든 소규모 농가든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한 경영체들이 각각 창의력을 살려 영농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장의 주체적 판단을 존중하는 시책을 실시하는 체제로 전환함.

### 3.2. 도시·농촌의 교류 확대

- 2001년 10월, 일본 최초로 BSE(광우병)감염소가 확인(2009년 1월 6일 현재, 36두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먹을거리에 관련된 각종 사건(원산지 속임 사건, 식품표시 속임사건, 무등록 농약사용 등)과 문제가 사회 이슈화 하고 예전부터 축적되어 온 문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주목받게 됨.
  - “먹을거리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기본이므로 먹을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전파됨.
- 농림수산성은 2002년부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산지소 정책을 추진함. 지산지소 정책의 목표는 농림어업이나 자연체험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그 후 그린 투어리즘, 체험학습, 시골생활 체험, 도농간 ‘사람·재화·정보’가 순환하는 사회, 여유있는 생활 실현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도농교류 활동 보급을 위해 2003년 6월 민간조직을 설립함.
- 한편,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내발적

활동을 추진력으로 이루어지던 농촌의 활성화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 이에 정부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와 농촌의 공생·교류<sup>6)</su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그린 투어리즘 등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에 도시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4년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농산어촌여가법」이라고 함)<sup>7)</sup>을 제정하였음.
-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어업체험민박(이하 농가민박)이 일반 숙박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농가민박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실시함.<sup>8)</sup>

- ① 「농산어촌여가법」에서 규정한 농가민박이 실시하는 농업체험 서비스를 「여행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2003년 3월)
  - 농가민박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운송·숙박서비스에 농업체험을 추가하여 판매·광고하는 것은 「여행업법」에 접촉되지 않음
- ② 농가민박이 운영하는 방문객 수송차량 운행에 대해 「도로운송법」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함(2003년 3월)
  - 숙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방문객 수송차량(送迎차량)은 원칙적

---

6) 농림수산성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란 그린 투어리즘 외에 농산어촌에서의 정주·반정주 등도 포함한 광범한 개념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서로 오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는 것은 지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음([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kyotai/index.html](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kyotai/index.html)).

7) 「농산어촌여가법」은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도도부현 기본방침 및 시정촌계획 작성, 농가민박업자 등록 등을 규정함.

8) 都市と農山漁村共生・對流關係省連絡協議會,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對流關聯施策集』, 2008, pp.126~128. 山形縣, 『あなたもチャレンジ! 農家民宿』, 2010

(<http://gt-yamagata.com/04gt/100805.pdf#search>).

[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gt/yokaho.html](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gt/yokaho.html).



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로운송법」상 문제가 없음.

- ③ 농가민박을 경영할 경우 「여관업법」 상의 면적요건을 철폐함(2003년 4월)
  - 간이숙소(민박 등)를 개업할 경우, 33㎡ 이상의 객실면적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철폐하여 33㎡에 미달하는 객실면적이라도 간이숙소의 영업허가 취득을 가능하게 함.
- ④ 「주세법」을 개정하여 농가민박 등에 의한 탁주 제조 사업 특례 적용(2003년)
  - 탁주 제조량이 6kl 미만일 경우 제조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농가민박 등을 포함한 농업자가 자가생산한 쌀을 원료로 탁주를 제조할 경우 최저 제조수량(6kl)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⑤ 농가민박에 대해 「소방법」의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기준 적용을 완화함(2004년 12월)
  - 소방장 또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⑥ 농가민박에 대한 「건축기준법」 적용을 명확하게 함(2005년 1월)
  - 객실면적이 33㎡ 미만으로 외부로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는 등, 피난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관 적용이 필요 없음.
- ⑦ 「농산어촌여가법」을 개정하여 농가민박업의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2005년 6월)
  - 등록제도의 대상인 농림어업 체험민박업자의 범위에 대해 농림어업자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확대함
- ⑧ 「농지법」상 농업생산법인의 업무에 농작업 체험시설, 민박경영을 추가함(2005년 9월)
  - 농업생산법인이 행하는 농업관련사업의 범위는 농축산물 판매 등에 한정 하였는데, 농작업 체험시설 설치·운영, 민박경영을 추가함.
- 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허가 규정을 농가민박에 대해 완화함(2006년 10월)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 영업허가에 대해 일부 기준을 완화함(영업

용 조리시설을 가정용과 병용 가능, 영업용 시설에서 체험조리 가능)

○ 일본 도시·농촌 교류 확대 지원의 특징

- 일본 농업정책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 사항별 정책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 첫 번째 정책이고 그 계기는 식품 안전성이 사회문제화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임.
- 식품 안전성은 과학적 기호만으로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있었고, 식품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체험과 이해 당사자 간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임.
-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가운데 기존 법령으로 농어촌산업화를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법조항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함.
- 농어촌산업화를 규제하고 있던 법령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소방법’ 등 상위법으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임. 그러나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관광업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시설 및 설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큰 부담이 되었던 것임.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산업에서 이러한 규정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기존에도 있었지만 도농교류를 통해 개선된 것임.

### 3.3.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지원정책

#### 3.3.1. 농산어촌 6차산업화 지원정책의 특징

○ 농산어촌 6차 산업화의 배경

- 일본 국내 식품 시장이 1995년 80.4조 엔에서 2005년 73.6조 엔으로 9.2% 감소하였고 농업산출액도 1995년 10.4조 엔에서 2006년 8.3조 엔으로 25% 감소함. 이에 따라 농업소득도 1995년 5.0조 엔에서 2005년 3.4조 엔으로 32%크게 감소함.

- 그러나 농산어촌지역에는 농림수산물과 각종 바이오가스, 자연 에너지가 존재하고, 농림어업인이 경험과 지혜를 비롯하여 전통문화, 농산어촌이 갖는 목가적인 풍경 등 다양한 농산어촌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지역자원이 존재함. 또한 농산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조직하려는 산업, 예를 들면, 식품산업, 관광산업, 화장품, 의약제조업, 에너지 산업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의 목적
-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림어업과 타업종의 연계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농림어업자, 농업법인을 지원함.
  -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고 고용확보와 소득 향상으로 농산어촌의 지역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여 젊은이나 어린이도 농어촌에 정주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농림어업 생산과 가공·판매를 일체화 하거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함.

표 3-2. 일본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의 종류

분야	사업 내용	지원
가공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차 산업화, 생산~유통에 필요한 기계 시설, 가공시설 등 공동 이용시설 정비</li> <li>국산농축산물 체질강화,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 시설 등 정비</li> </ul>	여성우대, 보조  보조
신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향상을 위한 연수, 전문가 상담, 전문가 물색</li> <li>신상품개발 계획책정과 사례조사, 판로 개척</li> <li>타산업과 연계, 지산지소 등 정보 발신·수집, 품종등록</li> <li>판로 개척 위해 상담회 참가, 판매처 물색</li> </ul>	상담/정보 여성 우대, 보조 상담/정보 세미나·이벤트
금융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공·판매 시, 시설정비에 필요한 자금, 단기운용자금</li> <li>농업인과 가공판매사업자 공동 또는 농업법인이 6차산업을 하기 위해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출자 받음</li> </ul>	융자 <b>출자</b>
환경분야	환경에 유익한 농업을 위해 차별화를 시도 농식품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량을 파악,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	보조 상담/정보
농산물 개별품목	포획한 야생동물 활용한 가공 요리, 해충 저항성을 가진 서류 재배나 요리메뉴 고안, 계약체결로 채소류 연속 출하, 과일 차의 재식이나 가공용과실 저비용 생산	보조
어업분야	수산업에 새로운 마케팅, 공동이용시설로 가공 등 어업관련기기 구입이나 단기운전자금	여성 우대, 보조 융자
임업분야	목재의 안정공급 조직화 목재가공 유통시설 및 정비 자금, 경영의 운전자금	보조 융자
농림수산물· 식품 수출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및 현황조사, 환경 정비, 연수 실무경험이나 노하우 연수, 홍보 해외 전시장에 출점, 홍보, 상담회, 정보수집 등 식품공장에 HACCP 도입 원전사고에 따른 수출증명서 발행	보조 보조 세미나·이벤트 여성 우대, 보조 상담/정보
신사업 창출	관광객 유치, 전통요리의 각색한 메뉴 개발 해외의 부당한 상표출원에 대응, 지적재산정보, 지역브랜드 농식품 관련 정보, 동물을 배려한 활동에 어필	보조, 여성 우대 상담/정보
재생가능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 준비 또는 발전시설 설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고정자산세 특례	보조 세제
바이오매스	식품폐기물의 비료화사업에 자금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재생이용사업자제도나 인증제도의 장점 필요 바이오매스에서 연료 제조 미이용 자원을 사료로 활용, 또는 정보가 필요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융자 보조 상담/정보 세제 보조, 상담/정보 보조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 6次産業化支援策活用ガイド. 2012年7月版

## ○ 농산어촌 6차 산업화의 주요 지원 내용

## ① 가공시설 정비(하드웨어 지원)

- 6차 산업화에 필요한 기계·시설 도입과 생산~유통에 필요한 가공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정비
- 환율이나 이상기후 등 농업외 환경 영향을 받고 있는 국산농축산물 체질 강화를 위해 가공시설 등 정비
- 산지 수익력 향상을 위해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 ② 신상품 개발(소프트웨어 지원)

- 상품개발 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 신상품 개발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
- 광역적인 과제나 전문성 있는 과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물색
- 판매처 물색과 신상품 개발하여 판로 개척,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상담회에 참가하거나 신상품개발 계획책정과 사례조사
- 타산업과 연계하는 정보 및 지산지소 정보의 발신·수집
- 식물신품종을 품종등록 지원

## ③ 금융분야

- 농축산물 가공·판매 시, 시설 정비에 필요한 자금과 단기운용자금의 융자
- 농업인과 가공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6차 산업을 하기 위해 출자
- 농업법인이 가공판매 시 경영기반 강화 위해 구성원 이외의 자에게 출자

## ④ 환경분야

- 환경에 유익한 농업을 위해 차별화를 시도하거나 생산된 농산물, 농산가공품에서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량을 파악
-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하거나 정보 발신

## ⑤ 농산물 개별품목 지원

- 포획한 야생동물을 활용한 가공, 해충 저항성 실증재배나 요리메뉴 고안, 과일·차를 재식하거나 가공용 과실을 저비용으로 생산
  - 계약체결로 인한 채소류 연속 출하
- ⑥ 어업분야
- 수산업에 새로운 마케팅이나 공동이용시설로 가공장 만들 때 보조
  - 어업관련기기 구입하기 위해 자금 융자
  - 어업 경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융자
- ⑦ 임업분야
- 목재의 안정공급을 위한 조직화
  - 목재가공 유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자금을 빌릴 때 융자
  - 목재가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자금을 빌릴 때 융자
  - 임업·목재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빌릴 때 융자
- ⑧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및 현황조사, 수출환경 정비
  - 실무경험이나 노하우 연수, 홍보
  - 해외 전시장에 출점, 홍보, 상담회, 정보수집 등
  - 식품공장에 HACCP 도입
  - 원전사고에 따른 수출증명서 발행
- ⑨ 신사업 창출
- 관광객 유치, 전통요리의 각색한 메뉴 개발
  - 해외의 부당한 상표출원에 대응, 지적재산정보, 지역브랜드 농식품 관련 정보, 동물을 배려한 활동에 대응 등
- ⑩ 재생가능 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 준비 또는 발전시설 설치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고정자산세 특례

#### ⑪ 바이오매스

- 식품폐기물의 비료화 사업,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바이오매스에서 연료 제조,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을 장려하는 지원
- 재생이용사업자제도나 인증제도의 장점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이용 자원을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

### 3.2.3.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의 시사점

- 농산어촌지역의 농식품 관련 주체에 필요한 통합적 정책지원임.
  - 6차 산업화의 주요 내용은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 이미 개별 사업으로 수행해 온 정책을 농어촌산업의 주체의 입장에서 재정립한 것임.
  - 농어촌의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망라해 놓았다는 차원에서 이전의 정책과 큰 관점의 차이가 있음.
  - 이전의 개별 정책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당되는 농어촌지역 및 관련 사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였다면, 6차 산업화 정책은 농어촌지역의 생산~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복잡다단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임.
- 지역 내 유무형의 자원 잠재력을 인적·물적 인프라의 통합 활용을 통해 산업화 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 사업의 종류도 보조나 융자 외에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세미나나 이벤트 지원 등을 포함함.
- 특히, 농산물 가공이나 신상품 개발, 전통요리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에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보조사업과 농업 이외의 자본이 농업부문의 가공·판매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원이 특징임.

-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대는 농산물 가공과 전통요리를 활용한 식품 산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기 때문임.
  - 여성농업인은 농어촌지역 유무형의 자원 보유자이므로 여성농업인의 역량 발휘가 향후 농어촌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가공·판매사업자와 농업인 이외의 농축산물 가공, 유통, 농작업 위탁 등 농업에 관련된 사람도 출자를 통해 6차 산업화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짐.
  - 농림어업 성장산업화 펀드에서 지역 펀드(또는 테마펀드)로 출자를 통해 지역 펀드가 6차산업화 사업체에게 출자하거나 경영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출의 형태로 자금공급도 가능함. 지역펀드는 “주식회사 농림어업 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일명 펀드법)”<sup>9)</sup>으로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농림어업성장산업펀드가 창설됨. 이를 통해 6차 산업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농업법인이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애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주)<sup>10)</sup>이 출자하도록 함.

---

9) 2012년 8월 29일 제정됨.

10) 농업생산법인의 외부에서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전국 유일의 농업법인 투자육성사업회사임. 투자에 관한 문의는 아그리비지니스투자육성회사(TEL: 03-5283-6688)나 (주)일본정책금융공고의 각 지점, 최종적으로 농협,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림중앙금고의 각 지점에서 문의를 받는다



※ 일본 주식회사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일명 펀드법)의 개요

○ 배경

- 농림어업과 농림어촌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먹거리와 농림어업을 재  
생하기 위해 민간 자금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제휴  
한 새로운 자금순환으로 농림어업의 성장산업화를 추구함.

○ 취지

- 농림어업이 농림어업자의 소득을 확보하고 농산어촌에서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된 새로운 사업분  
야를 개척하는 사업활동에 대해 출자, 융자나 경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함

○ 법률의 개요

① 기구 설립 및 정부 출자

- 기구는 농림수산대신이 허가로 전국 1개소로 한정하여 설립
- 정부는 상시 기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2을 보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구에 출자함(2012년 당초예산 300억 엔, 산업투자)

② 농림어업성장산업화위원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기구에 농림어업성장산업화위원회  
(농림어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진자와 기타 위원으로 조직)을 설립

③ 업무 범위

-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한 사업활동하는 6차 산업화법의 인정사업자에 대해  
출자(직접 출자), 적은 자본의 대출 제공
- 위의 자에 대해 자금제공과 기타 지원을 하는 단체에 대해 출자(간접자본),  
지도 등

④ 지원기준 및 업무 실시

- 농림수산대신은 기구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는데 따른 기준(지원  
기준)을 책정
- 지원기준은 농림어업자의 주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농림  
어업의 건전한 발전을 배려하여 책정
- 기구는 지원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 지원을 실시

⑤ 기타

- 농림어업자의 의견 청취, 존속기간(~2033년 3월), 국가에 의한 감독의 규정  
을 정비

#### 4. 농어촌산업정책 방향 관련 이슈<sup>11)</sup>

-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농업촌산업정책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교통의 발달과 시민사회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나타나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음.
- 과거의 지역정책은 하향식, 지원기반, 투자지향, 지정된 목표지역이 중심이 되는데 비해, 새로운 정책은 다층적 정부간 협력, 프로그램 기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함.
  - 과거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거나 인적·물적 인프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그러므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부문별 접근 방식으로 추진됨.
- 최근에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특정 인프라의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과 혁신, 교육·훈련, 문화, 환경도 포함하는 등 정책 범위를 확대함.
  - 현재의 지역정책은 기존의 문제에 단순히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함.
  - 쇠퇴지역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유무형의 자산에 토대를 두고 성장잠재력 향상을 중시함. 즉, 현재는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잠재력을 가능성으로 정책을 추진함. 이를 통해 지역의 내생적 자산의 잠재력과 지역 특유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임.
  -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경쟁력 향상을 균형발전과 동시에 추구하며 정책 범위는 지역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종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함.

11) 이원섭. 201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을 참조함.

- 정책수단에서는 낙후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이전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에서 탈피하여 기술, 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등 기업환경과 지역혁신을 강조함.
  - 투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보다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클러스터 정책, 기업간 협력 및 지식공유를 중시함.
  - 교통인프라와 산업, 과학, 기술센터 등 산업 인프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한 요소임.

그림 3-5. OECD 국가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문제인식	불균형 (지역 간 소득,인프라,고용)	⇨	경쟁력 부족 잠재력 미활용
정책목표	지역균형발전 (형평성)	⇨	경쟁력과 형평성
정책범위	부문별 접근	⇨	통합적·종합적 접근
정책의 공간지향	낙후지역	⇨	전 지역
정책개입 단위	행정구역	⇨	기능지역
접근방식	단일방식	⇨	상황별, 지역별
정책초점	외생투자 및 이전	⇨	내생적 지역자산·지식
집행수단	보조금 및 국가지원	⇨	연성·경성자본 혼합투자 (기업환경, 노동시장, 인프라)
추진주체	중앙정부	⇨	중앙정부, 지자체, 이해집단(공공,민간,NGO)

자료: OECD(2010), 이원섭. 201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p.47에서 재인용.

- 지역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분권화가 강화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게 변하고 있음.
  - 주요 정책수단의 설계와 전달을 하던 역할은 감소하는 반면,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 틀을 마련하거나 정책 간 조정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정보나 역량, 재정, 행정, 정책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큰 과제로 제기됨.
- 분권화에 따라 지역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중간에 있는 광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기됨.
  - 지역 수준의 수평적 거버넌스 및 전략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분권화된 지역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함.
- 지역간 이동성과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넘는 지자체간 또는 지역내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제기됨.
  - 행정구역과 기능지역의 불일치, 규모의 경제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행정구역 조정과 기능지역 단위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 제 4 장

---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원 현황과 성과

#### 1. 지원현황

##### 1.1. 성과분석 대상사업 현황

- 성과분석 대상사업: 2009년 시작하여 2011년에 종료된 28개 사업단<sup>12)</sup>을 대상으로 함.
- 성과분석은 28개 사업단에서 보내온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분석과 보정 후 사업투입 대비 성과 분석을 실시함.
  - 우선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의 성과지표 분석 실시
  - 다음으로,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의 과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정한 수치를 통해 실질적인 실적 성과 분석 실시

---

12) 초기에는 총 30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으나, 중단된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함.

### 1.1.1.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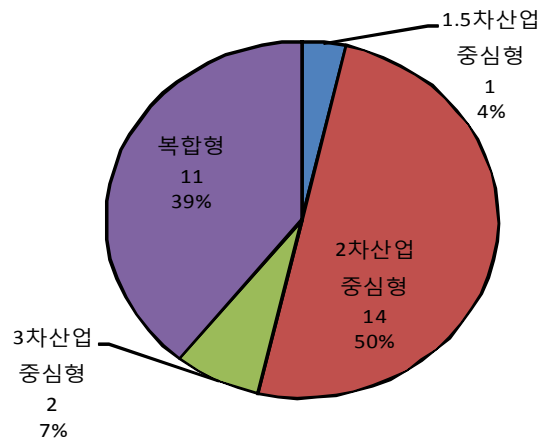
- 2009년부터 실시된 28개 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즉, 1.5차 산업 중심형, 2차 산업 중심형, 3차 산업 중심형, 복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1.5차 산업 중심형: 일반적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강화하는 형태임 주로 1.5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을 중심아이템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아이템들과 연계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됨. 즉, 1.5차 산업 중심형이란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을 본질 변형없이 단순 가공한 형태를 말함.
  - 2차 산업 중심형: 원재료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제조가공식품(기능성제품, 화장품, 술, 음료 등)이 중심아이템으로 나타나며, 원재료는 향토성을 기반으로 제품화되는 형태가 많음.
  - 3차 산업 중심형: 향토자원(음식, 문화, 장소, 인물 등)을 이용하여 이를 브랜드화 하는 형태가 여기에 해당됨. 음식, 테마파크, 타이포그래피 등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임.
  - 복합형: 1차, 2차, 3차 산업이 혼합된 형태임.

표 4-1. 분석대상 사업 및 유형 구분

지역	사업명	유형 구분
경기	김포시 인삼쌀맥주 관광산업	2차산업 중심형
충남	금산군 고품질 안전인삼농식품 생산	복합형
충북 (2)	충주시 신선편이사과 및 고부가가치 사과 가공상품 개발	2차산업 중심형
	보은군 보은 황토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	2차산업 중심형
전남 (7)	광양시 광양메실 명품화 사업	복합형
	나주시 쪽 전통기술 산업화	2차산업 중심형
	순천시 순천만 갈대이용 가공기반사업육성 및 신상품 개발	복합형
	강진군 웰빙 도자(陶瓷)산업 육성	복합형
	담양군 특산딸기의 웰빙 담양한과 명품화 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영광군 모시잎 송편 명품화 사업	복합형
	진도군 진도 울금(강황) 명품화 사업	복합형
전북 (5)	전주시 전주 전통모주 개발	2차산업 중심형
	남원시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복합형
	고창군 고창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복합형
	무주군 무주 천마육성	복합형
	완주군 소양철쭉 군락단지조성 및 명품화 사업	복합형
경남 (3)	거제시 거제 멥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3차산업 중심형
	밀양시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 사업	복합형
	사천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3차산업 중심형
경북 (7)	경산시 경산대추 「맛나베 대추 FUSION FOOD」개발	2차산업 중심형
	안동시 천연염색, 안동전통한지 명품브랜드화	2차산업 중심형
	영주시 영주사과와 풍기인삼을 이용한 국민 「스타식품」개발	2차산업 중심형
	영천시 전통염색 산업화	2차산업 중심형
	영양군 고추씨를 이용한 가공식품 육성	2차산업 중심형
	칠곡군 아카시아벌꿀·차조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	2차산업 중심형
	울진군 울진계(대계·홍계) 식품산업 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강원	홍천군 홍천 잣 명품화 사업	1.5차산업 중심형
제주	제주시 제주 흑돼지고기 명품화 육성	2차산업 중심형
합계	총 28개 사업	

- 산업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2차 산업 중심형이 14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복합형이 11건으로 약 39%의 비중을 차지함. 나머지 산업유형 사업은 3차 산업 2건(7%), 1.5차 산업 1건(4%)으로 비중이 적음.

그림 4-1. 산업 유형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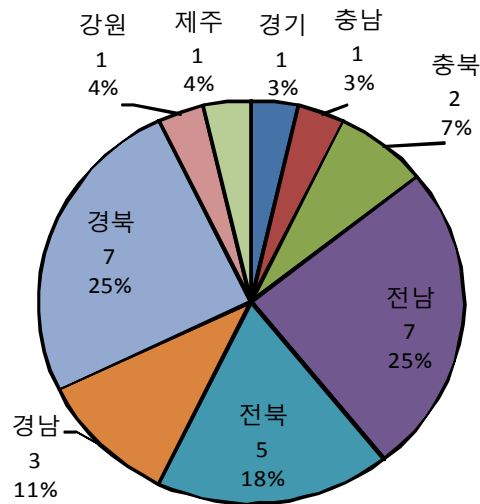


### 1.1.2. 지역별 사업지원 현황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별 지원현황을 보면, 전라남도과 경상북도가 각각 7지역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전라북도가 5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임.
- 지역별 특성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시·군과 달리 도단위에서 단일지역으로 지원되었으며, 특·광역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그림 4-2. 지역별 사업지원 현황



## 1.2.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에 앞서, 28개 사업단에 투입된 예산내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아래 예산내역은 28개 사업단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기재된 예산액 및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리된 결과임.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8개 시·도, 28개 시·군으로, 각 지역의 향토자원에 대해 3년간 사업비 약 460억 원(국고 기준)을 지원하였음.
  - 국고는 약 46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방비와 자부담이 472억 원, 총 93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3년간 877억 원이 집행됨.
- 이전과 달리, 2009년 신규 사업부터는 총사업비 규모가 3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센티브 및 패널티로 인해 각 사업별 예산에는 일부 차이가 있음.

표 4-2.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경기	김포시	인삼쌀매주 관광산업	2,100	2,505	4,605	2,100	2,505	4,605
충남	금산군	고품질 안전인삼농식품 생산	1,750	1,650	3,400	1,540	1,448	2,988
충북 (2)	충주시	신선편이사와 및 고부가가치 사과 가공상품 개발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보은군	보은 황토대추를 이용한 기능성 식 품 및 화장품 개발	2,100	1,900	4,000	2,098	1,933	4,030
전남 (7)	광양시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	1,702	3,548	5,249	1,702	3,548	5,249
	나주시	쪽 전통기술 산업화	1,600	1,502	3,102	1,600	1,483	3,083
	순천시	순천만 갈대이용 가공기반사업육성 및 신상품 개발	1,500	1,500	3,000	1,329	1,485	2,814
	강진군	웰빙 도자(陶器)산업 육성	1,700	1,520	3,220	1,700	1,520	3,220
	담양군	특산딸기의 웰빙 담양한과 명품화 육성사업	1,470	1,500	2,970	1,459	1,486	2,945
	영광군	모시잎 송편 명품화 사업	1,524	1,551	3,075	1,507	1,525	3,032
	진도군	진도 울금(강황) 명품화 사업	1,463	1,507	2,970	1,462	1,506	2,968
전북 (5)	전주시	전주 전통모주 개발	1,650	1,658	3,308	1,637	1,656	3,293
	남원시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1,500	1,500	3,000	1,371	1,371	2,742
	고창군	고창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1,750	1,650	3,400	1,750	1,650	3,400
	무주군	무주 천마육성	1,700	1,608	3,308	1,700	1,608	3,308
	완주군	소양철쭉 군락단지조성 및 명품화 사업	1,500	1,500	3,000	1,201	1,201	2,401
경남 (3)	거제시	거제 멥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2,000	1,500	3,500	1,763	1,313	3,076
	밀양시	밀양 얼음골사와 명품화 사업	1,600	1,500	3,100	1,595	1,499	3,094
	사천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1,370	1,500	2,870	967	1,058	2,025
경북 (7)	경산시	경산대추 「맛나베 대추 FUSION FOOD」개발	1,750	1,650	3,400	1,750	1,595	3,345
	안동시	천연염색, 안동전통한지 명품브랜 드화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영주시	영주사과와 풍기인삼을 이용한 국 민 「스타식품」개발	1,875	1,925	3,800	1,340	1,279	2,619
	영천시	전통염색 산업화	1,500	1,500	3,000	1,198	1,200	2,397
	영양군	고추씨를 이용한 가공식품 육성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칠곡군	아카시아벌꿀 차조기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화	1,500	1,500	3,000	1,422	1,386	2,808
	울진군	울진계(대계 홍계)식품산업 육성사업	1,675	1,775	3,450	1,675	1,775	3,450
강원	홍천군	홍천 잣 명품화 사업	1,600	1,650	3,250	1,288	1,278	2,566
제주	제주시	제주 흑돼지고기 명품화 육성	1,600	1,624	3,224	1,600	1,624	3,224
합계		총 28개 사업	45,979	47,223	93,201	43,253	44,433	87,682

- 유형별로는 사업 수가 가장 많은 2차산업 중심형이 예산액 기준 4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복합형의 경우에는 국비보다 지방비와 자부담이 약 14억 원 더 많은 특징이 있음.

표 4-3. 유형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 원

유형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1.5차산업 중심형	1,600	1,650	3,250	1,288	1,278	2,566
2차산업 중심형	23,320	23,539	46,859	22,379	22,422	44,799
3차산업 중심형	3,370	3,000	6,370	2,730	2,371	5,101
복합형	17,689	19,034	36,722	16,857	18,361	35,216
합계	45,979	47,223	93,201	43,254	44,432	87,682

- 지역별로 보면 사업단 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가 예산액 기준 236억 원으로 가장 예산이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227억 원, 전라북도가 160억 원 순으로 지원됨.
  - 집행액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약 20억 원,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7억 원, 5억 원 가량 미집행됨. 이는 각 지역별로 2012년까지 기간이 연장된 사업들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 4-4. 지역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 원

지역	예산액			집행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포함)	소계
경기	2,100	2,505	4,605	2,100	2,505	4,605
충남	1,750	1,650	3,400	1,540	1,448	2,988
충북	3,600	3,400	7,000	3,598	3,433	7,030
전남	10,959	12,628	23,586	10,759	12,553	23,311
전북	8,100	7,916	16,016	7,659	7,486	15,144
경남	4,970	4,500	9,470	4,325	3,870	8,195
경북	11,300	11,350	22,650	10,385	10,235	20,619
강원	1,600	1,650	3,250	1,288	1,278	2,566
제주	1,600	1,624	3,224	1,600	1,624	3,224
합계	45,979	47,223	93,201	43,254	44,432	87,682

## 2.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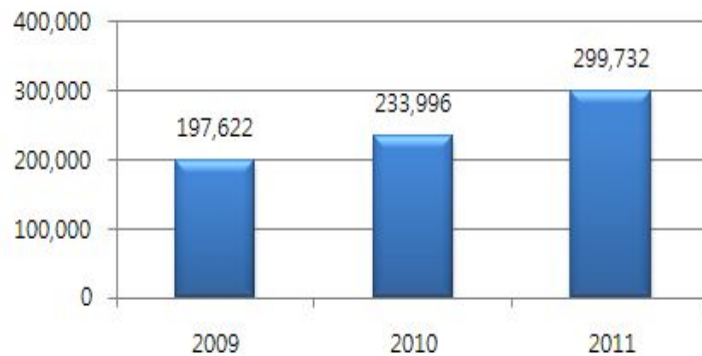
### 2.1. 성과지표를 통한 분석

- 사업 종료 후 각 사업단별로 필수지표와 특성화지표를 보고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 분석을 시도함.
- 성과지표별 변화율을 살펴보면, 사업 초(2009년)에 비해 참여업체 매출액 52%, 일자리 46%, 참여농가 소득 32%, 수출실적 2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2.1.1. 참여업체 매출액

- 연도별로 참여업체 매출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사업 초년도(2009년)에 1,976억 원(사업단 평균 70.5억 원)에서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는 2,997억 원(사업단 평균 107억 원)으로 52% 대폭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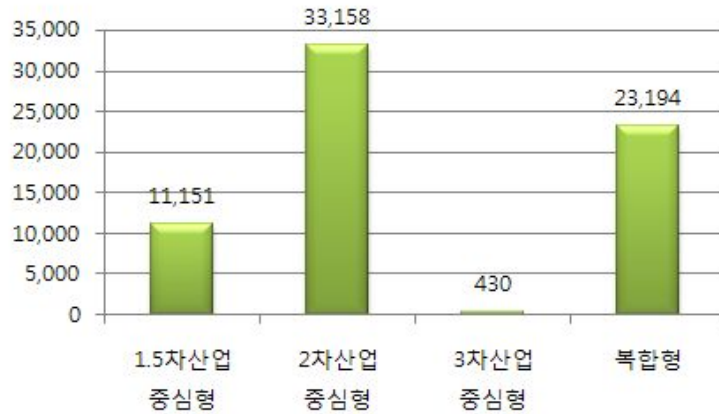
그림 4-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참여업체 매출액의 유형별 평균을 보면, 2차 산업 중심형이 332억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복합형이 232억 원, 1.5차 산업 중심형 112억 원 순으로 나타남.
  - 3차 산업 중심형은 사업기간 동안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수익 창출은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에는 매출액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3차 산업 중심형 뿐만 아니라,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의 성과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므로, 정확한 성과분석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요구됨.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부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그림 4-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유형별 평균

단위: 백만 원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서 참여업체 매출액은 3년간 총 7,314억 원으로 집계됨. 유형별 참여업체 매출액 합계는 2차산업 중심형이 4,642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3차산업 중심형은 8억 6천만 원으로 참여업체 매출액이 가장 낮았음.

표 4-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업체 매출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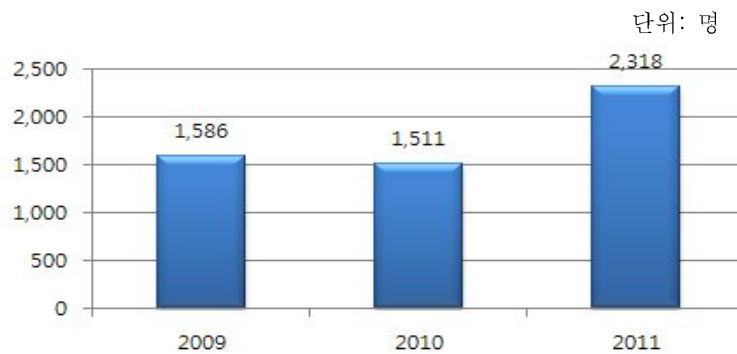
참여업체 매출액	2009	2010	2011	합계	유형 평균
1.5차산업 중심형	3,191	3,710	4,250	11,151	11,151
2차산업 중심형	111,110	151,441	201,656	464,207	33,158
3차산업 중심형	114	278	468	860	430
복합형	83,207	78,567	93,358	255,132	23,194
계	197,622	233,996	299,732	731,350	26,120

## 2.1.2. 일자리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서 일자리는 사업 초년도(2009년)에 1,586명(사업단별 평균 56.6명)에 불과하였으나,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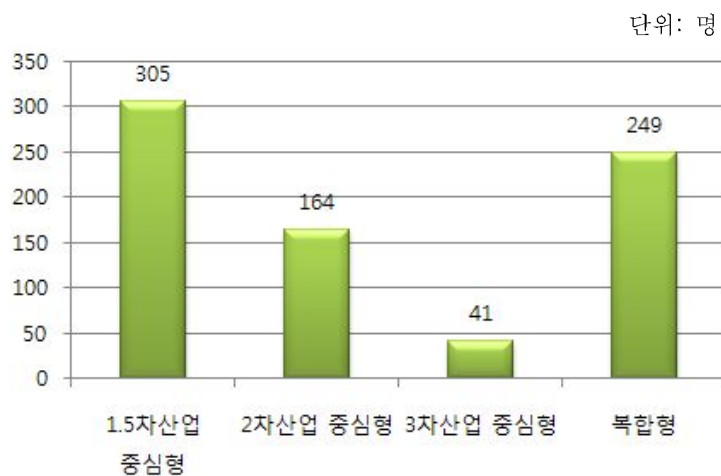
는 2,318명(사업단별 평균 82.8명)으로 46% 증가하여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일자리 추이



- 유형별로는 1.5차 산업 중심형이 사업별로 평균 305명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복합형이 249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3차 산업 중심형은 41개로 일자리 창출이 저조했음.

그림 4-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 유형별 평균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로서 일자리 수는 3년간 총 5,412개로 집계됨.

표 4-6.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

일자리	2009	2010	2011	합계	유형 평균
1.5차산업 중심형	83	102	120	305	305
2차산업 중심형	595	764	929	2,289	164
3차산업 중심형	3	38	40	81	41
복합형	806	913	1,019	2,737	249
계	1,586	1,511	2,318	5,412	193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인 일자리 중에서 정규직만을 분리하면, 3년간 총 1,552개로 집계됨. 유형별로는 2차산업 중심형이 총 985개, 평균 7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1.5차산업 중심형이 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표 4-7.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자리 수(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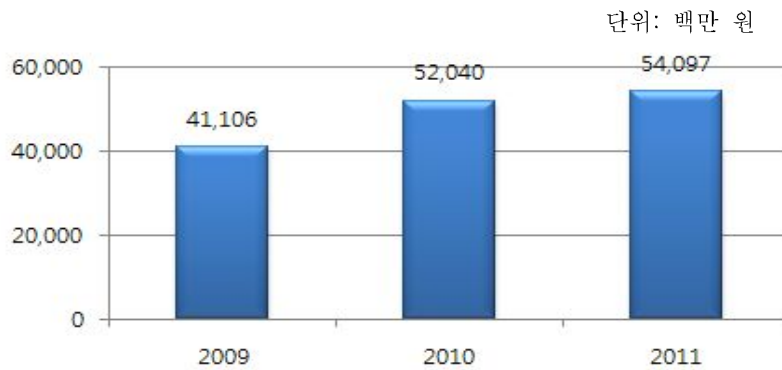
일자리	2009	2010	2011	합계	유형 평균
1.5차산업 중심형	16	24	17	57	57
2차산업 중심형	264	304	418	985	70
3차산업 중심형	1	27	27	55	28
복합형	133	154	168	455	41
계	414	509	630	1,552	55

### 2.1.3. 참여농어가 소득

-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농어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사업 초년도(2009년)에 411억 원(사업단별 평균 14.7억 원)에서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는 541억 원(사업단별 평균 19.3억 원)으로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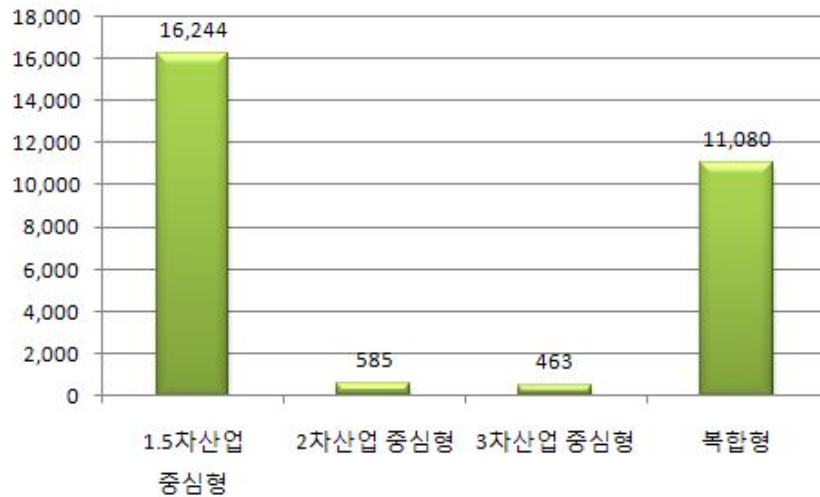
그림 4-7.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연도별 참여농어가 소득



- 유형별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농어의 소득을 살펴보면, 1.5차산업 중심형이 162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3차산업 중심형은 4억 6천만 원으로 소득 향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유일한 1.5차 산업 중심형인 홍천 잣 명품화 사업은 사업개시 직전년도(2008년) 참여농어가 소득 3억 7천만 원에서 종료년도(2011년)에 40억 원으로 1,096%의 증가율을 보임<sup>13)</sup>.

13) 성과지표에 보고된 참여 농어가 소득의 경우, 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 내에서 생산되어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농가소득 전체를 참여 농어가 소득으로 보고한 사업단도 있음. 이러한 보고 실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인한 참여농어가 소득 향상이 지나치게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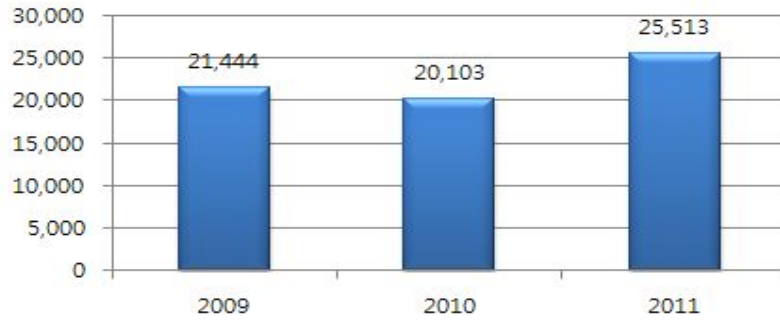
그림 4-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참여농어가 소득 유형별 평균  
단위: 백만 원



#### 2.1.4. 참여업체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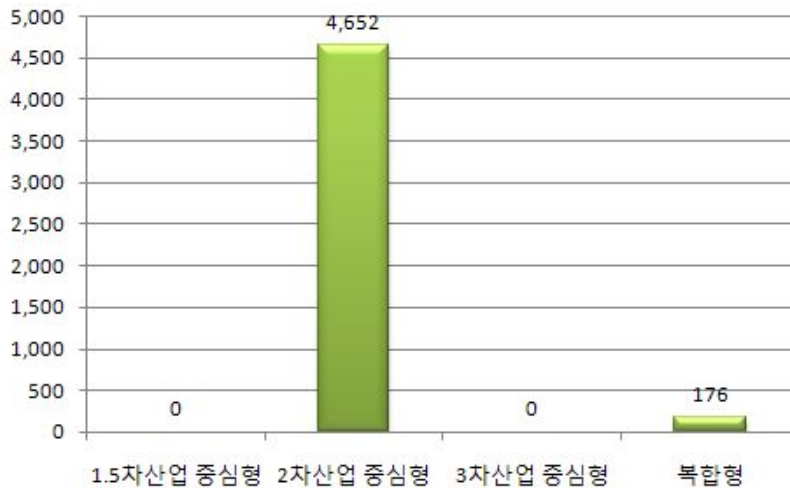
- 참여업체 수출실적은 사업 초년도(2009년)에 21백만 달러(사업단별 평균 0.8백만 달러)이 사업 종료년도(2011년)에는 26백만 달러(사업단별 평균 0.9백만 달러)로 24% 증가함.
  - 그러나 울진 계(대계·홍계)식품산업육성사업의 실적이 전체 수출실적 6,705만 달러 중 5,893만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수출실적의 88%를 차지하여, 울진을 제외하면 수출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수출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 초기의 특성 상 기간 내에 수출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경우, 3차 산업 중심형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특성상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주 돈육과 같이 검역 상의 문제로 중단된 경우 등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그림 4-9.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의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 유형별 참여업체 수출실적 평균을 보면 2차산업 중심형이 4,652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1.5차산업 중심형과 3차산업 중심형은 수출 실적이 없었음.

그림 4-10. 향토산업육성사업 참여업체의 수출실적 유형별 평균  
단위: 달러



- 이밖에도 각 사업단별 특성화지표<sup>14)</sup>로 방문객 수가 408만 명, 신제품 개발은 344건, 산업재산권 218건, 전문인력 869명을 양성한 성과를 거두었음.

표 4-8. 향토산업육성사업 특성화지표 성과

특성화지표	단위	2009	2010	2011	계
방문객	천명	1,751	1,123	1,207	4,081
신제품개발실적	건	96	108	140	344
산업재산권 확보	건	15	96	107	218
전문인력 양성	명	39	360	470	869

## 2.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투입대비 산출 분석

### 2.2.1. 투입대비 산출 분석 방법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투입대비 산출을 분석하기 정책의 진행과정과 완료단계에 따라 산출(output) 지표, 결과(result) 지표, 파급효과(impact)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함(김영수 외, 2010<sup>15)</sup>).

- 산출(output) 지표는 정책단위의 활동과 집행에 따른 생산물을 나타내며, 공공지출과 관련하여 획득된 모든 것을 산출로 평가함. 산출지표는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정책별 실적 또는 산출을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매출액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함.
- 결과(result) 지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에 대한 즉시적인 이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혜자들에게 발생한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

14) 분석의 대상이 되는 2009년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작한 사업단들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춘 특성화지표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함.

15) 본 분석방법은 산업연구원의 김영수 외(2010)의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 이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향토산업육성사업도 넓은 의미의 지역산업인 농어촌산업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함. 상기 연구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투입대비 산출을 통해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순수성과를 분석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차별화됨.

를 제공함.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어촌 산업의 성장 및 생산성 향상, 고용 증대 등을 나타내는 지표 등을 통해 평가함.

- 파급효과(impact) 지표는 수혜자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넘어서 정책의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중장기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임.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농어촌 산업 전체의 성장 및 경쟁력 제고, 후생증대,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 등을 포함함.

그림 4-1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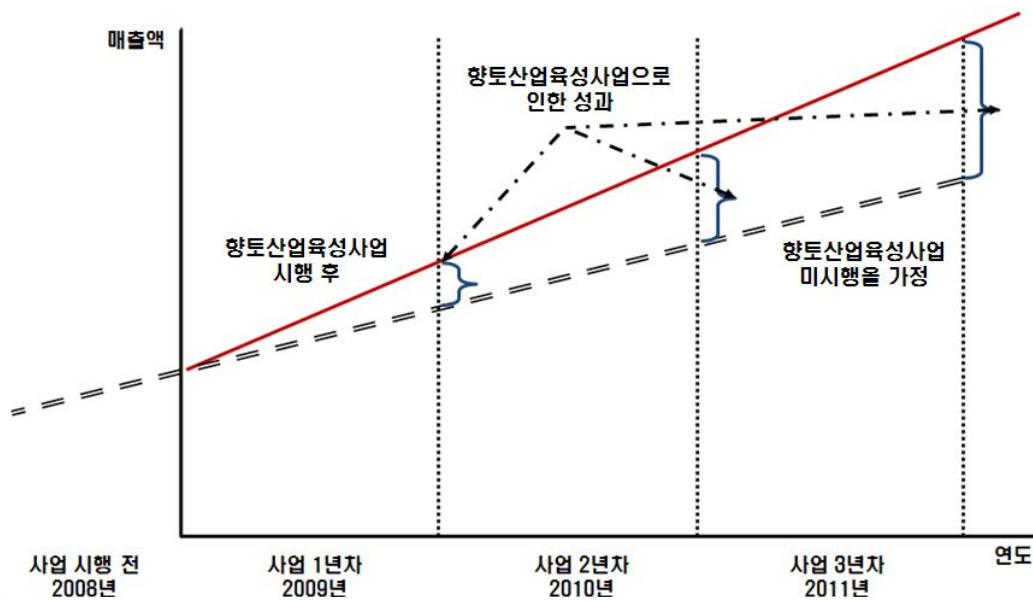


자료: 김영수 외. 2010.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 산업연구원. p195 수정 후 재해석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후의 참여기업의 매출액 총액에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출액을 뺀 것을 대상으로 하였음.
  - 사업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출액 성장률은 광공업제조업통계에 나타난 해당 시·군의 총매출액과 식료제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음. 이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사업단은 대부분 여러 개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참여전 개별기업 각각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임.

그림 4-12.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성과



## 2.2.2. 투입대비 성과분석 결과

- 투입 예산 대비 성과의 산출 근거
  - 예산총집행액은 실적보고서에 보고한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합산
  - 지역평균성장률은 광공업제조업통계에 나타난 2007~2009년까지 해당 지역의 총매출액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구함
  - 식료제조업성장률은 광공업제조업통계에 나타난 2007~2009년까지 해당지역 식료제조업 매출액을 바탕으로 성장률을 구함
  -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사업단의 순수 매출액( $\Phi$ )은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매출액 실적( $\beta$ )에 2007~2009년 까지의 해당지역 총매출액 성장

률을 적용한 2011년까지 적용하여 산출된 사업단의 총매출액( $\delta$ )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지역의 식료제조업의 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단의 총매출액( $\lambda$ )을 각각 빼 금액임.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한 산출식은  $\Phi = \beta - \delta$  혹은  $\Phi = \beta - \lambda$

- 임금소득은 신규 정규직 일자리수에 해당지역 2009년도 평균 임금을 곱한 것임.
- 농가소득은 실적보고서에 명확히 표기한 8개 시·군만 적용하였음. 실적보고서에 참여업체 원료공급 내역 및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한 김포, 남원, 전주, 나주, 담양, 안동, 칠곡, 거제의 농가소득을 총액 합산하였음.
- 따라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총성과는 순수매출액, 임금소득, 농가소득으로 구성되고, 순수 성과는 순수매출액에 예산총집행액을 빼 것이 됨.

#### □ 결과지표(result):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효과

- 결론적으로 말하면, 투입 대비 성과평가 결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순수효과(사업수행 후의 매출액과 사업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매출액이 차이)는 사업단별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52억 원의 플러스 효과를 보임.

##### <지역평균성장률 적용 시>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2011년 매출액을 산출하면 511,592백만 원이 됨. 이를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총매출액 731,350백만 원으로 빼면 219,758백만 원이 됨. 이 금액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이라는 것임.
- 따라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순효과는 지역평균성장률을 적용한 미시행시 매출액 219,758백만 원(B)에서 예산총집행액(A)를 빼면 최소 132억 원에서 최대 147억 원 가량임. 이를 사업지구당 계산해 보면 최소 47억 원에서 최대 52억 원의 플러스 순효과를 가

저왔음을 알 수 있음.

<식료제조업성장률 적용 시>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식료제조업성장률을 적용하여 2011년 매출액을 산출하면 586,284백만 원이 됨. 이를 실적보고서에 제시된 총매출액 731,350백만 원으로 빼면 145,066백만 원이 됨. 이 금액은 위에서와 같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임.
- 따라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순효과는 식료제조업성장률을 적용한 미시행시 매출액 145,066백만 원(B)에서 예산총집행액(A)를 빼면 최소 57억 원에서 최대 72억 원 가량임. 이를 사업지구당 계산해 보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의 플러스 순효과를 가져왔음.

표 4-9.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성과

단위: 백만 원

투입 예산 총집행액 [A]	성과		임금소득 [D]	농가소득 [E]
	매출액			
	지역평균성장률 적용시(B)	식료제조업성장률 적용시(C)		
87,682	219,758	145,066	12,804	4,792
구분	성과정도 산식		성과정도	사업지구당
지역평균 성장률 기준	매출액 성과(B-A)		132,076	4,717
	매출액&임금(B+D-A)		142,874	5,103
	매출액&임금&농가소득(B+D+E-A)		147,666	<b>5,274</b>
식료제조업 성장률 기준	매출액 성과(C-A)		57,384	<b>2,049</b>
	매출액&임금(C+D-A)		68,182	2,435
	매출액&임금&농가소득(C+D+E-A)		72,974	2,606



□ **산출지표(output):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역의 매출액 증가율**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한 지역은 미시행지역보다 기업매출액 증가율이 31.4% 더 높음
  - 산출(output) 지표로서 기업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수행한 지역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해당지역의 기업의 평균매출액은 1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단에 참여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44.6%로 나타나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31.4%의 상승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표 4-10.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역의 매출액 성장률 비교

단위: %

구분	시행지역(시·군)	비시행지역(군)
사업전(2007~09년): 시·군평균성장률	13.2	14.2
사업중(2008~11년): 사업단평균성장률	44.6	-
상승효과	31.4	-

주1: 사업전 시·군 매출 증가율은 광공업제조업통계를 통해 나타난 2007~09년까지 해당지역의 총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증가율

주2: 사업중 사업단 매출 증가율은 사업단에 참여한 주체들의 매출 증가율

□ **파급효과(impact):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임금소득, 농가소득, 일자리 증가 효과**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파급효과(impact)는 임금소득, 농가소득, 일자리를 지표로 분석하였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총액 개념으로 정규직 임금소득 128억 원, 일용직 임금소득 257억 원, 농가소득 48억 원이 증가하였음.

- 임금소득은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나누어 살펴 봄.
- 정규직의 경우, 2009년 46억 5,500만 원, 2010년 44억 7,800만 원, 2011년 36억 7,100만 원으로 총 128억 400만 원의 임금소득을 올림
- 비정규직은 2009년 66억 1,000만 원, 2010년 81억 2,900만 원, 2011년 109억 4,400만 원으로 총 256억 8,300만 원의 임금소득을 올림.
- 농가소득의 경우, 참여농가의 소득으로 구분이 가능한 8개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009년 12억 300만 원, 2010년 14억 8,200만 원, 2011년 21억 700만 원으로 총 47억 9,2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림.

표 4-1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따른 임금소득과 농가소득 효과

단위: 백만 원

구분	임금소득		농가소득 (8개 시·군)
	정규직	일용직	
2009년	4,655	6,610	1,203
2010년	4,478	8,129	1,482
2011년	3,671	10,944	2,107
합계	12,804	25,683	4,792

- 일자리는 정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3,832명이 증가함.
  - 정규직 일자리는 사업시행 기간동안에 750명 증가하였음.
  - 일용직은 3,082명이 관련 사업처에서 종사하였음.

표 4-12.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따른 일자리 증가 효과

단위: 명

구분	일자리	
	정규직	일용직
2009년	282	826
2010년	257	989
2011년	211	1,267
합계	750	3,082

### 3.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관한 설문조사

#### 3.1. 설문조사 개요

- 향토산업육성사업 성과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사업을 담당한 지자체 시·도공무원,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사업 참여기업 및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4일부터 15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지자체 시·도공무원 148명, 향토산업 관련 전문가 178명, 사업 참여기업 및 실무담당자 205명으로부터 총 531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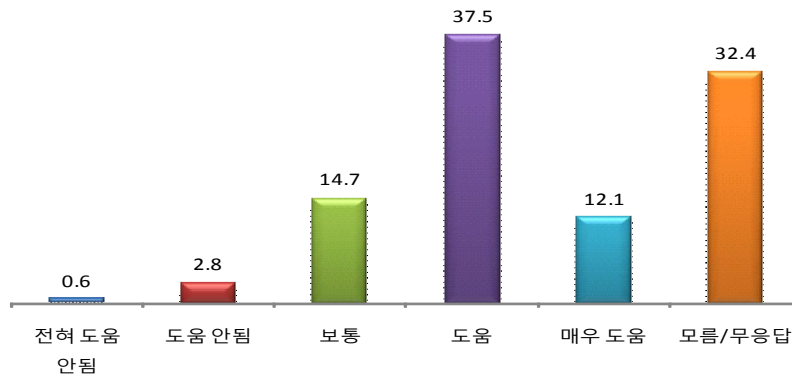
#### 3.2. 설문조사 결과

##### 3.2.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 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발전 기여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 정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9.6%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3.3%
  - 지역 발전 기여도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8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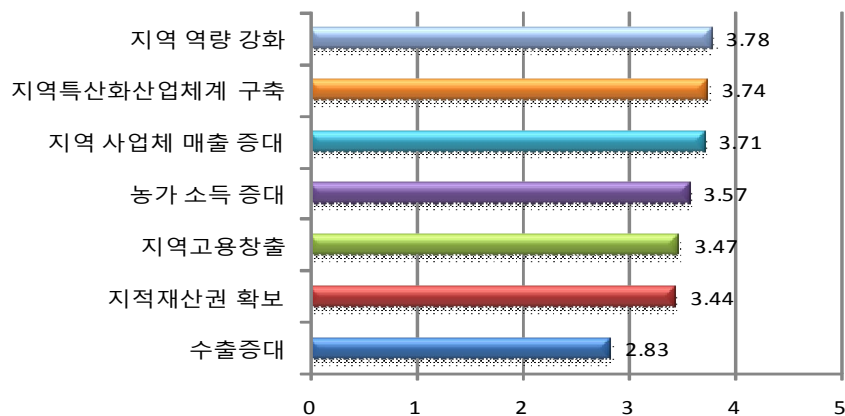
그림 4-13.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도



○ 부문별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역 발전 기여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지역 역량 강화’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이 3.74점, ‘지역 사업체 매출 증대’가 3.71점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수출증대’는 2.83점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응답함. 이는 개별 사업단별 특성의 차이로 인해 수출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단이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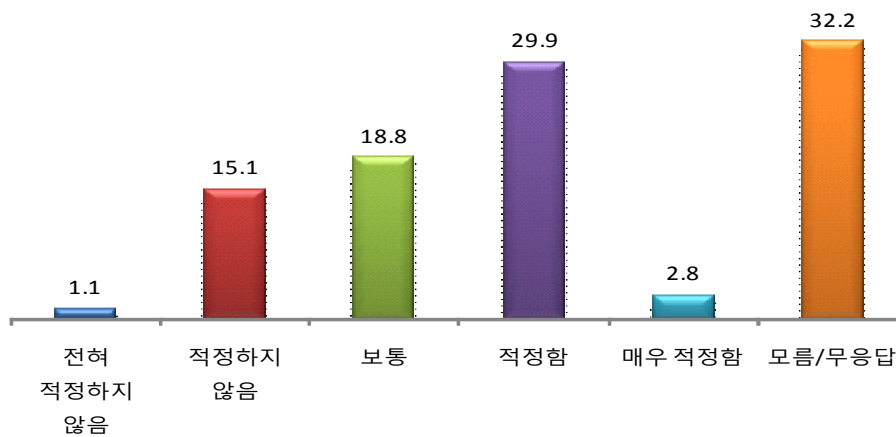
그림 4-1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부문별 지역 발전 기여도



**나.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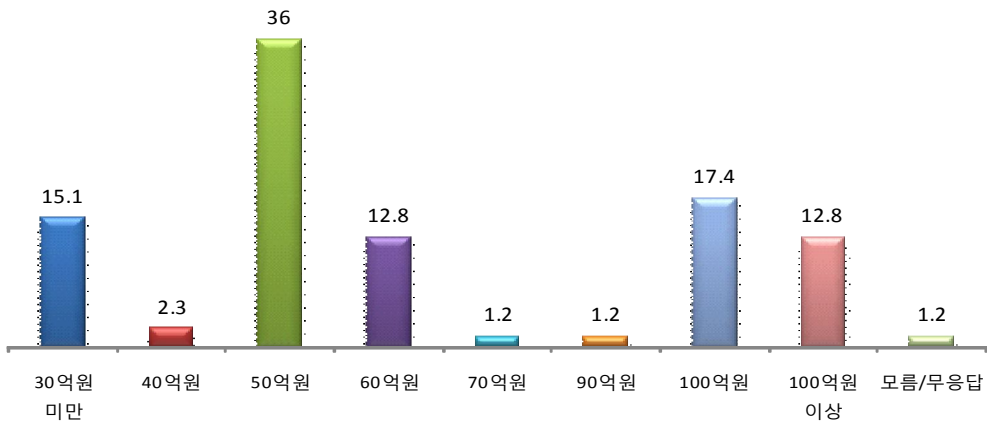
- 현행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7%(무응답 제외시 48.3%)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에 그침.
  -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27점

그림 4-15.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규모로는 50억 원이 36.0%, 100억 원이 17.4%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30억 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5.1%에 그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확대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6. 사업비의 적정한 규모(부적절에 응답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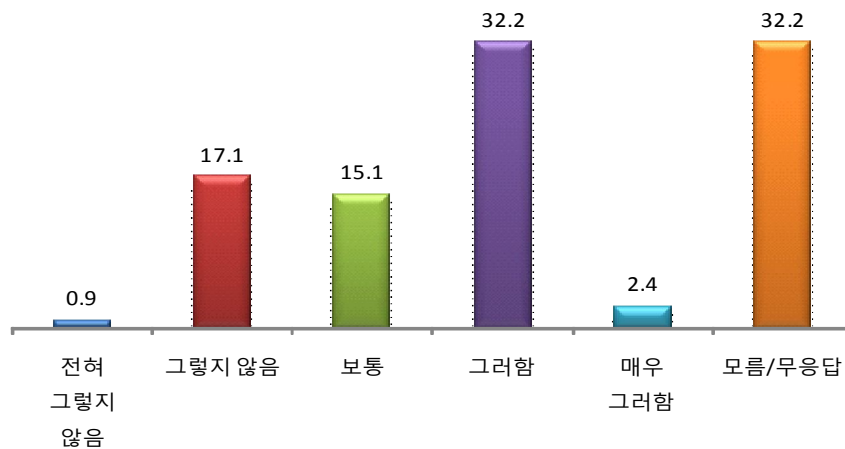


#### 다. 사업기간은 현행 3년 보다 5년을 더 선호

-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6%(무응답 제외 시 48.3%)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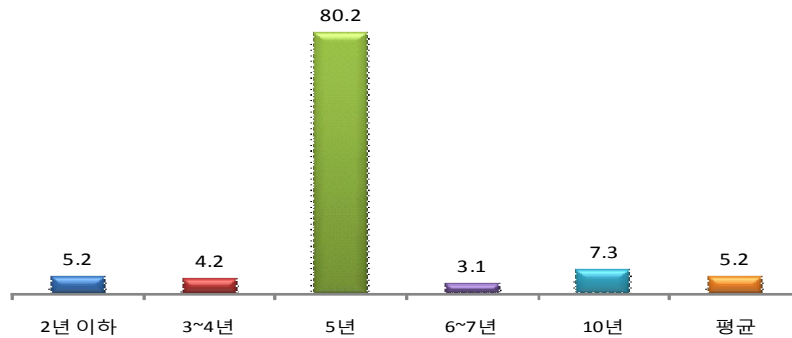
- 사업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27점

그림 4-17.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기간의 적절성



- 사업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한 사업기간은 5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5.2년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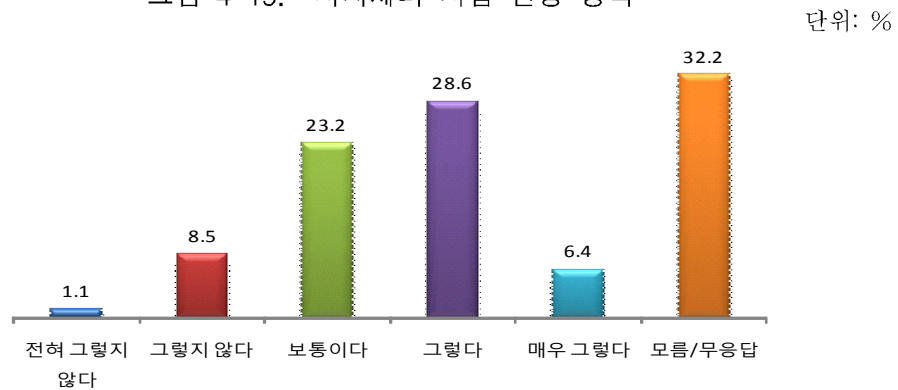
그림 4-1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 라.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

-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0%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9.6%에 그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자체 내에서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응답을 제외하면 잘 진행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은 51.7%로 나타남.
  -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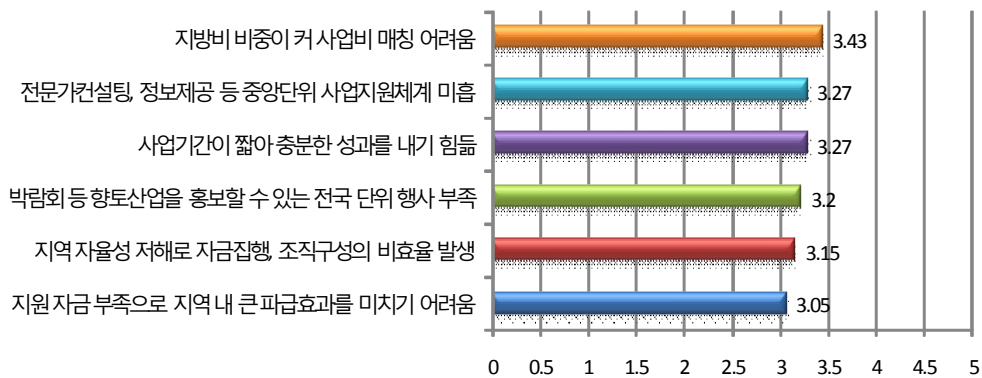
그림 4-19. 지자체의 사업 진행 능력



#### 마.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지방비 매칭 부담, 짧은 사업기간, 사업 지원체계 미흡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음.
  - ‘지방비 비중이 커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가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중앙단위의 사업지원체계가 미흡하다’가 각각 3.27점을 얻음.

그림 4-20.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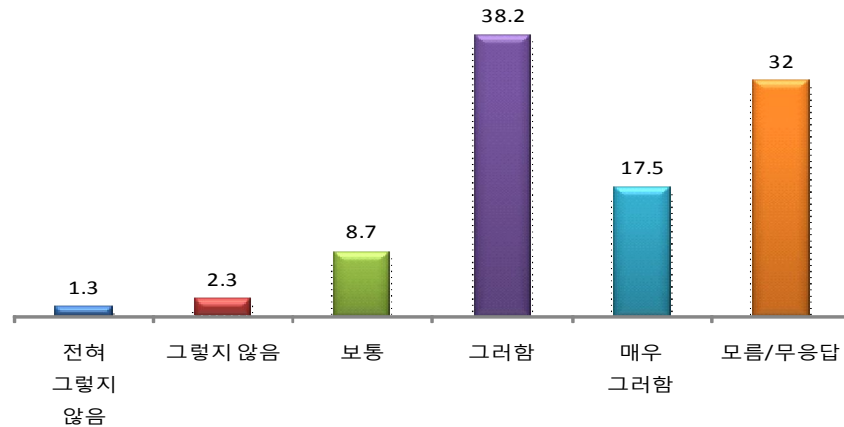
#### 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5.7%(무응답 제외시 81.9%)를 차지한 반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4.01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그림 4-2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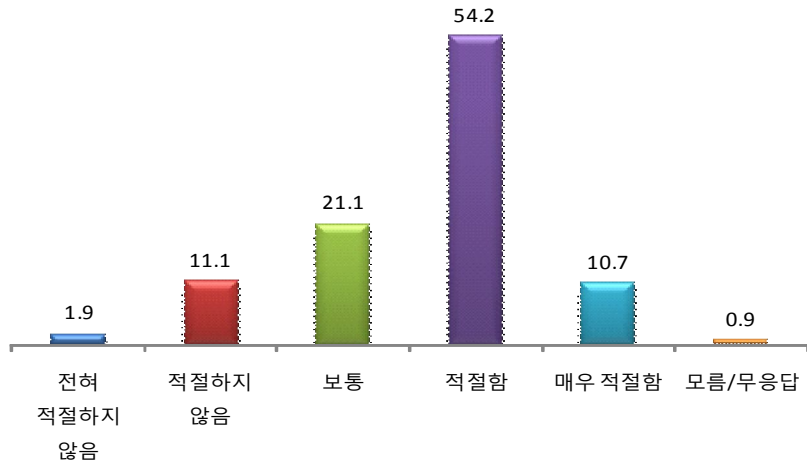


### 3.2.1. 사업 시행 프로세스

#### 가. 공모제 방식을 선호하며,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

- 현재와 같이 공모제 방식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64.9%(무응답 제외시 65.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공모제 방식에 대한 선호가 과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남.
  - 공모제를 통한 지역 선정의 적절성에 대한 5점 척도는 평균 3.6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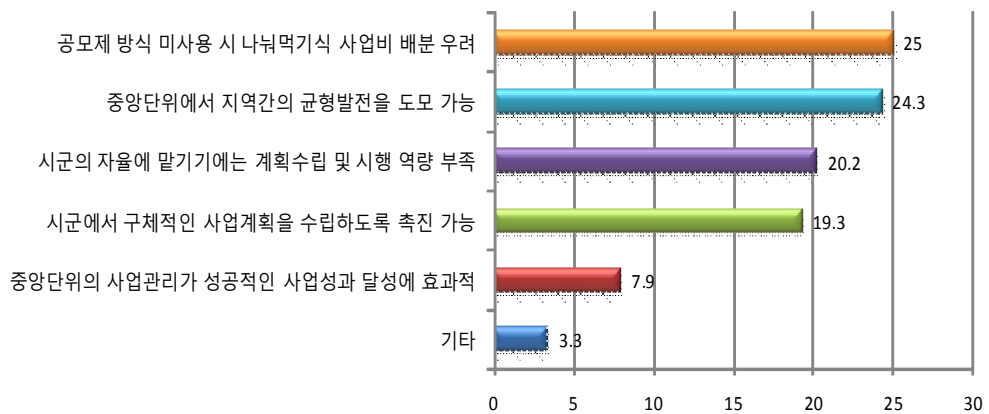
그림 4-22. 공모제 방식의 적절성



- 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로는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 우려’가 25.0%, ‘중앙단위에서 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 가능’이 24.3%, ‘시·군의 역량 부족’이 20.2% 순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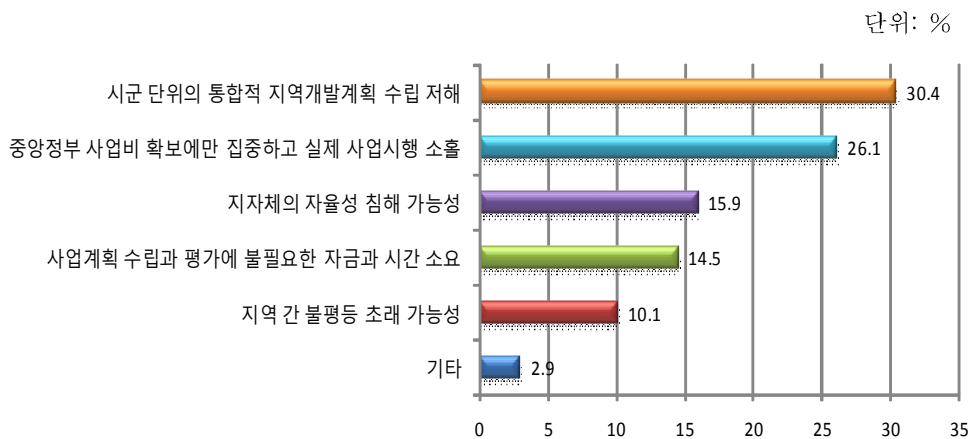
그림 4-23. 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단위: %



- 반면에,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1순위)로는 ‘시·군 단위의 통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 저해’가 30.4%,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시행 소홀’이 26.1% 순으로 나타나, 공모제 방식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주로 지적함.

그림 4-24. 공모제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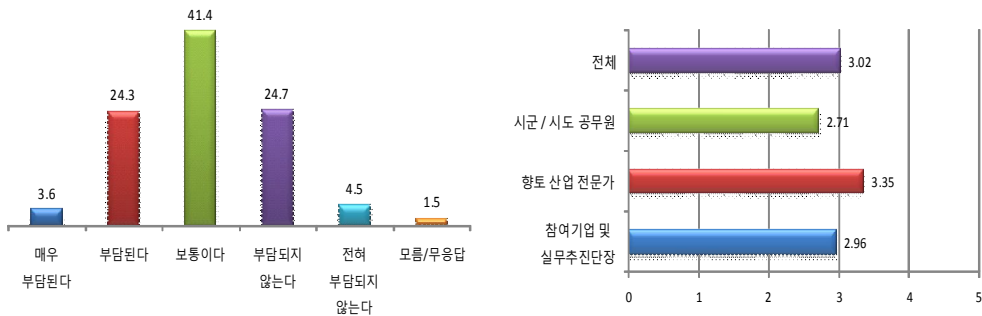


#### 나. 평가의 적절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모니터링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3년 단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체감하는 업무 부담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설문 그룹별로도 차이를 분석함.
- 지원금 사용 내역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로, ‘부담이 된다’는 27.9%에 비해 근소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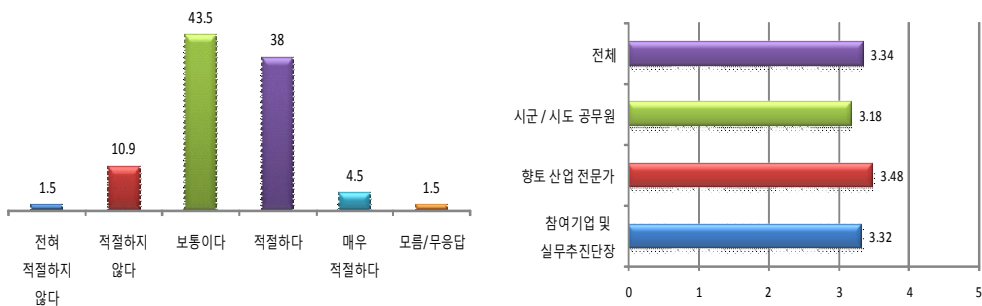
-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35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2.71점

그림 4-25.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업무부담



- 이러한 ‘컨설팅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2.5%로, ‘적절하지 않다’는 12.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48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3.18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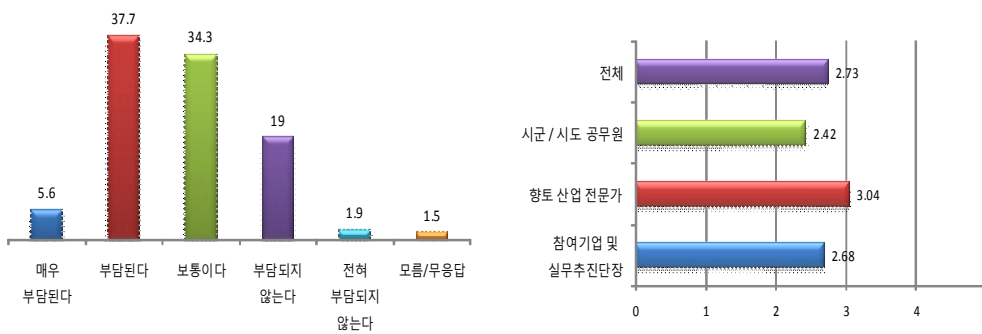
그림 4-26.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컨설팅의 적절성 여부



- 추진실적에 대해 매년 이루어지는 ‘연차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3.3%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20.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2.73점이며, 설문 그룹별로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0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은 2.42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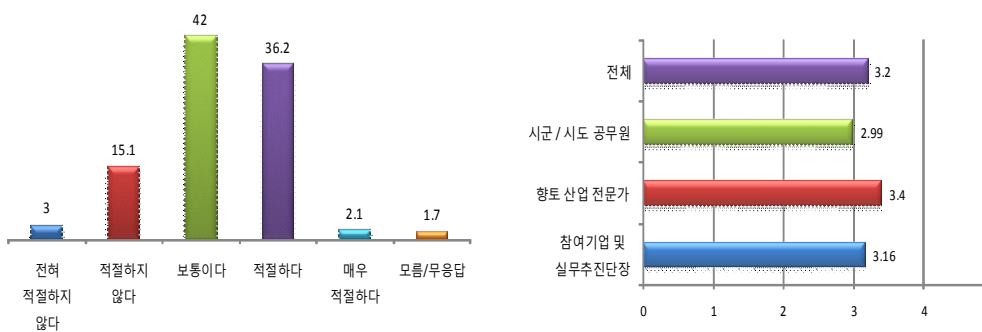
그림 4-27.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업무부담



-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과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연차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8.3%로, ‘적절하지 않다’는 18.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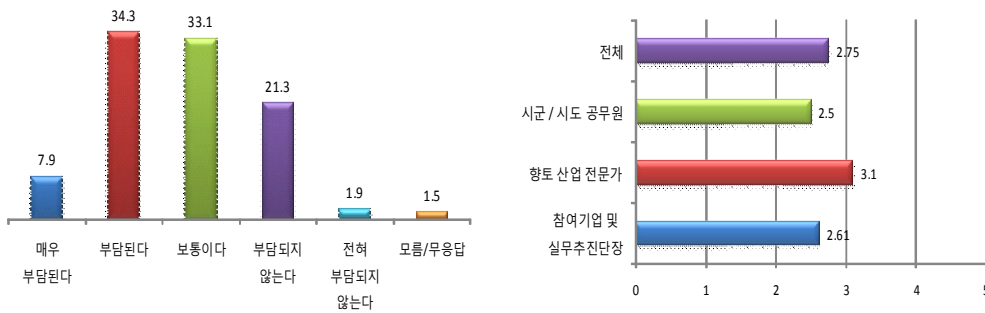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3.2점,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4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2.99점으로 가장 낮음.

그림 4-28.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연차평가의 적절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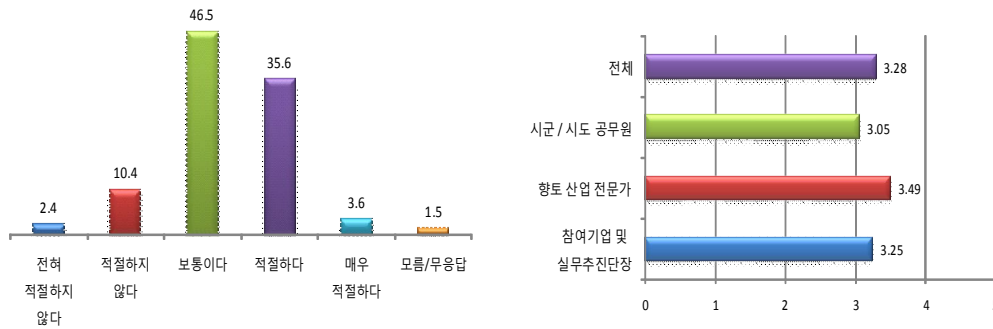
- 3년간의 사업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는 ‘성과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담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2.2%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23.2%에 비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2.75점, 설문 그룹별로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2.5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그림 4-29.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업무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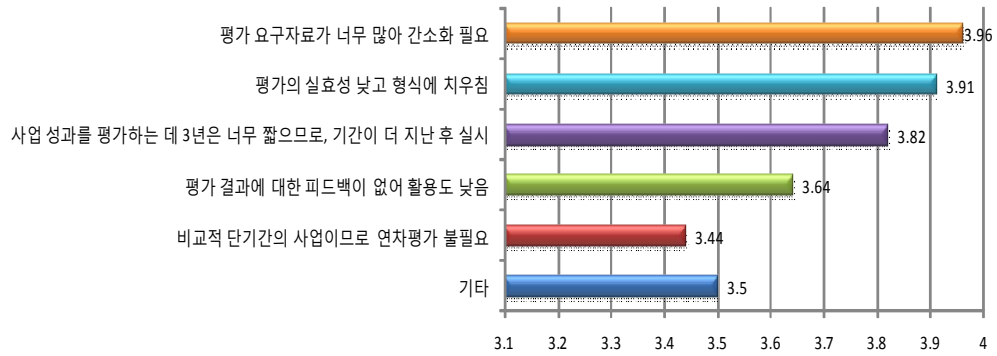
-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로, ‘적절하지 않다’는 12.8%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 이는 사업의 완결성 측면에서 최종 성과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전체 그룹의 5점 척도는 3.28점, 설문 그룹별 5점 척도는 향토산업 전문가가 3.4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지자체 공무원 그룹은 3.05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30.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 시 성과평가의 적절성 여부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평가 적절성에 대해 컨설팅, 연차평가, 성과평가로 나누어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업무부담 측면에서는 ‘연차평가’가 부담된다는 답변이 43.3%로 가장 높은 반면, ‘컨설팅’은 27.9%로 부담된다는 답변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세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 역시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항목은 42.5%를 차지한 ‘컨설팅’인 반면에, ‘연차평가’는 적절하다(38.3%)가 가장 높고 적절하지 않다(18.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평가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96점으로 1위, 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점이 3.91점으로 2위를 차지함.

그림 4-31.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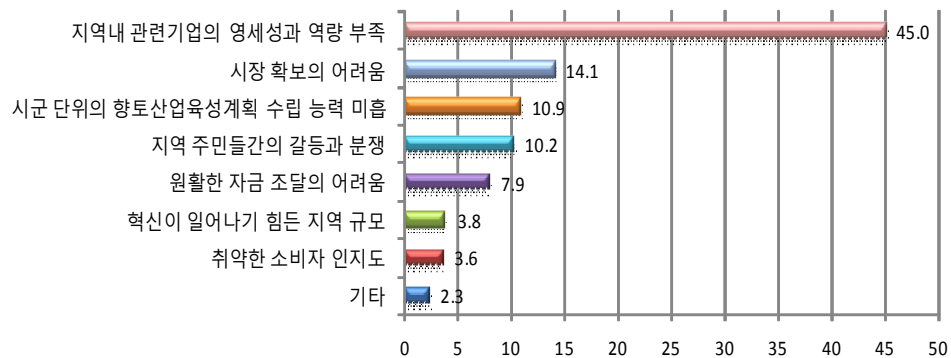


### 3.2.3.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 가.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최대 장애요인은 지역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문제점으로는 ‘지역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시장 확보의 어려움’(14.1%), ‘시·군 단위의 계획 수립 능력 미흡’(1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2.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문제점





## 나.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이 22.2%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이 20.9%,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이 20.2% 순으로 나타남.
  - 설문 그룹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이 25.7%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반면, 향토산업 전문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가장 중요하다(24.7%)고 응답하였으며,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의 경우에는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24.4%)고 응답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그룹별로 우선시하는 지원 분야에서 차이가 드러남.

표 4-13.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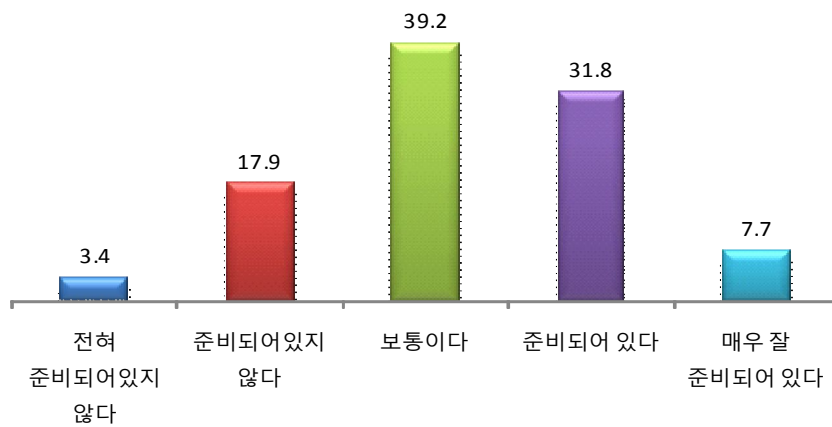
필요한 지원(1순위)	시·군/ 시도 공무원	향토 산업 전문가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 단장	전체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	25.7	20.8	21.0	22.2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21.6	24.7	17.1	20.9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비 지원	20.9	14.6	24.4	20.2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6.8	16.3	11.7	11.9
사업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8.1	14.6	11.7	11.7
성공사례 벤치마킹 확대 지원	9.5	5.1	5.4	6.4
관련정보제공	5.4	2.8	7.8	5.5
기타	2	1.1	1	1.3

## 다. 지자체 준비성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자율 시행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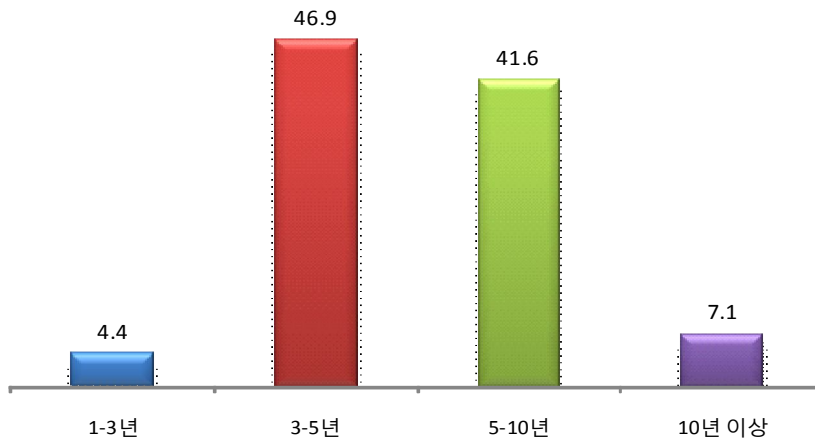
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39.5%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21.3%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4-33.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



- 포괄보조사업의 자율시행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한 지자체 준비 정도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완전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은 ‘3~5년’이라는 응답이 46.9%, ‘5~10년’이라는 응답이 41.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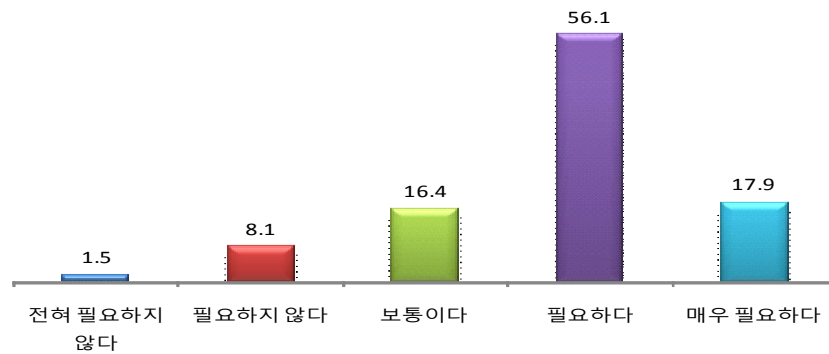
그림 4-34. 완전자율 방식을 시행하기까지의 필요한 기간



## 라.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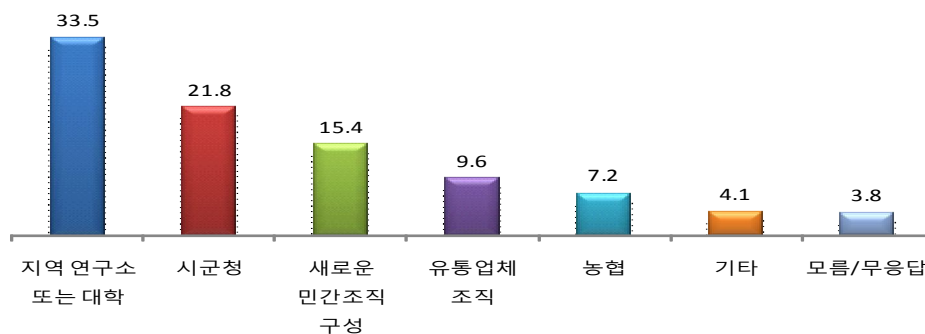
- 지역 내에서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킹과 여러 관련 실무 등 향토산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실무 조직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4.0%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4-35.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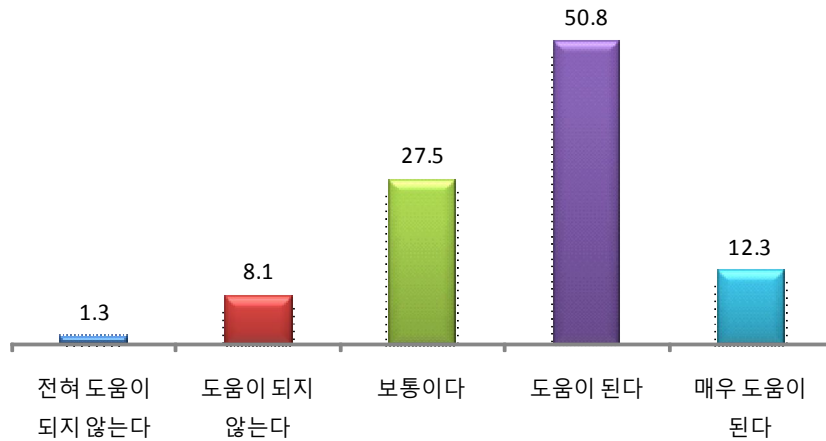
- 지역 내에서 향토산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전담 실무 조직을 설립한다면 어떤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 ‘지역 연구소 및 대학’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군청’ 21.8%, ‘새로운 민간조직 구성’ 1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6. 향토산업 코디네이터 역할 전담 실무 조직



- 지자체가 유사한 중앙정부 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경우, 지자체 내에 중앙 정부, 도청,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가칭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63.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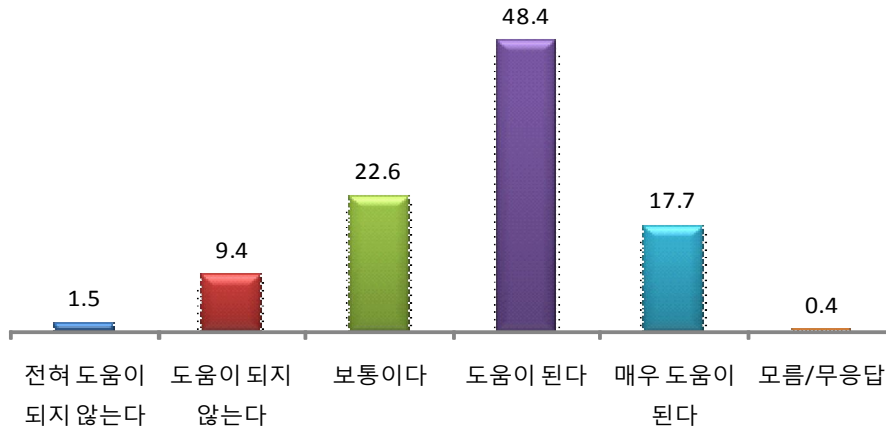
그림 4-37.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실효성 여부



#### 마. 인센티브제 및 자립화 방안의 실효성

- 사업종료 시점에서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추가 지원되는 현행 인센티브 방식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시행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66.1%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4-38. 인센티브 방식의 도움 정도



- 현행 인센티브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인센티브 활용이 사업관련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이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의 경우에는 전체의 82.4%가 이 점을 꼽음.
  - 반면에, 향토산업 전문가의 47.4%, 지자체 공무원의 29.3%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아, 설문 그룹별로 차이를 보임.

표 4-14. 인센티브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인센티브 방식에 부정적인 이유	시·군/ 시도 공무원	향토 산업 전문가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 단장	전체
인센티브 활용이 사업관련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	51.7	26.3	82.4	50.0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행정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	29.3	47.4	11.8	27.3
인센티브에 관심이 적어서	3.4	5.3	5.9	0
금액이 너무 작아서	1.7	0	0	4.5
기타	13.8	21.1	0	18.2

### 3.2.4. 기타 건의사항

- 예산증대 및 사업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및 자원발굴에 대한 지원 확대
- 주민참여 유도 확대
- 비즈니스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 확대
- 교육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 사업단 리더, 사무장, 참여기업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내 공무원 인사이동 자제
-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활발한 새로운 사업 발굴 유도
- 정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평가 방식의 매뉴얼화를 통해 객관적 향상
- 탄력적인 사업기간 운영
- 민간주도 육성 및 자율성 보장
- 지역적 특성 반영
- 선진사례교육을 통한 방향성 제고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립화와 사업화 유도

### 3.3. 시사점

- 향토산업육성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역발전 기여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에 큰 점수를 줌.
  -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하고, 사업기간은 현행 3년 보다 5년을 더 선호
  -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정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

- 결국,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 공모제 방식을 통해서 선발되는 시스템에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냈음. 이유는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
  - 연차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업무상의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평가
-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
  -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최대 장애요인은 지역내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이라는 평가
  - 해당 지역의 향토산업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자문 지원이라는 의견이 많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준비성에 대해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자율 시행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음.
  - 좀 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인센티브제와 자립화 방안은 사업수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

#### 4.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본 문제점은 사업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전문가의 원고의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추진주체의 문제, 향토자원의 경제성 한계, 사업비 배분의 경직성, 사후관리체계 미흡, 판로개척 및 마케팅 한계로 요약될 수 있음.

#### 4.1. 추진주체의 문제

- 법인격 없는 추진단
  - 추진단은 사업단 의사결정, 자문, 집행 등 사업의 중심적 기능 수행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격상 생산·가공·유통 등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불가피하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임의조직으로 운영, 안정성 결여
  - 자립화 연계가 안됨.
- 정책 수혜대상의 불분명
  - 향토산업은 사업시행주체를 시장군수로 시행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참여주체는 지역대학, 농어촌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형태가 참여하고 있음.
  - 다양한 사업참여주체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사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담당공무원의 관심 저하 등으로 사업부진의 원인이 됨.
- 추진주체의 역량 부족
  - 민간 참여주체의 관심과 역량 부족으로 대부분 행정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함. 많은 부분을 공무원에 의존하다 보니 운영위원회에 공무원 참여가 과다하게 있는 경우가 많음.
  - 실제 사무국의 주요 업무를 시·군 관련부서가 직접 처리하거나 관여하고, 사무국은 단순 보조업무 처리하는 경우도 많음.



- 본 연구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관련자들의 45%가 지역내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역량부족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시장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시·군단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 수립 능력 미흡함을 지적함.

표 4-15.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 시 문제점 (1순위)

구분	사 례 수	지역내 관련 기업의 영세성과 역량 부족	시장 확보의 어려움	시·군 단위의 향토산업 육성계획 수립 능력 미흡	지역 주민들간 의 갈등과 분쟁	원활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혁신이 일어 나기 힘든 지역 규모	취약한 소비자 인지도	기 타
전체	531	45.0	14.1	10.9	10.2	7.9	3.8	3.6	2.3
시·군/시·도 공무원	148	60.1	8.8	6.1	10.8	5.4	2.0	1.4	2.7
향토산업 전문가	178	42.7	12.4	17.4	10.7	6.2	4.5	1.7	2.8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 단장	205	36.1	19.5	8.8	9.3	11.2	4.4	6.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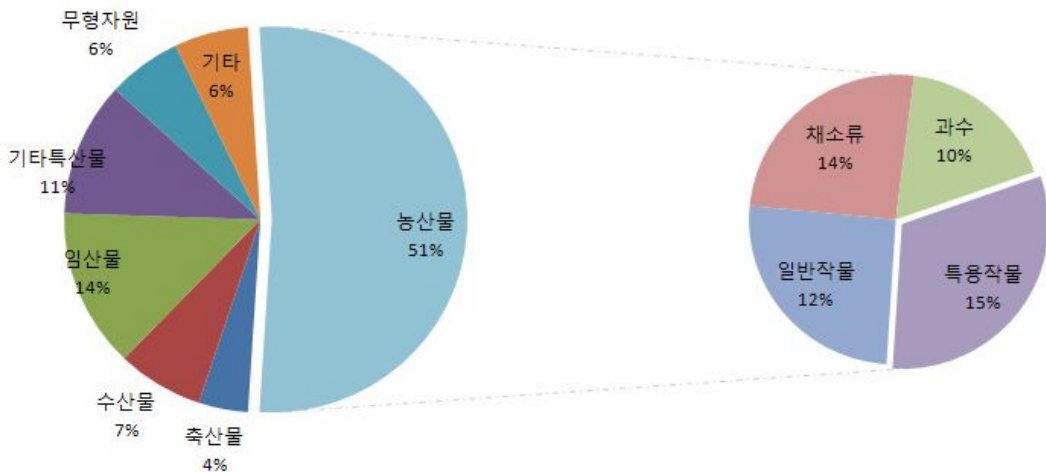
- 2011년 11월에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에서도 ‘사업추진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내실 있는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71%, 사무국장의 전문성 19%, 사업추진단의 전문성 9%,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1%로 나타나 실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추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4.2. 사업화를 위한 향토자원의 경제성 한계

-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받은 향토자원의 대부분이 농산물로 나타남.

- 지역의 향토성, 전통성 등과 연계성이 떨어짐.
  -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향토자원 중 약 51%가 농산물임. 농산물 중에서 15%가 특용작물임.
- 지원되는 향토자원 대부분이 특작물로 수도작 대체 품종 등의 농산물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농산물 위주의 향토자원 발굴은 산업화의 결과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전체 65%가 식품류 산업화에 집중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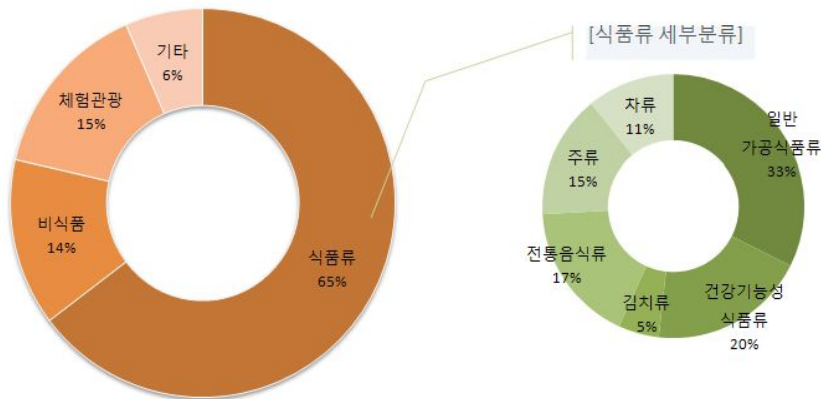
그림 4-39. 향토산업육성사업에 활용된 향토자원의 분류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011

- 전체에서 65%를 차지하는 식품류의 산업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가공식품, 건강기능성 식품류가 약 53%수준으로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4-40. 식품류 향토자원의 산업화 정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011

표 4-16. 향토산업육성 산업화 현황

합계	식품류							비식품류				
	계	가공 식품	건강 식품	전통 음식	주류	차류	김치류	계	비식품류		체험 관광	기타 (배계 등)
									화장품	섬유 공예		
215개	139	45	27	24	21	15	7	76	19	11	32	14
100%	65%	21%	13%	11%	10%	7%	3%	35%	14%	15%	6%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 2011

### 4.3. 경직된 사업비 배분

- 사업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정액사업비(30억) 지원
  - 현재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내용(산업화)에 관계없이 총사업비 30억을 지원하고 있음
  - 향토자원의 산업화 범위와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하는 방안 에 대한 검토 필요
  
- 사업내용 고려없이 자본보조사업비와 경상보조사업비의 획일적 배분
  - 자산형성적 자본보조 사업을 최소화하고 제품개발, 마케팅 등 부가가치

제고사업 투자를 높이기 위해 경상사업을 전체 사업비의 50%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음.

- \* 사업여건에 따라 가공·유통시설 확충 등 자본보조 사업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시급한 경우에도 획일적 적용으로 투자 효율성 저하됨.
- \* 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등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고, 지원 범위가 모호함.

- 특히 경상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실용화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등 사업들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음.

#### ○ 사업내용을 고려한 연차별 국비 배분액 조정 미흡

- 현행 국비 배정은 2~3년차 사업기간에 집중 투자(총 15억 원 중 12억 원)해 인프라 구축이 연차별로 분산 투자되어 효과가 저하됨.
- \* 인프라가 열악한 향토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1~2년차는 자본보조사업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
- 사업 기간 내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1~2년차에 산업화 기반 구축, 제품개발 등 집중 투자가 필요함.
- \* 2년차까지 산업기반 완료를 완료하고, 3년차부터 본격 수익구조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4.4.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 미흡

#### ○ 자립 시스템 부재

- 대부분 향토산업 추진단이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로 사업 완료 후 자립화 노력을 등한시함.
- \* 일부 사업단은 보조조건으로 운영비 출자, 적립금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경영비 조달 수준에는 크게 미흡함.
- 공동이용(관리)시설의 경우 사후관리 주체 와해로 목적외 사용, 이용율

저하, 사유화 등 보조사업 취지와 반하는 문제 발생

\* 특히, 체험장·전시장 등 비수익 시설의 경우 애물단지로 전략 우려

#### ○ 생산적 사후관리 미흡

- 보조사업 기간 중 본격 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사업단의 2단계 지원계획 등 사후관리 대책이 전무함.

\* 주기적 경영평가 실시, 컨설팅을 통한 경영활성화 방안 마련

- 기 지원 사업장의 지속 성장 프로그램 마련, 사업효과 극대화 필요

\* 경영실태에 맞게 2단계 경영지원, 전문회사로 전환, 융복합산업화 등

### 4.5. 시·도의 역할 미비

○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011년부터 광역발전 계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토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시·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

- 사업선정, 평가, 계획승인 등 주요권한이 농식품부에 집중, 시·도는 형식적 사업주관자로 권한과 책임 한계가 불분명

○ 2012년부터 평가 참여, 경미한 사업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이 위임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주관자로서 기능적 역할분담은 여전히 미흡

### 4.6. 마케팅 홍보와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책 미흡

○ 농촌 향토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판로개척과 마케팅 홍보 부담

- 기업들이 영세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도 판로가 막혀 있거나, 비슷한 제품을 대기업에서 만들게 되면 생존이 어려움.

-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영역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정부투자

에 의한 틈새유통망 필요

-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지역공동마케팅 및 수출체계 구축 분야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분야는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음.

## 제 5 장

###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향

#### 1. 농어촌산업정책의 모습

##### 1.1. 산업정책과 농어촌산업정책

- 산업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중심
  - 산업정책의 목표는 산업경쟁력 강화에 둠.
  - 글로벌화에 대응해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꾀함.
  - 공간적 범위는 국가단위와 세계시장 단위가 됨.
  - 정책대상도 산업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정책흐름은 산업별 생태계적 수직적 관통과 연관산업간의 수평적 관통이 함께 이루어짐.
  
- 농어촌산업정책은 산업정책적 관점과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음.
  - 농어촌산업정책은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농어촌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농어촌산업정책은 지역단위를 기본으로 하면서 농어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기 위해 지역적

-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좀 더 광역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함.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계 혹은 자체 내에서 시행
-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본 농어촌산업정책은 지역간 발전 격차 완화라는 측면이 더 강조됨. 기초자치단체(시·군) 중심의 공간단위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짐. 소규모 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화가 주된 영역임.

표 5-1. 농어촌산업정책의 정책적 범위

구분	산업정책	산업정책적 관점의 농어촌산업정책	지역정책적 관점의 농어촌산업정책
정책목표	산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
정책기조	글로벌화	신지역주의(광역)	전통적 지역주의
대상지역 범위	전국 세계	전국대상 광역적(시·도) 관점	행정구역(시·군)중심 소지역관심 중시
주요 정책	첨단산업 미래산업 세계화	광역경제권 사업 산업입지정책 특구정책(지역특화발전특구 등)	향토산업 지역연고산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정책경로	수직+수평	약간의 수직+수평	수평

## 1.2.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정책간의 차별화

-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광역경제권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구성됨.
  - 광역경제권사업은 5+2 광역권별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광역적으로 시·도간 협력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추구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들이 해당 시·도내에서 전략산업을 육성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에서 해당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을 육성

### 1.2.1. 광역경제권: 광역자치권간 연계

#### ○ 사업 개요

- 5+2 광역경제권<sup>16)</sup>별로 지역의 신성장 동력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시·도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자 실시

#### ○ 사업 구성: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산업을 정하고 이에 맞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

- 수도권의 선도산업은 지식정보산업
- 충청권의 선도산업은 New IT, 의약, 바이오임. 이를 위해 무선통신과 반도체, 신약 실용화와 후보물질 등의 탐색 프로젝트 수행
- 호남권의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이들 산업 발전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개발, 하이브리드카와 LED 등을 프로젝트로 수행
- 대경권의 선도산업은 그린에너지와 IT융복합. 프로젝트로 태양전지와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의료기기와 로봇 개발을 실시
- 동남권의 선도산업은 수송기계와 융합부품소재. 이를 위해 그린카와 해양플랜트를 개발하고, 기계부품과 수송부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음.
- 강원권의 선도산업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프로젝트로는 의료기기와 U-health, 관광객 유치와 의료바이오 프로젝트 수행
- 제주권이 선도산업은 물산업과 관광레저. 프로젝트로 먹는 생수와 물치료, 컨벤션과 인센티브투어를 실시

---

16) 5+2 광역경제권은 5대 광역경제권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경권(대구, 경상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상남도)과 2개 특별경제권인 강원권과 제주권으로 구성

- 사업주요내용
  -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관리한 선도산업지원단 운영
  -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선도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
- 공간적 범위: 광역경제권내 광역 시·도간 연계

## 1.2.2.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광역자치단체권내 지역산업진흥

- 사업개요
  -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산업 진흥, 지방 과학기술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
- 사업구성
  -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구축과 공동활용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 지원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역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략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지원
  - 지역전략산업기획단운영사업: 관련 기획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기 구축된 테크노파크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능 강화 및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제공
- 공간적 범위: 광역 시·도

### 1.2.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기초자치단체권내 지역산업 육성

#### ○ 사업개요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하드웨어(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와 소프트웨어(R&D,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형 지방화 기반 구축

#### ○ 사업구성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별 특화 가능한 산업분야를 발굴, 이를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 하기 위해 산학연의 네트워킹·기술개발·기업지원 등을 종합 지원
- 지자체연구소육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거나 고부가가치화 하는 데 필요한 산업화 연구소 설립을 지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지역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장비구축과 산업화가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 공간적 범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표 5-2. 5+2 광역경제권과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 비교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시도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수도권	지식정보 산업	서울	디지털컨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 업지원	특화상품 신유통채널, 관광유비쿼터스기반 디지털그피린팅, 바이오소재시험인증, 다당 류 Biomedical
		인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경기	정보통신, 생명, 문화컨텐츠, 국제물류	경기 줄기세포, 부천 LED조명
강원권	의료융합, 의료관광	강원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硏제, 관광문화	삼척 유리질석탄폐석, 속초 웰빙것갈, 주문 진 오징어, 고성 해양심층수
충청권	의약, 바이오, NEW IT	대전	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소재, 메카 트로닉스	웰빙패브릭, 렌즈, 고주파부품
		충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 /축산바이오	자동차부품, 고령친화산업, 인삼약초바이 오, 유기자카드, 한산모시, 보령머드,
		충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제천약초, 충주파스너, 보은대추
대경권	IT융복합, 그린에너지	대구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섬유, 생물	지능형자동차부품, Safety U-City 방제 안경, 모바일 디자인소재
		경북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생물한방, 문 화관광	의성 블랙푸드(마늘), 영주 생물자원 인삼 약초), 안동 Agro-Marine 바이오
호남권	친환경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금형, 전자모듈, 의료용임플란트, 하우징자재
		전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나주 천연염색, 진돗개 명견화, 신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 한우
		전북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고창 복분자, 부안 연고사업, 순창장류, 기 능성닥섬유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부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IT융합 전동복지기기, 한방실버웰니스, 해양생물, 기능식재 셔페 기물, 해양레포츠웨어, 섬유패션
		경남	지시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창녕 양파바이오, 진주 실크, 밀양 웰빙가 공제품, 하동 녹차
		울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페열활용 난
제주권	물산업, 관광레저	제주	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 콘텐츠	해조, 광어, 파워브랜드 개발

#### 1.2.4. 시사점

- 공간적 범위의 차별화가 분명
  - 광역경제권은 광역자치단체간의 연합, 지역전략산업은 광역자치단체내, 지역특화산업은 기초자치단체내로 단계적 접근
- 공간적 범위에 따른 사업구분과 공간단위가 큰 권역일수록 큰 사업으로 시행
  - 권역별 선도산업이라는 큰 울타리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전략산업을 육성
  - 광역경제권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지역전략산업은 선도산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주로 수행
- 선도산업과 지역전략산업간에는 연계성이 있어 보이나 지역특화산업과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향
  - 지역특화산업의 대표격인 지역연고산업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위 개념의 사업들과 연계되는데 한계가 있음
- 각 사업별로 별도 지원단을 운영: 중간지원조직 육성
  - 광역경제권은 선도산업지원단, 지역전략산업은 테크노폴리스, 지역특화산업은 사업단, 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운영
- 사업별 패키지화된 사업메뉴
  - 산업육성, 역량강화, R&D 투자, 전문기관 운영, 인재육성 등을 패키지화해서 종합화된 사업 시행

### 1.3. 농림수산물부품의 차별화되지 못한 농어촌산업정책

- 농림수산물부품이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산업정책 관련사업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도농교류사업 등이 있음.
  - 이중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공간적 범위가 유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이 요약 될 수 있음.
- 정책시행의 공간적 차별화 부족: 기초자치단체 중심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각 시·군이 향토자원을 활용해 산업화 시·도하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시·도 광역적 범위로 공간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시행은 시·군지역을 두 개 이상 연합해 실시하고 있어 공간적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있음
- 정책사업 내용의 유사성 존재
  - 지역내 특산물을 활용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내 관련 주체들을 묶어 협력을 유도하고 운영주체를 꾸리도록 유도
  -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내용 유사
- 지역내 활용 자원의 유사성 존재
  -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수특산물을 활용한다는 점
  -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판매를 통해 일관화 시스템 유도
- 패키지화 되지 못한 사업내용
  - 산업육성 쪽으로 국한되어 있음

- R&D, 교육, 역량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거점마련을 위한 집중투자 방식이 아니어서 효과가 낮음.
- 농어촌산업정책 실행 주무과 차이에서 오는 혼선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정책국의 농어촌산업팀에서 담당하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식품산업정책실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서 담당
  - 농어촌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농어촌산업팀은 농어촌의 산업화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식품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은 식품산업정책을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함. 결국, 두 사업만을 놓고 보면, 식품산업정책과 농어촌산업정책의 명확한 구분없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내용을 보면, 산업정책이기 보다는 농어촌 산업정책의 틀을 가지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농어촌 지역이라는 공간단위에 있는 농어촌자원을 기반으로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산업기반이 아닌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은 농어촌산업정책의 범주가 되어야 함.

표 5-3.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sup>17)</sup> 비교

구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05~ )	향토산업육성사업('07~ )
목적	지역경제발전, 농가소득향상	지역산업 활성화
자원	특화된 농수산물	지역·전통성 있는 향토자원
사업지역	광역단위(시·군연합, 시·도)	기초단위(시·군)
사업규모	지구당 기본 3년간 평균 50억원 (국고 25) *평가후 1~2년 추가지원 격년 10개소 내외 선정	지구당 3년간 30억 원(국고 15) 매년 30개소 선정
추진방식	클러스터 구성·운영(의무): (산·학·연·관)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의무): (산·학·연·관)
지원내용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 * H/W지원: 총사업비의 40%미만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등 * H/W지원: 총사업비의 50%미만
사업변천	('05)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 '08)지역농업클러스터 본사업 ( '09)광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복수시·군, 도 단위 사업단 선정) ( '11)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복수시·군, 도단위로 식품산업화 계획인 사업단 선정)	('07~'08)향토산업육성사업 시범사업 ( '09~계속)향토산업육성사업 본사업
담당부서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사업지원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선정심사, 모니터링 등)	한국농어촌공사 (선정심사, 컨설팅, 모니터링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 내부자료, 2012, 수정

- 농림수산식품부내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차별화 필요
- 지식경제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차별적 접근법 벤치마킹 필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산업정책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 발전시켜야 함.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처럼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좀 더 큰 규모의 범주를 가지고 사업화가 되는 방향으로 조정 필요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현재의 수준대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 함

17) 두 사업들이 최근 추진한 사업리스트는 부록 참조



표 5-4.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공간적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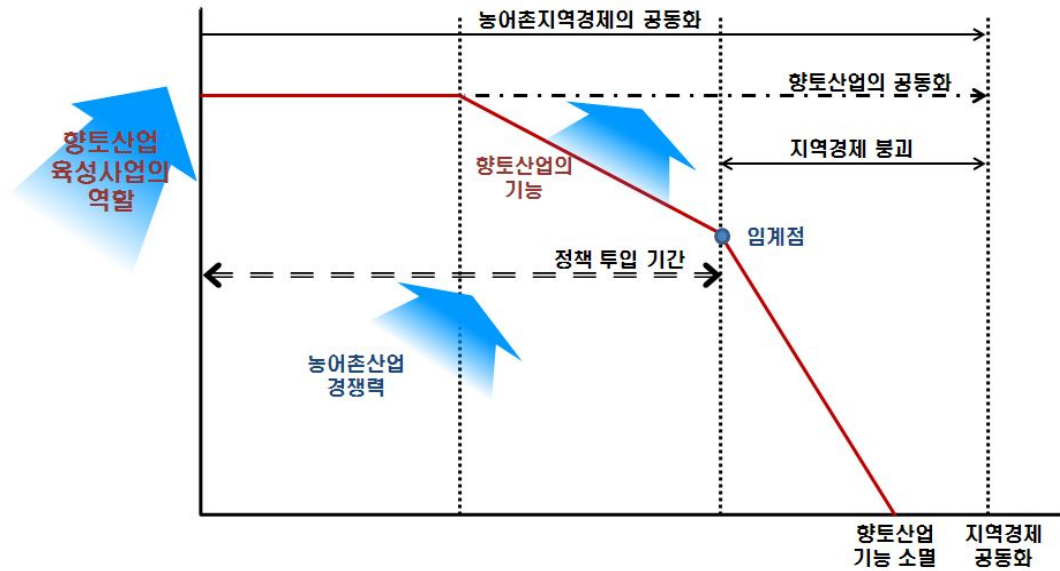
구분	공간	내용
향토산업육성사업	시·군	경제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시·도	전략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산업 중심

## 2. 농어촌산업정책의 목적과 시기별 강조점

### 2.1. 정책투입 목적과 기간

- 정책투입은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있음
  - 정책투입이 없을 경우 농어촌산업의 위축에 따른 농어촌경제의 공동화 초래
  - 정책투입은 농어촌산업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과소화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낙후지역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
- 정책투입기간은 정책효과가 발휘될 수 없는 임계점까지
  - 농어촌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농어촌산업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를 때 까지 정책투입은 이루어져야 함.
  - 정책투입기간은 정책투입을 통해 농어촌산업 경쟁력을 향상되고, 농어촌산업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단축될 수 있음.
  - 결국, 투입기간은 최악의 경우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시점까지, 최상의 경우 지역시장의 활력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그림 5-1. 농어촌산업정책 기능과 정책투입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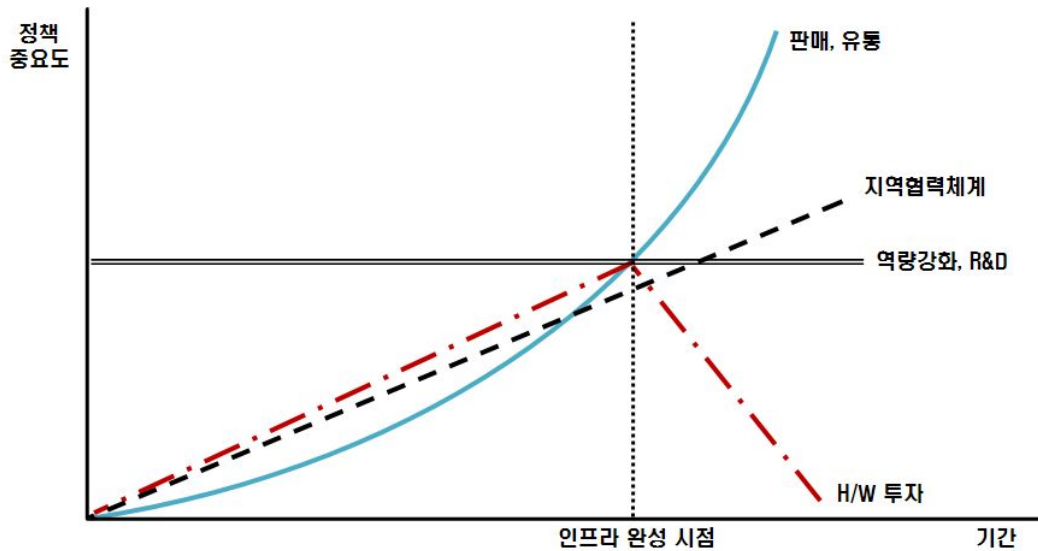
## 2.2.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시기별 강조점

- 농어촌산업의 지원사업은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진행에 따른 투자포인트가 달라져야 함.
- 지원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초점
  - 시설투자와 인프라 구축 위주의 투자
  - 사업초기에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야 중후반기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자와 사업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함.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착수해야 함.
  - 사업시작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전 단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제반여건을 완성도 높게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토지구입 관계, 시설설비 관계,

인력관계, 투자자 확보, 참여자간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련사항에 대한 법적, 제도적 사항과 거버넌스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 지원사업 중반기: 제품개발에 초점
  -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타켓 제품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시기
  - R&D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
  - 타켓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수요에 부합되는 제품인지 등에 대한 시장분석이 중요한 시기
  -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사업주체의 역량에 따라 사업진행과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역량강화 중요. 또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협력 체계의 구축도 매우 중요
  
- 지원사업 후반기: 판로개척에 초점
  - 사업이 성패는 제품의 판매에 달려 있음. 후반기에는 판로개척과 유통망 구축을 통한 제품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 투자되어야 함.
  -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이 기술을 통한 제품 개발, 사업화를 위한 사업주체의 협력체계가 궤도에 올라와 있을 시기
  - 사업종류 후 자립화와 직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준비 중요
  - 사업주체의 영리법인화가 완료되어 사업종료 후 분명한 사업화의 길로 접어들어야 함.
  
- 사업종료 후: 지역역량 축적에 따른 성과 발휘
  - 사업기간내에 투자된 내용들이 지역역량으로 축적되어야 함
  - 시설투자로 설치된 하드웨어들이 지역자본화 될 수 있도록 운영
  - 소프트웨어적 투자들로 형성된 거버넌스와 역량강화 시스템들이 지역토착화 단계로 승화되어야 함
  - 지역화, 시장화, 민간화, 자율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자율시스템 기반 구축

그림 5-2.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의 시기별 강조사항



### 3. 농어촌산업정책의 방향

#### 3.1. 기본방향

- 농어촌산업의 단기와 중장기 방향과 목표 정립
- 광역자치단체의 농어촌 산업화 정책과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농어촌 산업화 정책의 연계 및 분리 추진
- 지역의 자율성 확대와 역량 강화
- 중앙부처간 협력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 전후방 연계 산업 강화를 통한 농어촌산업체계 구축
- 생산(농)-가공(공)-유통·판매(상)의 효율적 협력을 통한 농어촌 산업 활성화

## 3.2.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안: 단기적 관점

### 3.2.1. 배경 및 추진 필요성

- 농어촌산업화 지원사업이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개별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 효율성 저하, 중복 문제 지적
  - 기재부 중기재정계획 및 '13년도 예산 심의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향토산업육성,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지경부) 등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
  - 지역발전위원회의 '09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시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간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
  - 국회 예결위 '10년도 결산 검토시 향토산업육성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간 유사중복성 문제를 지적함.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차별화와 연계 강화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많은 부분에서 지원체계가 유사한 점이 많음. 따라서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그간에 이루어진 두 사업의 투자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작업이 필요함.
  - 두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연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가칭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이나 '광역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에 권한 위임 추세 반영
  - 현행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직접 선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업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에 선정 및 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준비

정도를 반영하여 시기는 조정은 고려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축적해온 선정 및 관리 노하우를 메뉴얼화 하거나 제도화해서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 계속 시행
  - 제4장 3절 설문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1.9%로 지배적임.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3.3%에 달함. 특히, 지역 역량 강화와 지역특산화산업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임.
  - 또한, 제4장 2절 성과분석에서 서술하였듯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대와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므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 3.2.2. 단계별 로드맵

- 2014년: 현행체계 유지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별도 관리
  -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의 공간적 단위는 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의 공간적 단위는 2개 시·군 이상이 연합해서 사업을 진행
  - 선정권한은 중앙정부 유지
- 2015년~2016년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별도 관리는 2014년과 동일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시행의 공간적 단위도 2014년과 동일
- 선정권한은 시·도에 권한 위임

○ 2017년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을 통합 운영
  -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개 시·군 이상이 연합해서 하는 광역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1개 시·군단위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종료함. 그러나 여러 문제로 인해 복수 시·군이 함께 할 수 없을 경우, 단일 시·군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
  -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개 시·군 이상이 연합해서 하는 형태는 동일하나 사업명을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 고려 필요.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좀 더 전략적인 부분에 패키지화된 사업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필요
- 사업 선정은 시·도에서 실시

### 3.2.3. 사업내용 및 규모

#### 가.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농수산물, 지역특산물, 지역문화관광자원 등의 유무형자원의 활용한 산업화
-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나. 사업시행 주체

- 해당 시·군을 통한 해당 사업의 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사업 진행
- 사업주체는 영리법인,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을 원칙으로 하는 법인체

## 다. 사업기간과 사업비 규모

- 사업기간은 4년부터 5년까지 차등화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1~2년차에는 산업화기반을 구축하고 4년차에는 자립화를 하는 기간으로 활용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1~3년차에는 산업화기반을 구축하고, 4~5년차에는 자립화를 하는 기간으로 활용
  - 사업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필요

### <연구결과의 상업화 기간 3년 이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전국 579개 민간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연구소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2011)’자료에 따르면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은 18.3개월, ..... 이를 평균연구개발기간 15.7개월과 합하면 거의 3년이 걸려 상업화에 상당히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자되고 있음.”

출처: [http://www.etnews.com/news/economy/public/1665904\\_2576.html](http://www.etnews.com/news/economy/public/1665904_2576.html)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사업기간 3년 이상 필요>

#### ○ 사업기간의 적합성 의견

“~ 현행 3년으로 규정된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6%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체의 18.0%로 나타남. 사업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사업기간은 5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5.2년으로 응답”

#### ○ 사업기간에 대한 건의사항

“3년 사업수행기간이 짧아서 성과분석, 자립적 운영체계 확립에 미흡~”

“사업수행기간이 3년의 짧아 사업비 지원 및 수행 3년, 피드백, 컨설팅 2년 후 평가로 변경 요망~”



## ○ 사업비 규모: 30억 원~60억 원

- 사업내용 및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여주체, 과급효과,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을 차등 지원하고 총사업비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공간단위가 시군단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현재 30억 원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의 내용에 따라 30억 원 미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2개 이상 시군이 연합한 형태로 사업시행 공간단위가 광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50억 원 수준에서 60억 원으로 확대 필요. 이는 향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의 전략적인 농어촌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총 사업비 규모는 30억 원이 적정하며 확대시 50억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평가>**

“~ 현행 연간 10억 원씩 총 30억 원씩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2.7%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16.2%.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규모로는 50억 원이 36.0%, 100억 원이 17.4%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부담의 최소부담율은 20%: 사업유형별, 참여기업 역량,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체의 자부담율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업 참여주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임.
- SW/HW 사업비 비율은 총사업비 중 SW 분야에 5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는 현행기준을 유지 필요. 지나친 HW 중심의 투자만을 할 경우 설비의 유희화 등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임. 그러나 자부담금을 늘려서 HW에 투자함으로써 HW 사업비 비율이 50% 초과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사업단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금으로 투자되는 HW는 활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

- 연도별 사업비 배분
  - 단계별 추진사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차등배분 가능
  - 사업초기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집중 투자
  - 국고 배정의 경우, 4년간의 사업이라면 1년차에 40% 내외, 2년차 25% 내외, 3년차 20% 내외, 4년차 15% 내외로 조정
  - 5년 사업의 경우, 국고 배정은 1년차 33% 내외, 2년차 30% 내외, 3년차 20% 내외, 4년차 10% 내외, 5년차 7% 내외로 조정
  
- 인센티브 사업비 제도 개선
  - 현행 인센티브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61억 원 수준임.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이 51억 원이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이 10억 원 규모임. 이는 사실상 본 사업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구 선정권한이 시·도 이관된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도별 사업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시·도별 예산 ceiling(신규사업 지구 수) 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지구의 동기 부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3.2.4. 추진체계

#### 가. 방향

- 추진체계는 선정과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즉,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선정과 모니터링을 하는 체계와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을 수 있음.
  
- 지역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선정 및 관

리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설정함.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바 2014년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정 및 관리를 하고, 이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는 독자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여야 함. 2015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선정 및 관리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나. 2014년: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 및 광역자치단체 준비기간

### A. 선정방법

- 시·군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 모두 활용
  - 경제성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 선정 주체: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는 1차 선별 후 중앙정부에 보고
  -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1차로 선별된 모든 사업들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
- 중앙정부는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 서면심사와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문가 풀 활용
- 계획심사·승인
  - 중앙정부는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종 승인
- 선정 시기: 사업시작 전전년도에 선정하여, 사업시작 전년도는 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계의 구체화 유도

## B. 모니터링

- 실시 기간
  - 매년 실시
  -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중앙정부
  - 사업집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 비즈니스형 컨설팅 및 기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의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부여
- 전문기관
  -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집행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운영상 애로점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문가 그룹에게 컨설팅 요청
  - 민간그룹의 지원조직의 네트워크화 추진
- 광역자치단체
  -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실시
  -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

## C. 사후관리

- 사업종료시점의 최종성과평가 실시
  - 사업종료시점에서 성과평가 실시
- 전문기관
  -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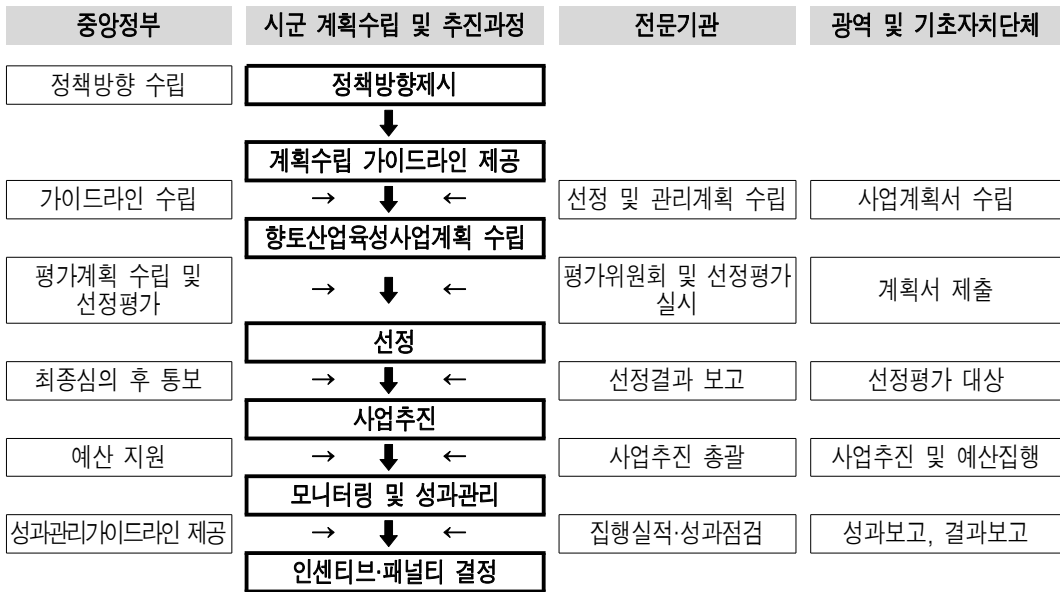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 성과물의 실용화 추진
  - 사업단의 자립화 방안 제시
  - 성과물의 DB화
- 광역자치단체
    -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 중앙정부
    -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가이드라인 제시
    -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이루어지는 자립화와 산업화에 지자체의 보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기조 마련

#### D. 장점과 단점

- 장점
  -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거시적 안목으로 사업 추진 가능
  - 지역간 유사 분야에 대한 시너지 창출 가능
  -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나눠먹기식 배분 방지
  - 전국적 전문가 풀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와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성 확보 유리
  - 지역으로 완전한 권한 위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최소화
- 단점
  - 중앙정부에 대한 지역의 의존적 사고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 지역의 지역역량 강화와 사업관리시스템의 정착이 더디게 진행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는데 한계

- 지역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한계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해 본 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에 한계

그림 5-3.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체계 유지: 향토산업육성사업 사례



**다.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관한 위임**

- 설문조사결과, 지자체의 사업 진행 정도와 지자체 준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자체에서 사업 진행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5.0%(무응답을 제외하면 잘 진행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은 51.7%)가 약간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9.6%에 그쳐,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자체 내에서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준비 정도 양호하다는 의견이 78.7%로 지배적임. 시·군/시·도 공무원과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들

이 향토산업 전문가들보다 지자체의 준비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5-5. 포괄보조사업 자율시행방식으로 변경시,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시행 준비 여부  
단위: 개, %

구분	응답수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음	준비되어 있지 않음	보통	준비됨	매우 잘 준비됨
전체	531	3.4	17.9	39.2	31.8	7.7
시·군/시·도 공무원	148	2.7	17.6	43.2	27.7	8.8
향토 산업 전문가	178	6.2	22.5	32.0	32.6	6.7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	205	1.5	14.1	42.4	34.1	7.8

## A. 선정방법

- 시·군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지역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 모두 활용
  - 경제성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 선정 주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 중앙정부는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시·도별 ceiling 한도 제시
  - 중앙정부의 선정노하우 지역에 전수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 서면심사와 공개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국적 전문가 풀 활용
  -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최대한 활용
- 계획심사·승인
  - 시·도지사가 선정한 계획서를 중앙정부가 최종 승인

- 선정 시기: 사업시작 전전년도에 선정하여, 사업시작 전년도는 계획수립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체계의 구체화 유도

## B. 모니터링

- 실시 기간
  - 매년 실시
  -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중앙정부
  - 사업집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 비즈니스형 컨설팅 및 기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 광역자치단체
  -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집행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운영상 애로점에 대한 중앙정부와 전문가 그룹에게 컨설팅 요청
  - 민간그룹의 지원조직의 네트워크화 추진
  -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

## C. 사후관리

- 사업종료시점의 최종성과평가 실시
  - 사업종료시점에서 성과평가 실시
- 광역자치단체
  -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운영
  -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 성과물의 실용화 추진
  - 사업단의 자립화 방안 제시
  - 성과물의 DB화
  -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자립화와 산업화에 대한 관리 및 중앙정부에 보고: 법인체 운영실태,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 중앙정부
-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가이드라인 제시
  -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 조치 강화
  - 사업종료 후 3년까지 이루어지는 자립화와 산업화에 지자체의 보고사항을 바탕으로 정책기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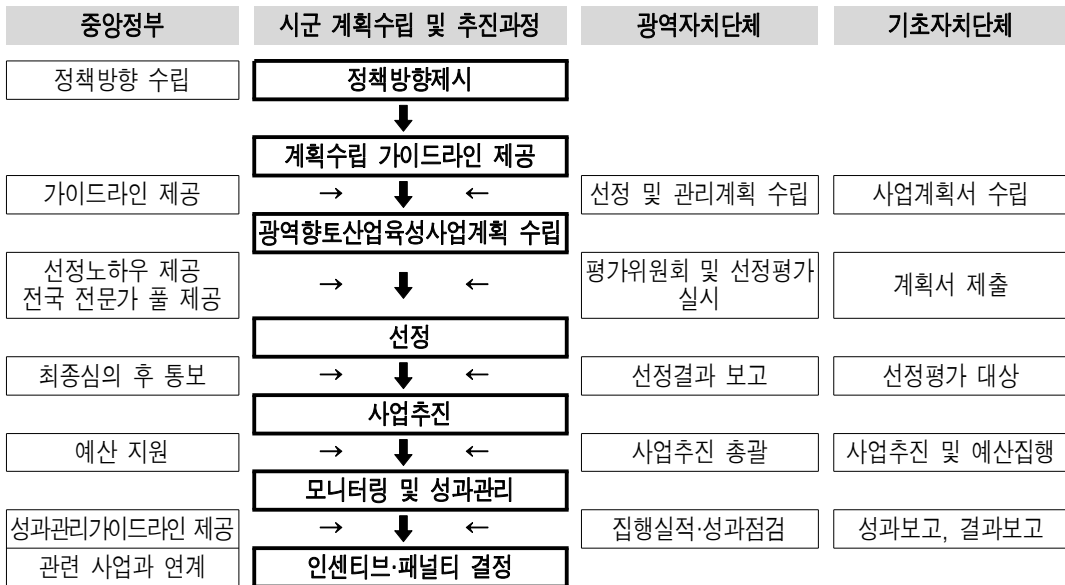
#### D. 장점과 단점

- 장점
-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책임성 부여를 통해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관심 증가 유도 가능
  -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보다 세밀하게 추진 가능
  - 지역별 문제점에 대한 정보획득이 빨라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
- 단점
-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나눠먹기식 배분
  - 중앙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 흐름과 괴리가 발생할 우려
  - 의욕과 준비가 덜된 지역의 경우 사업의 부실화 초래
  - 지역내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지역내 특정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도 초래

-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지역간 협력의 어려움 초래 가능
- 객관적 평가와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시스템
- 전국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적어, 유사 분야에 대한 중복투자에 우려 발생 가능성 큼

그림 5-4.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추진체계: 향토산업육성사업 사례



### 3.2.5. 자립화와 연계 협력

#### 가. 자립화 프로그램 강화

- 자립화방안 수립의 실효성에 대해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자들은 유용하다는 의견이 88.7%로 지배적임.

표 5-6. 자립화방안 수립의 실효성 여부 설문조사결과

단위: 개, %

구분	응답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31	3.0	8.3	20.9	55.4	12.4
시·군/시·도 공무원	148	2.7	14.9	28.4	45.9	8.1
향토 산업 전문가	178	1.7	5.6	14.6	57.9	20.2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	205	4.4	5.9	21.0	60.0	8.8

- 사업추진 주체를 법인화(영리법인, 협동조합법인, 사단법인 등)
  - 참여기업들이 직접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형성
  - 기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충돌되지 않게 상호보완적인 사업아이템을 사업화해야 지속가능함.

#### 사례: 제주돈육수출센터(JPC)

##### <사업 착수 계기 및 경과>

- 사업설명회 2, 3차례 하면서 모집
-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업화
- 창립총회 당시 자본금 9억 5천만 원으로 발기인대회, 사업자등록을 시작

##### <매출>

- 연매출 40~50억 원 수준인데, 2012년 예상 매출액은 30억 원 수준

##### <성과 및 경쟁력>

- 의식구조 개선 효과 큼. 시장조사 결과, 맛과 품질 비교에서 더 향상되었다는 결과

### <유통경로>

- 현재는 소셜커머스 위주로 판매
- 도내에서는 대리점영업체계로 전환하기 시작. 제주 흑다돈으로 도 사업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실시. 그 외 판매점 13개는 식당 위주

### <의의>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비선호부위의 가공산업을 늘려주었다는 데 성과
- 돈까스제품 등은 개별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 사업 완료 전에 법인화를 시켜야 자립화 가능 시사

### <사진자료>



- 사업 종료 이전에 자립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지막 년도에 자립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집중 사용
  - 판로, 유통채널 확보와 홍보 마케팅을 위한 집중 투자
- 법인 운영자금 조달방안 강구 필요
  - 사업지원기간동안에는 참여기업들이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적립 필요

- 사업종료 후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저리융자금, 펀드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을 충당할 필요

<저리융자금 사례>

- \* 농림수산식품부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관련 지원 제도 신청 시 정부지원사업 우대
- \*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자금 5,000 만 원 이내 융자; 연리 1.5%
-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운영자금 5,000 만 원 이내 융자; 연리 1%
- \*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 운영자금 1억 원 이내, 연리 2%
- \*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단체는 5백만 원 이상 5억 원 이내, 연리 2.05%

**나. 사업간 협력: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간 추진체계 연계·통합 운영**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간 연계(1안)
  -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사업단을 선발하여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발전적 계승이 되도록 유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춘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계승하고, 이전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차원높은 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특히 판로 및 유통, 품질 제고, 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농어촌전략산업으로 육성
- 1개 기초자치단체만으로 추진하는 시·군단위 향토산업육성사업과 2개 이상의 시·군이 연합해 시행하는 광역단위 광역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구분 (2안)

- 1개 기초자치단체만이 추진하고 하는 경우, 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2개 이상의 시·군이 연계된 경우, 광역향토산업육성사업계획서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제출
    - \*시·군 연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됨. 이에 대한 확실한 협조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
-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과는 일원화 필요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산업 정책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농어촌산업을 담당하는 과로 일원화 필요

### 3.3. 농어촌 산업화 지원정책의 중장기 방향

#### 3.3.1. 중점사항

- 정책추진
  -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사업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사업으로 분리 및 연계 추진
- 정책목표
  - 농어촌의 우수한 자원 발굴을 통한 농어촌산업 인프라 구축
  - 농어촌의 전후방 연계를 통한 농어촌산업 육성
  - 농어촌의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 농어촌 역량과 농어촌산업 주체 역량 강화
  - 농어촌 협력체계 강화

### 3.3.2. 농어촌산업정책의 이원화: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농어촌전략 산업육성사업)과 기초자치단체단위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 가. 전제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종합적 사업(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필요
  - 농어촌산업정책은 농어촌 지역산업정책이므로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이루어야 함.
  - 광역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기초단위의 작은 공간의 사업이 사각지대화 될 수 있음.
  - 기초단위 사업만 추구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지속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시·군단위를 2개 이상 연계한 것만으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면 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기초자치단체별로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고, 시·군단위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의회의 다양한 요구를 함께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시·군 연합체가 각각의 사업을 엮어 추진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광역단체인 시·도가 주관하고 시·도차원에서 마련한 계획과 시·군에서 하려는 계획간에 접점을 찾아야 함. 시·도는 인프라 사업과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시·군단위는 산업화에 초점을 둬으로써 시너지를 내야 함.

#### 나.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

- 지향점

- R&D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클러스터
  -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 사업은 종합패키지화
  - 관리주체는 중앙정부와 시·도
- \*중앙정부는 시·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진행하게 될 전략분야에 대해 타 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정작업을 주도적으로 실시
- \*시·도는 중앙단위에서 선정된 전략분야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권한을 가짐

### 포터의 클러스터론

- 클러스터의 개념
  -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서로 연관된 기업, 전문 공급자, 서비스 제공자, 유관기관(대학, 연구소, 직능단체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지리적 집합체
  - 클러스터는 ‘산업의 지역생태계’로서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의 전후 방연관관계, 기업간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체계 등이 비교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하고 변화해 가는 유기체
-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
  - 클러스터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① 양질의 특화된 혁신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 ② 지적재산권, 지역내 경쟁, 세계시장에의 개방성 등을 포함한 지역의 경쟁 환경
    - ③ 지역의 수요조건
    - ④ 지역내 수직적 및 수평적 연관관계에 있는 산업의 밀도와 상호연계성
  - 다이아몬드형이 클러스터내 미시적 사업환경을 구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자료: 김영수 외. 2011. p237 인용



## ○ 사업개요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단위에서 농어촌의 특성화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해 농어촌혁신체계의 구축, 농어촌산업기반 구축, 농어촌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패키지화
-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시·군단위 기초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시·도단위에서 집중투자 할 핵심분야 선정

## ○ 사업구성

- 농어촌산업기반구축사업: 농공단지와 연계한 농어촌산업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장비 및 시설의 구축과 공동활용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종합지원
- 농어촌산업기술개발사업: 농어촌별 전략산업 특화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지역R&D거점육성사업과 연계
- 지역R&D거점육성사업: 시·도단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농어촌산업기술개발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연구인력 양성하여 농어촌 소재 기업에 고급 인력 제공
-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기업 관련 서비스(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활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 등과도 연계
- 농어촌산업기획단운영사업: 시·도단위에 농어촌산업에 대한 전략과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광역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산업의 효율적 추진

- 공간적 범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 네덜란드 푸드밸리(Food Valley): 소지역이지만 강한 R&D 기반 존재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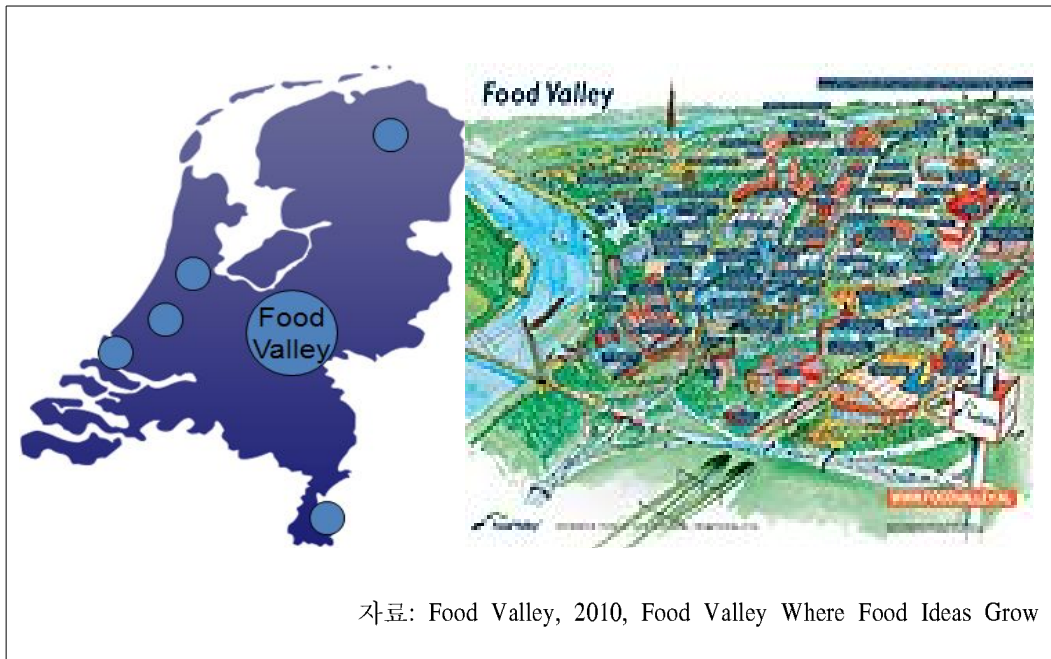
-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에 위치: 인구 37,414명(2010년)
- 1997년부터 태동, 2003년에 공식 출범
- 15,000명의 과학자, 1,440개의 식품관련 회사, 70개의 과학관련 기업, 20개의 연구기관, 와게닝겐 대학과 연구센터

#### <푸드 벨리를 운영하는 3대 기관>

- Oost NV
  - 자금, 운영 Consulting을 담당하며 중앙/지방 정부가 50%/50%를 출연/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 ~2014년 3년간 1/3씩 중앙정부 지원금을 삭감하여 2015년부터는 50% 지방정부 출연 + 50% 매출/수익 자체 창출을 통한 민영화 방향으로 변화
- WUR(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 기초, 응용, 실용화 과학 기술의 연구
- Foundation (재단)
  - 해외 홍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여타 해외 식품/Agro-Bio Cluster 단지와의 교류

#### <성공포인트>

- WUR(Wageningen University Research)라는 R&D 기반이 충실한 곳에 푸드벨리가 설립되었기에 단기간에 성공 가능
- 가치판단의 기준을 상업적 가치에 둬. 시장중심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시스템
- 대학-민간연구소-관련기관-정부의 건실한 협력체계



#### 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 ○ 지향점

-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진 지역클러스터의 브랜치 역할
-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점지역에 소재한 지역클러스터를 최대한 활용
- 관리주체는 포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자치단체

##### ○ 사업개요

-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있는 산업 발굴
- 발굴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지역발전의 핵심 주체인 산·학·연이 중심이 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R&D,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 등)를 연계·지원함으로써 농어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화 기반 구축

-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발휘. 광역단위사업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 사업구성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에 산재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발전. 이를 고부가가치화·브랜드화 하기 위해 산학연의 네트워킹·기술개발·기업지원 등을 종합 지원
  - 핵심주체 육성: 사업단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법인화(영리법인, 협동조합 등)를 유도하고 제품개발, 제조, 유통,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농어촌기업으로 육성
- 공간적 범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 3.3.3. 효율적 추진체계 방안

#### 가. 지역의 역할 강화

-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발굴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 지역내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의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중요
- 지역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내 학습모임, 외부전문가를 통한 교육, 객관적 선정과 집행을 위한 목표 공유 등을 위한 지역차원의 역할 중요
- 외부자본, 외부지식, 외부네트워크 등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역량이 지역에 집적되도록 하는 지역내 연결고리를 지역내실화 도모

#### 나. 광역자치단체단위사업과 기초자치단체단위사업간의 연계 및 협력

- 광역자치단체 단위사업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선별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 그리고, 판로 및 유통, 품질 제고, 원천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패키지화된 사업으로 발전
- 기초자치단체 단위사업은 현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같은 수준의 사업으로 진행
- 연계를 위해 시·도차원의 전략분야와 시·군단위의 향토산업분야가 어느정도 관계성이 있도록 유도
  - 전략분야와 향토분야가 서로 상이하게 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음
  - 지역의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시·도의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공간적으로 집적될 수 있도록 유도
  -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시·군단위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산업계와 연계
  - 광역시·도에서 전략분야를 중앙정부와 함께 선정하고, 기초 시·군은 이에 맞는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 다. 농어촌자원 발굴의 체계화

- 향토성과 경제성을 함께 지닌 자원의 발굴을 통한 사업화와 과학적 접근
  - 경제성을 등한시하고 향토성만을 강조하다보면 시장성 확보에 어려움
  - 지역조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시장성이나 역사성 외 드러나지 않고 내재되어 이는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과학적 접근 필요
- 특정 자원에 대한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개발동향 파악 철저
  -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정도와 원천기술 획득 여부, 상품개발 정

#### 도 등을 파악

- 이를 통해 투자금액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 중복투자를 회피할 수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발한 사항이라면 해당 지역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음
- 농어촌자원에 대한 DB화(자원, 제품개발정도, 참여 지역 및 기업 등)
- 과학적 조사를 통해 발굴된 자원을 DB화하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필요
  - DB에는 조사된 자원, 지역, 역사성, 향토성, 경제성, 관련 제품의 개발정도, 관련 지역과 기업, 전문가 등에 대한 자료 수록

### 라.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

- 선정주체
- 시·군단위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자율 시스템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객관적 선정하고, 농어촌전략산업육성사업은 중앙정부가 선정
  - 중앙정부는 전문가 풀을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직간접적 참여
  -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지역의 역량 강화 계기 제공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농어촌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지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성 유지가 관건
  - 평가위원회 구성시 전국적 전문가 풀 활용
  -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할 경우는 중앙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일정부분 참여토록 의무화

## ○ 사후관리

-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전국적 전문가 풀을 활용
- 중간평가
  - \* 매년 종료시점에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 병행
  - \* 성과중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컨설팅을 병행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함.
  - \* 성과에 따른 공과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제도 엄격히 적용
  - \*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실시를 통해 투자금액의 정당한 집행 감시
- 최종평가
  - \* 성과 위주의 평가와 자립화 정도에 대한 심층적 평가
  - \* 매출액 증가, 지역경제과급효과 등의 계량적 요소 반영
  - \* 사업주체의 법인화를 통한 자립화 방안 마련 검증. 폐업상환의 법인화가 아닌 실제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매출을 창출시키는 법인체 검증
  - \*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실시를 통해 투자금액의 정당한 집행 감시
- 사업종료 후 일제 조사 실시: 법인체 운영실태,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

**마. 사업추진 주체의 효율적 법인화(영리법인,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 ○ 필요성

- 사업주체의 법인화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구축. 법인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종료 후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적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이 담보 될 수 있도록 법인화할 수 있도록 자립화 방안 수립 의무화
- 법인화가 되었다는 것은 참여주체간의 사업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타냄

- 그러나 법인화가 실제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인화에 맞는 아이템과 협력체계가 필요

그림 5-5. 사업추진주체의 법인화 예시: 영리법인화



- 각 사업단의 특성에 따라 영리법인화, 협동조합, 사단법인 형태 등으로 발전할 수 있음. 다만, 사업종료 후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담겨야 함.
- 법인화 실태
  - 2011년에 종료된 28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을 중심으로 전화인터뷰 실시
  - 28개 사업단 중 17개 사업단이 법인화를 완료하여 법인화율이 60.7%
  - 17개 법인 중 영리법인은 12개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리법인화율은 42.9%로 가장 많음.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법인화 한 경우로 의미있는 수치임. 향후 자립화를 위한 영리법인화의 중요성과 그 성공여부 등을 면밀히 주시 한 후 세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표 5-7. 2011년에 종료된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단의 법인화 실태

사업명	유형 구분	사업단 존치 여부	사업후 사업추진단 명칭	사업단 형태
인삼쌀떡주 관광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김포파주인삼농협	
홍천잣 명품화사업	1차산업 중심형	0	홍천잣명품화사업추진단	농업회사법인
신선편이사과 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주)충주신선편이사과사업단	농업회사법인
보은황토대 산업 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X		
고품질 안전인삼 농식품생산	복합형(1,3차)	0	베제대 산학협력단	
전통모주 개발	2차산업 중심형	X		
추어탕 브랜드육성사업	1차산업 중심형	0	남원추어탕브랜드육성사업단	농업회사법인
소양철쭉 명품화	복합형(1,3차)	0	완주소양철쭉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무주천마향토산업	복합형(1,2,3차)	0	무주천마향토산업사업단	-
황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복합형(2,3차)	X		
순천만 갈대 산업화 사업	복합형(1,2,3차)	X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재)천연염색문화재단	
광양메실 명품화사업	1차산업 중심형	0	빛그린메실사업단	농업회사법인
담양군 한과 명품화 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한과명품화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웰빙전통 도자산업	복합형(2,3차)	0	강진청자협동조합	중기청 법인
영광모시있송편 명품화사업	복합형(1,2차)	0	영광모시있송편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진도 울금(강황) 명품화 및 산업화	1차산업 중심형	X		
천연염색·한지 명품화사업	2차산업 중심형	X		
영주스타식품개발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영주스타식품개발사업단	사업자 등록만 된 상태임
전통염색산업화	2차산업 중심형	X		
경산 맛나베 대추 Fusion Food 개발	2차산업 중심형	X		
고추(씨)를 활용한 R&D사업	2차산업 중심형	X		
칠곡 벌꿀과 차조기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과 산업화	2차산업 중심형	X		
울진 계(대계·홍계) 식품산업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울진계식품산업육성사업단	(재)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내 하부조직으로서, 도 출연기관임
별주부전테마관광	3차산업 중심형	0	별주부전테마사업단	영농조합법인
얼음골사과명품화사업	1차산업 중심형	X		
거제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3차산업 중심형	0	거제맹종죽영농조합	영농조합법인
제주흑돼지고기명품화육성사업	2차산업 중심형	0	제주돈육수출센터	주식회사

## ○ 특이사항

- 법인화 후 운영자금을 수익금을 통해 확보한 법인체의 경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제주돈육수출센터와 충주신선편이사업단이 이에 속함.
- 참여한 기업체간의 사업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상호보완적일 경우 투자와 사업이 원활함. 제주돈육수출센터가 이에 해당됨.
- 사업단이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공조직화 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음. 울진계식 품산업육성사업단이 출연기관화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사례임.
- 협동조합을 통한 사업화를 하는 경우, 자금이나 시설 확보가 원활해 사업의 지속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 그러나 고급 연구인력 수급이나 마케팅 관련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김포과주인삼농협이 이에 해당함.

## □ 영리법인화

## ○ 장점

-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립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화 모델로의 전환이 빠름.
- 주주참여를 통해 사업자본을 확보할 수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지분의 크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

## ○ 단점

- 지나친 자본논리로 기업이 운영되다 보면 지역협력이라는 차원을 망각할 수 있음.
- 대자본의 투자에 유리한 반면 대자본가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지역적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 협동조합

## ○ 장점

- 소수의 인원으로도 법인화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에 유리
- 조합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상생발전이 목적으로 협력시스템 우수
- 지역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지역과의 조화 우수

## ○ 단점

- 영리법인과는 반대로 1인 1표제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빠른 의사결정이 어려움.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요구에 대한 대응이 느림.
- 함께 하고자 하는 인내심이 강한 리더가 아닐 경우 갈등 빈발

## □ 사단법인

## ○ 장점

- 법인 설립이 수월
-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영역에서 사업추진이 가능
- 특성상 지역전체나 지역산업 전체에서 다른 법인간의 조정과 연결고리 시 유리

## ○ 단점

- 비영리단체로 사업화가 어려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산업화를 위한 법인 형태로는 맞지 않음

**마.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사업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 제도 도입
  - 농어촌향토기업전문코치제도: 산업단지공단과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기

업주치의센터사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품기업컨설팅지원사업 활용 혹은 벤치마킹을 통해 농어촌향토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기업주치의센터사업 개요

#### <도입배경>

- 다양한 중소기업지원기관(대학, 연구기관, 센터 등)이 존재하나, 공급자 위주의 복잡한 지원체제로 인한 기업의 제도 활용도·효과성이 미흡한 바,
-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10. 3. 18, 국민경제대책회의, 지경부)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과제로 기업주치의제도 도입 결정
- \* 시범지역으로 4개단지 선정 : 반월시화, 구미, 창원, 광주('10.12 월 지경부)

#### <사업목적>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밀착식 성장코칭 및 전문컨설팅 제공을 통해 세계적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 <운영방향>

- 지역 내 産·學·研·官 기술혁신자원을 결집·연계해주는 플랫폼 기능 수행으로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전통적 생산성 향상 이외에도 경영혁신 관련 전략 수립 및 비전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코칭(Growth-coaching)을 담당
- 기술, 경영, 금융 분야의 전문 주치의 인력 운용(Full time\*)을 통해 기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 및 성장지원을 위한 깊이있는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이 기업주치의센터 지정운영
- 센터는 특정 지역내 근접거리(30분 이내 접근)에서 일정 범위(100~200개)의 특화산업 기업을 전담 관리·지원

**<과업범위>**

- (기업진단 서비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핵심 당면과제를 도출하는 진단 서비스 제공
- (과제해결 서비스) 중소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성장 코칭 서비스 제공
- (정책연계 서비스)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 맞는 정책 연계 제시
- (기업역량강화지원 서비스) 대상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전문교육, 전문세미나, 워크샵, 조직학습 등의 제공
- (중견기업육성지원 서비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체계적인 전문컨설팅과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료: 보도자료, 2012년 5월 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 농어촌향토기업경영자문단 운영: 대한상의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경영자문단제도를 최대한 활용 혹은 벤치마킹

**중소기업경영자문단 개요****<배경>**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은퇴한 대기업 경영자의 경륜과 경영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달하기 위해 2004년 만든 자문단
- 대기업에서 재직 중 쌓았던 문제해결능력 등 노하우를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역할
-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외에도 2008년 12월 24일 결성된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자문단 등이 있음

**<활동>**

- 전경련 소속의 경영자문단은 2012년 현재 140여 명의 경영자문위원이 3회 이내 단기 자문부터 최장 5년까지 무료 컨설팅 활동을 펼침
- 자문하고 싶은 중기인은 전경련 홈페이지나 전경련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전국 38곳의 중소기업 협력기관(인천경제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됨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의 경영자문단>**

- 대한상공회의소 소속의 경영자문단은 중소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경영전략, 마케팅·판로개척, 세무·회계, 인사·노무, 생산·품질관리, 정보화, 기술개발 등 분야별로 온라인·FAX 등으로 신청받아 상담
- 2012년 현재 110여 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1&mobile&categoryId=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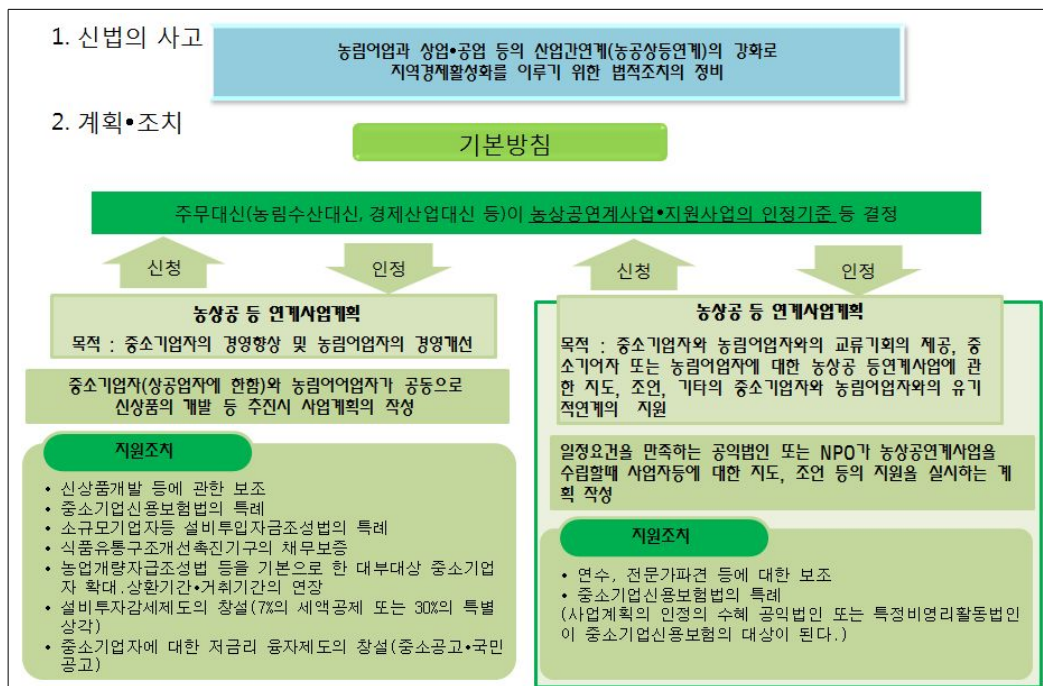
- 사업주체에 속한 직원에 대한 마케팅, 회계, 홍보, 지역내 협력에 대한 교육
  -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내 관련 대학 등과 협력하여 마케팅 능력 함양
  - 관련기업들과의 협력

**바. 농어촌협력체계 구축**

- 지역 농공상 협력체계 구축
  - 지역내외 농공상 협력체계 구축
  - 향토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농공상 협력체계 강화
  - 지역의 농공상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단위의 농공상 협력의 장인 농공상협력위원회 구성
  - 지역협력코디네이터 육성

- 일본은 2008년 농상공연대를 출범시켜 농공상 협력을 추진하며, 지역단위의 농공상협력코디네이터 육성에 신경을 쓰고 있음

그림 5-6. 농상공 등 제휴촉진법의 개요



자료: 김용렬 외(2011)

○ 정부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시·군단위의 “농어촌산업육성조정위원회” 구성

- 농어촌산업과 관련하여 단일 시·군 지역에 다수의 정부사업을 유치하게 될 경우, 자동적으로 “농어촌산업육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내용 조정을 통해 중복투자 방지
-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도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추진단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시 중앙정부 담당자도 포함
- 정부사업의 특장단점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하도록 투자내용 조정
- 설문결과, 농어촌산업육성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향토산업육성조정

위원의 필요성에 대해 보통이상의 긍정적 답변이 90.6%. 특히 향토산업 전문가들이 시·군공무원이나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보다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음.

표 5-8.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개최 시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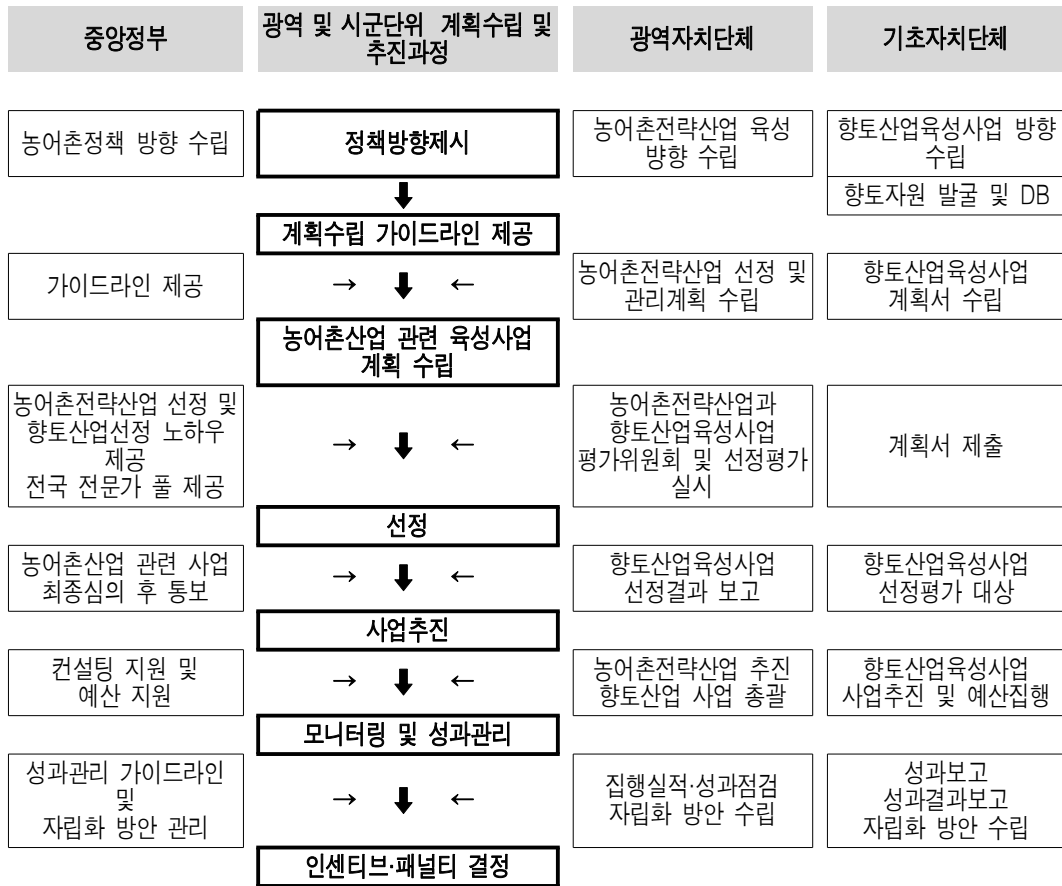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응답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전체	528	1.3	8.1	27.5	50.8	12.3
시·군/시·도 공무원	148	2.7	12.2	36.5	43.9	4.7
향토 산업 전문가	177	0.6	2.8	18.6	56.5	21.5
참여기업 및 실무추진단장	203	1.0	9.9	28.6	50.7	9.9

-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통한 농어촌산업체계 구축
  - 전후방 연계 강화 유도
  - 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향토산업 육성



그림 5-7. 중장기 농어촌산업화 지원정책의 추진체계



## 참고 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보도자료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 선정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11. 보도자료 “사업참여자간 갈등으로 향토산업육성에 애로”
- 강현수. 2002. “최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 환경논총 제40호
- 권오혁. 2005.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7권 제4호.
- 권오혁. 2007. “참여정부 지역산업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분석”. 경제와사회 통권 제75호.
- 김덕호. 2007. “농촌산업정책 추진방향.”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김병률 등. 2012. “201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망”. 「농업전망 2012(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준. 2007.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지침(안).”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김영수 등. 2007. 지역산업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지역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김영수 등. 2010.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연구」. 산업연구원.
- 김용렬 등. 2011.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원 실효성 확보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렬. 1997.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역산업정책”. 노동문제론집 제13편.
- 김정섭 등. 2012. “농어촌 지역의 인구·산업·일자리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2(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호 등. 2007a.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 행정자치부.
- 김현호 등. 2007b.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현호·한표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 경·구자인. 2006. 중앙·시·군 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등. 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주영 등. 2007. “신활력사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농촌경제」 30권 1호.
- 손상락. 2005.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신활력지역 정책에 관한 고찰.” 「경남발전」 통권72

- 호. pp7~23. 경남발전연구원.
- 송하율. 2007. 지역전략산업 지원사업 성과제고 방안. 산업경제분석. 산업연구원
- 성주인·송미령. 2007. 농산촌의 어메니티 창출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우윤석. 2004. “기존 낙후지역정책의 반성과 신활력사업의 추진방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10월호, pp.41-51.
- 윤성호. 1996. “경제구조와 지역산업정책 방향”. 산업경제연구 제9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 이동필 외.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4.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5. 「농촌지역 2·3차산업 활성화 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 이동필 등. 1996.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농공단지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1997. 「농어촌부업단지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격차의 실태와 원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6. 「농어촌지역개발·복지분야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농림부.
- 이동필. 2007. “향토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이동필 등. 2007.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평가·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평가지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등. 2008.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원섭. 2012.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어촌정책이 추구할 새로운 가치 포럼 자료집」 D3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장재홍 등. 2002. 「지역산업정책 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IT, BT, NT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연구원.
- 조상필. 2007.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전남발전연구원 <리전인포>, 제112호. 2007.
- 최양부·김형모. 1980. “농촌공업의 개념과 농촌공업개발의 의미 - 농촌공업개발정책의 이론적 기초”. 농촌경제 제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호중. 2007.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방향”.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방향 및 향토산업육성사업 교육 교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농림부.
- 통계청. 2012.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 통계청. 2008. 200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09. 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10. 200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08. 2007 광업제조업조사통계  
통계청. 2009. 2008 광업제조업조사통계  
통계청. 2010. 2009 광업제조업조사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 보도자료 “기업주치의센터사업」1년간 중소기업 성장 쑥쑥.  
한표환 등. 1999.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Adams, F.G. and L.R. Klein, 1984, Industrial Policie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An Economic Perspective, *The Economic Journal* 94(375): 685-686.
- Berbman, E.J. and E.J. Feser. 1999. Industrial and Regional Clusters: Concepts and Comparative Applications. Regional Research Institute(Web Book).
- Braczyk, H-J., P. Cooke and M. Heidenreich(eds.). 1998.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Role of the Governances in a Globalized World*. UCL Press.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6.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6*. Countryside Agency.
-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2007. *The State of the Countryside 2007*. Countryside Agency.
- Cooke, P. 2002. *Knowledge Economies: Clusters, Learning and Cooperative Advantage*. Routledge.
- EEAG(European Economic Advisory Group), 2008, *EEAG Report on the European Economy: Europe in a Globalised World*.
- ERS(USDA), 1998, "Rural Industry Issue", *Rural Conditions and Trends*, 8(3).
- ERS(USDA), 1999, "Rural Industry Issue", *Rural Conditions and Trends*, 9(3).
- EU D-G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2007. *Rur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07*. European Union.
- Food Valley. 2010. "Food Valley Where Food Ideas Grow."
- Hassink, R. 1999. "Technopoles: A Policy Concept at the End of its Life Cycle?" 「과학기술정책」 9(3/4): 45-61.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Johnson, C., 1984, *The Industrial Policy Debate*, Ics Press.
- Kotler, P., D.H. Haider & I. Rein. 1993. *Marketing Places: Attracting Investment, Industry, and Tourism to Cities, States, and Nations*. Free Press.

- Kuhlman, J.M. 1953. "Notes: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5(3): 436-438.
- Lee, Dongphil. 2001. Lessons and Experiences from Rural Transformation: Diversification and Employment Creation. ADBI Seminar. Jaipur. India.
- Lundvall, B-Å. 1996. "The Social Dimension of the Learning Economy". *DRUID Working Paper* No.96-1.
- MacKinsey and Company. 1994. Lead Local Compete Global: Unlocking the Growth Potential of Australia's Regions, Final Report for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Regional Development.
- OECD, 1983, Positive Adjustment Policies: Managing Structural Change.
- OECD, 2000, *The service Economy*.
- OECD. 2005. *OECD Regions at a Glance*.
- OECD. 2007. *OECD Regions at a Glance*.
- Pine II, B.J. & J.H. Gilmore,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and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Porter, M.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 Porter, M.E.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6(6): 77-90.
- Power, D. & A.J. Scott(eds.). 2004. *Cultural Industries and the Production of Culture*. LD & NY: Routledge.
- Queensland Government(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2005. "Rural Industry action Plan 2004-2007."
- Queensland Government(Department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2008. "Industry action Plan 2008-2010: Rural Industry."
- Research International Ltd. 2006. *England Leisure Visits: Report of the 2005 Survey*.
- Robock, S.H. 1952. "Rural Industr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Journal of Farm Economics* 34(3): 346-360.
- Robyn, Shelley. 2006. Conversion of Building for Establishment of a Winery and Cellar Door.
- Scott, A.J.(eds.). 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Scott, A.J. 1988. *New Industrial Spaces: Flexible Production Org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Pion Limited.

Shapiro, H. 2007. "Industrial Policy and Growth." *DEAS Working Paper No.53*.

大内力. 2000. "食料・農業・農村基本法をどうみるか". 大内力 編輯代表「新基本法-その方向と課題」. 農林統計協會.

農林水産省. 2011. 「食料・農業・農村白書」.

農林水産省. 2012. 6次産業化支援策活用ガイド. 2012年7月版

山形縣. 2010. 「あなたもチャレンジ! 農家民宿」.

<http://gt-yamagata.com/04gt/100805.pdf#search>

[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gt/yokaho.html](http://www.maff.go.jp/j/nousin/kouryu/kyose_tairyu/k_gt/yokaho.html).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に関するプロジェクトチーム, 「都市と農山漁村の共生・対流の第一層の推進について」, 2005.

株式會社農林漁業成長産業化支援機構法の概要

<http://www.maff.go.jp/j/press/kanbo/kihyo01/pdf/121010-02.pdf>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1&mobile&categoryId=233>

## 부록 1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건의사항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예산 증대 및 사업비 모니터링	지원자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강화
	10억/년의 예산과 3년은 지역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부족함 3+원 총 50억 이상 예산 투입으로 기반구축과 성과활용 확산 모델 구축 필요 산관학연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원시스템 구축.
	낙후된 지방에 지속적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도모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지원이 필요함.
	사업기회에 대한 설명과 자금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
	향토산업의 진문화 및 소득과 연결하는 방법 및 사업비를 평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향토산업이 마을 및 지역 기업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함.
	예산지원의 원활화.
	좁은 지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필요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된다. 창업 3-5년 이내 기업이나 창업할 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보조사업비를 늘려서 자본보조비율과 경상보조비율을 6:4로 하였으면 사업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자금을 대폭 증가 지원하고, 사업기간이 더 길어져야 한다. 향토사업이라고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 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사업만 집중지원 육성해야 한다.
	선정 범위를 넓히고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상황에 맞게 세부 사업 내용과 경상비 운용 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결상적경비의 포괄적 사용.
	운영자금 필요.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필요.
	지역 농특산물의 발전과 생산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자립화 추진을 위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공동체 의식 및 동참할 수 있도록 1차 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공장 건설 등 하드웨어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 건축비 예산의 집중배정이 필요함.	
사업수행자에게는 보조금의 성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임. 사업비라는 개념이 사업 수행자에게 매우 희박함.	
사업비가 경상적경비 50%, 자본보조 50%로 집행계획 편성되어있어 신규사업자가 사업추진 시 부담이 있으며, 사업비 편성 시 경상적경비 30%, 자본적경비 70%정도로 편성해서 사업자들의 기반이 안정되게 구축되어야 영세한 사업자가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됨.	
역량을 갖추지 않은 지역 리더와 농업경영체가 가장 큰 문제. 타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에 예산 집행을 개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예산 증대 및 사업비 모니터링	50:50의 S/W와 H/W의 사업계획을 S/W 40%, H/W 60%로 조정해야 되고 사업계획을 주 사업자와 사업단이 함께 논의하여 현장의 현실을 살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방비를 없애고 자부담은 20%로 해야 하며 지방비가 있으면 시군의 예산을 받아 세워야 하므로 제때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부담이 2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0%부가세 환급이 있어 실제로 10%의 부담을 하게 되는데, 하나도 내지 않게 되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없어지고 10% 이상이 되면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업의 주체(농산물, 공산물 등)에 따라 기간과 금액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 수익 등 결과물을 내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진척되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두었으면 함.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이전에 예비단계를 두고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계획의구체화를 평가하여 본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역의 유관기관 농협. 산림조합 등과 협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 후 예산반영 필요
	사업을 완료하기에만 급급하고 활성화엔 미흡하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보성농차와 같이, 산학연관 및 민간단체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 조성 사업제안의 자율성과 주민의 자발적인 발의유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지역민 중 극히 일부가 참여하는 상황을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됨.
	- 향토산업육성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홍보강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평가기능의 강화.
	사업 선정에 있어 보다 폭넓은 조사와 대상 아이템 선정에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홍보강화 및 발굴지원, 확대, 주민참여 유도	사업단계별로 단위 사업 추진이 필요함. 예)제품개발 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도에 단위사업계획이 모두 나와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짐.
	사업추진단의 법인화가 분명해야 사업종료 후 지속성이 담보됨.
	1. 해당지역의 향토산업에 대한 명확한 지정과 지역내외의 주민 및 소비자가 잘 알수 있도록 홍보. 2. 해당지역의 향토산업에 대한 산학관민의 연계와 인프라로 일관성있고 꾸준한 추진으로 성공화
	지속적인 홍보, 지역민들의 참여의식 고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지역혁신사업 가운데 가장 의미가 큰 사업이다.사업규모는 크지 않아도 지역사회 특히 농촌의 변화에 씨앗과 같은 역할을 했다. 성과가 백퍼센트가 아니라 10%에 미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이다. 다만, 지역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끈임없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역내 주민들간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개인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비효율적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민관의 이해도가 높아가고 아직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본 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 향토산업육성에 관한 사업을 더 많이 늘려서 지역 산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토산업사업이 완료된 후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함으로 관련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별 보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홍보 및 제품 대중화 필요.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육성보다는 증진시켜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사업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전문가 투입 및 컨설팅 제공	각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 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직원의 마인드 부족과 영업능력의 한계이다. 결국 자립화 를 위해서는 자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 후 지속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인재영입과 마케팅능력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특이사항 없으나,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 도 많은 홍보와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 봄.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
	앞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 확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지역별 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매스컴을 통한 홍보).
	지속적인 홍보 및 제품 대중화 필요.
	주민 참여를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 조직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추진해야 함.
	시장성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가 있어야함.
	평가단의 질적 저하 중간집행기관 담당자 자질부족.
	지속적인 지원계획이 필요(컨설팅, 운영비 지원 등).
	자부담 부분 부담. 결국 자금력있는 사업자에게 유리. 마케팅 등 지원 확대.
	실질적인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실적평가 및 컨설팅, 모니터링, 워크숍 등 많은 체계를 갖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수도 있으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이 여러 단계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거치면서 왜곡될 우려도 있음.
	향토산업 육성 자체가 일 지자체 일 테마로 지원하기보다는 테마중심으로 여러 지자체가 컨소시 엄을 구성하는 방법, 혹은 한 지자체에 두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 등 모니터링과 지원제도 컨설팅이 지속적으 로 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상품성 사업성이 높은 업종위주로 선택과 집중육성 이 필요함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컨설팅하여 사업의 리스크 대응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외적인 형식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문가나 기관 선정 규모가 크다고 컨설팅이 잘되는 것은 아님(지원 규모가 작아 큰 컨설팅사들은 열의를 갖기 힘들) :선정기준 개선 필요.
	사업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사무국을 운영하여 사업종료 후 조직이 거의 와해되는 현상이 심한데 이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3년간 전문컨설팅업체들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해 전 문인력 육성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컨설턴트 및 전문가 선정에 있어 지식전문가와 지역 내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그룹으로 선정하여 야 하고, 지자체 및 사업선정지역에게는 담당 컨설턴트 그룹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의무화하여 1회성 컨설팅이 아닌 지속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함.	
3년동안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단가 완전히 자립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실적위주의 평가도 중 요하겠지만 자립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이 훨씬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3차에 걸쳐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매회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 제출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사업단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 이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인 컨설팅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서를 토대로 수정된 면을 표기하여 필요한 부분만 제출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개발과정에 있어 지속적 컨설팅이 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전문가 투입 및 컨설팅 제공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자문 및 컨설팅, 평가 등을 전문가들이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문가적 방법에 너무 치중하여 진행되다보니 지역의 사정이나 현실이 잘 고려되지 않음.
	사업종료이후 정산케도에 도달 시까지 지속적인 컨설팅과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획일적인 서류 평가가 아닌 사업컨설팅으로 사업 지속가능 유무 판단 및 지원.
	컨설팅 같은 걸 할 때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사업에 맞는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 주었으면 한다.
	기업화 부분에 대한 전문가풀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1.향토산업육성사업에 기업경영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활동이 요구됨. 2.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과학적 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체계적 교육/자문 시스템 도입.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대상 선정에서 사업주체의 확실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사업전년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체적인 컨설팅보다 향토사업 사업장 별로 전담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이 실시되어 내실화를 다졌으면함.
	농협과 연계한 지역내 물류, 유통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체계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향토산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이 필요함.
	모든 사업의 성공은 어떤 경영자 또는 리더를 뽑느냐에 달려있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책임감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데 현행 사업 심사평가에는 이 항목에 대한 중요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낮다. 또한 마케팅 전문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조직과 지역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 교육이 필수적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예산과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듯 하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다보니 각종 부조리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부실화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컨설팅 기관 선정은 공신력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토사업의 대부분이 식품관련 사업이므로 컨설팅 전문가 구성에 식품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향토산업의 육성은 결국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나 사업을 시행할 사람들의 능력 차세, 기술, 경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결려된 상황에서 과시적인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봅니다.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가들이 해당 지역에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에 있어 형식적인 컨설팅이 아닌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홍보마케팅이 부족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해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1.전반적인 사업의 특성 및 이해도가 높은 평가위원의 역량이 필요. 2.수익금위주, 매출금액 등의 평가는 3년동안의 공익적, 공공적분야 지원사업과는 다소 모순이 됨.
	1.해당지역의 향토산업에 대한 관련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조직적인 협조 기능, 운영체계 활성화 2.해당지역의 향토산업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사업성평가, 사업전행단계별 전문가 운영 활성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련전공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방위산업체로 인정하여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면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모니터링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올바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구성이 아닌 실질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특히, 운영위원회구성에 의해 관련 공무원들 최대한 배제하여 개인적인 사건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전문가 투입 및 컨설팅 제공	중앙지원 컨설팅 지원은 바람직하나 관련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사건과 전문적이지 못한 의견 제시로 인해 사업 추진에 혼란을 빚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컨설팅다운 컨설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특히, 향토산업의 경우 생산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농산업 전반에 걸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함에 불구하고, 단위사업중심의 컨설팅만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체계성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성과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함. 따라서, 컨설팅 분야만큼은 3년간의 계약제도를 통해 외부인의 개입없는 체계적인 컨설팅이 요구됨.
	전문가 컨설팅 그룹이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향토산업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향토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의 성공사례에 대한 정보를 지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 시에도 컨설팅 기관의 입김이 너무 반영되고, 획일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같은 종류의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향토산업은 새로운 문화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와 적절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계를 나누어 예를 들어 씨앗 새싹 연구재단의 예) 등 단계별로 지원을 늘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시효과를 위한 정책보다는 기업체에서 만족하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컨설팅 및 기술지도, 교육과 이에 맞는 각 분야별 역량있는 전문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례집 발간, 사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향토산업육성사업 전문가 컨설팅 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 컨설팅 요망. 예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방법 등 제시.
	향토산업 예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권한 부여가 필요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으며, 농어촌에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적부분은 행정주도형으로 전환 필요/ 사업단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필요.
	선정, 평가 등 주요관리는 도차원에서 하고 중앙부서는 지원과 제도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컨설턴트 참여기회 확대 요청 합니다.
	해당 시군의 적극적 참여 의사와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함.
	향토산업육성으로 성공한 경우가 일본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육성방안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하고, 지역사회에 속해있는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50,60대의 시니어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향토성을 살리는 방안 검토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전문가 풀을 등록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한방법일 수 있다.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 책임감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주요한 팩터가 될것이다.
	지역별 우수성공사례 구체적 기본자료 필요 - 지역 환경요인, 역량분석자료, 위기 극복 사례 등 타지역 향토산업과 정보 및 자료공유.
향토산업예산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 자체 권한 부여가 필요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쉽지 않으며, 농어촌에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인적부분은 행정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 필요 / 사업단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필요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유사한 추진 사업장 간의 정보교류.
	향토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지원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며 이들 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마케팅 정책 추진이 요구됨.
	향토산업육성사업 초기 사업계획 단계 시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컨설팅 필요. 또한 사업시행 중간에 나타나는 내부갈등에 대한 조정기구 필요(중앙부처의 강제성 필요).
	사업 완료 후 사업추진에 대한 컨설팅 실시.(전문가의 전문적인 컨설팅, 사업비 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취지나 체계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단 ,지자체의 시, 군의회 의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주기적인 설명회나 워크샵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나 보조금의 지원보다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역량강화가 중요.
	담당공무원 및 사무국장 실무교육 기회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부 지역특화 선도기업 등 유사사업과의 정리가 필요함.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일부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음.
	향토산업 육성 시 지역민의 열의, 담당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고취시킴이 필요.
	워크숍을 자주 열어서 정보제공, 교육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하면 좋겠다.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족한 시군은 교육역량강화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잘 되는 시군은 계속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농촌지역을 균형화 그리고 특화사업군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컨설팅을 자주해 주시고 참여업체 및 담당공무원 등 소규모교육이 집중 필요함.
	전문가 육성.
	현재 지자체의 역량이 향토산업육성사업을 기획, 실행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으나 이와같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클러스터 사업에 익숙해지도록 지속적인 자극과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 참여사업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매년 향토사업단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해당지역의 향토산업에 대한 관련지자체 및 생산자, 유통업자 등에 대한 사업화교육의 활성화.
	H/W 사업부문 지원비율 확대 및 지속적인 사업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자 역량강화교육 기회 확대.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해당지자체장의 의지 ,지역주민들의 동참 ,정부의 지원 ,관련단체들의 협력 등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관계자들의 교육훈련이 필수적이어야함.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유통, 마케팅, 홍보 등에 지속적 지도와 역량강화가 필요.
	지역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의욕 고취 등 지속적인 지원 필요.
	주민들이 적극참여 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부여.
본 사업은 복잡한 추진과정 등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곳저곳의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사업비가 큰 규모에 속하므로 담당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필수이지만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임에도 절차과정, 사업단 운영체계 확립 및 운영 ,예산집행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음 ->세부적인 매뉴얼화 및 체계화 /전문 코칭이 필요함 사무국요원들도 지방에서는 기대만큼의 전문가들을 찾기 어려움 /HW분야에 있어서 NIMB현상으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토지를 포기하고 새로운 토지를 물색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아 갈등 해소를 현장에서 진행하기 어려움->갈등조정위원회 등 코칭 또는 자문가 필요 (매우 어려운 부분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사업기간내 공무원의 인사이동 자제	사업계획 수립에서 부터 실행까지 과정과 절차, 구성 등이 복잡하고, 지자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이 결여, 추진에 애로가 많음.
	인사이동이 잦아 시군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으니 업무 담당자와 사무국장들의 업무 연찬을 상, 하반기 각 회씩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 향토산업 육성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잦은 인사로 3년간 수차례에 걸쳐 향토 담당자가 바뀌어 사업 진행이 더디지고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예를 들어 7급이상 사업 경력있는 담당자) 사업계획 초창기부터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동이 잦아 시군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으니 업무 담당자와 사무국장들의 업무연찬을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복지부동, 전문성부족, 책임회피로 인하여 향토산업을 근본적으로 망치고 있어서 보조 사업자들과 중앙정부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킹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업에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의사항, 문제점 개선 필요하며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 성공성 여부 검토하여 계획수정 등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어느 정도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의 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과 창출이 가능함.
	-향토산업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화 (우수) 자원을 2, 3차 산업으로 승화시켜 당 지자체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1차 농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고 이를 관광산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자원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경제활성화라는 점에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의 보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각 1) 철저한 사업계획이 필수; 사업계획 시에 당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에 따른 사업 내용, 추진전략, 추진방법, 등 (자립화방안 포함)을 명확히 하여야 함 (많은 지자체는 그러하지 못함) 2)추진주체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백을 해결하여야 함 (개인적인 생각은 지경부와 같이 추진 주체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함) 3)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재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의 지속성 및 성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관련 정책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역의 미래정책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관심이 중요. 무엇보다 미래기술과 미래산업에 대한 미래예측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부터 잘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효율성과 실효성을 짚어서 개선할 점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 향토산업육성사업 기획과 평가에 참여할 자문그룹 구성을 분야와 직종을 폭넓게 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농촌어메니타자원을 폭넓게 깊이있게 활용할 새롭고 미래의 농산촌발전전략을 잘 짜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 지자체장이나 사업추진자의 꿈에 불과한 것이라도 실현가능성 투자성과확득이 매우 어려운데도 사전에 이를 거르는 과정의 효율이 매우 낮은 점 등 사업의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체적인 실제 사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요구됨. 기획/초을 선정 자금지원 천방위층면지원제도 마련 옥석 중 옥은 추후 확대지원하여 성공사례의 교본으로 삼는 작업등 전문화 요구됨.	
참여기업, 지역주민 등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 광역시도 단위의 교육이 필요하며, 사업초기단계부터 시행, 완료 단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가 필요함. 서면 모니터링 보다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향 컨설팅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바른 길잡이가 필요함.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사업에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지금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각적으로 종합 분석하고, (예시) 1.사업계획서 상의 예산 등: 공동 항목의 방법(조직, 인건비, 홍보 항목 등) 명시하는 가이드 필요 2.컨설팅 프로그램 및 방법론 개발: 현재 여러명이 2시간 내외의 컨설팅 모니터링 방식의 개선 3.공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공무원 조직, 사업단 조직, 담당자 조직 등으로 계층별 프로그램 개발 등.
	지자체별 비교우위 향토자원 확보 및 명확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사업의 일관성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획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
	철저한 현지 실사 및 사업계획을 통해 선정.
	향토산업시행지구별 담당 유통전문가 연계추진 /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지침마련 /사업단장 보수지급으로 책임감부여 / 사업주체를 여러기업의 참여보다는 1~2개 기업위주로 사업추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돈을 벌기 위함인데 If제로 전문경영인, 경제인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서류상 계획과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향이 있음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자문이 이론적인 자문이 아닌 첨부자료 조직화 등에 치우친 돈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기존의 지자체 추진사업에 확대 내지는 지속도 필요하다, 단체장의 개인 차원의 지원사업화를 우려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주체설정이 모호하고 주민의사 반영은 형식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시스템 운영이 반드시 되도록 하여 과제비 낭비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향토산업육성의 미래전략은 마을기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 정책입안이 바람직하다.
	각 지역마다 향토자원의 성격이 다를 수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산업적 수익률을 가치로 여기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수익률보다는 그지역의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으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평가 시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환경자원의 특성과 추구하는 가치를 확실하게 독창적인 성과도출에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염려됨.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하여 지역연구소 및 민간단체 컨설팅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요구.
	지방비 비율을 낮추어 지자체부담을 줄여주시고 사업계획신청에 대한 사업선정 시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안배 검토 요망.
	획일적인 예산편성(H/W, S/W)을 지양하고,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단기간에 도출될 수 있도록 규제와 간섭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향토산업육성사업 실무담당자에 대한 시기양양 차원에서 특혜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찬성한다.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사업 확정 전 몇몇 지자체(우선순위가 높은 곳)를 대상으로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사업계획 컨설팅이 선행되어 지역에 높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기초단계를 다질 수 있으면 한다.
정부부처의 다른 사업과의 사전 연계성 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다수가 참여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수가 주도한 일회성 보조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역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를 통합하여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정책 및 각기 다른 육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지원 관리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사업에 사전 및 사후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	향토산업 의미만큼 중앙정부에 직접 지역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사업주체들의 협조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한곳의 사업 주체가 지나친 권한을 발휘하여 사업의 목표를 가로막는다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업의 평가나 사업시행 중의 감사 등에 너무 많은 부담이 됨 /평가방식 변화요구 :연차평가는 사업 시행중 상당한 부담이 되어 실적내기에 급급함. 3년이 지나고 3~4월에 사업의 성공여부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사업계획서 승 인시 철저히 조사 등 지침, 규정에 의거 산업화 방안 모색 필요.
	진정성평가(정량적, 정성적)System (동어촌 기업의 열악한 재무 상태 ) 지속적 관심 및 관리 지원 필요.
	3년의 사업수행기간이 짧아서 성과 분석, 자립적 운영체계 확립이 미흡하므로 종료시점을 약간 연장하여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업비지원 3년, 피드백 및 애로사항해결 지원 1년 후 사업종료)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인력양성, 고용창출, 체험프로그램수립 등) 그러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와 같은 지표들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모든 사업을 정해진 틀 안에서 컨설팅하지 말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십시오.
인센티브 지원	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및 효율적 예산집행 시스템 구축이 절대 필요함 지나친 보고서위주의 컨설팅 지양 필요- 성과에 연동되는 평가시스템 필요 (KPI)운영주체들의 사전 사후 교육시스템 절대필요 행정에서의 잦은 업무담당자 이동 지양 예산집행의 경직성 조정 필요 도덕적 해이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내에서) 협력파트너 (디자인 광고 세무 마케팅 등 회 자질검증과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필요 사업성과에 따른 사업비 가감정책 필요 사업진행에 따른 협조성 교육이수실적 /기타 노력의정도 등)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회의 필요 사업대상 업체들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 등입니다.
	사업성과 평가 등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하여 지방비 매칭 원칙을 완화하여 새로운 분야 또는 보완에 자유로이 지원되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인센티브를 받아와도 지방비확보가 어려운 지자체가 있다고 함.
	향토산업(중소범위의 지역특화농산물 대상)-전략식품산업 중대규모의 지역특화농산물 대상 호로 구분하여 상호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나타날 때, 해당 지자체와 사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고부가가치, 시장성이 있는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하여 적극적지원이 필요함.
	사업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이 필요하며, 최대한 노력에 대한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가 필요함.
	담당공무원의 인사배제 및 인센티브 지원 필요.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한 필요(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지원	3년동안 연간 규정된 예산계획이 아니라 사업단 특성에 맞는 원 전체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 사용 내역만 관리를 하고 성과평가는 사업 종료인 1년 후 종합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 지급은 사업을 1~2년간 연장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한 필요(인센티브 지원) 및 사업추진의 사업단 권한 완전 위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정확한 기준 적용 및 평가 방식의 메뉴얼화	형식적인 산학연관 협조체계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이 된다면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미래지향적인 전략보다는 그냥 혜택을 향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선정할 때 장래성이나 목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식적인 평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추진단에서 이해하기 쉬운 자세한 메뉴얼 수립.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 지침서가 있었으면 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초기부터 구체화 로드맵 작성이 필요.
	자립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또는 강제적으로 지침에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평가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차원에서 시정되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함.
	1.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명확한 시행지침 필요 2. H/W에 대한 비중 일정 증가 필요 3. 신규로 가공공장 설립하는 시군에서는 가공식품 판매 실적이 적어 평가 시 상위권 진입이 힘들 .평가를 사업 완료 후로 하였으면 함.
	사업 선정 및 시행 시 민간인중심의 사업단 사무국장, 사무원에게 공무원 수준의 사업비 집행(회계규칙, 계약, 여비규정 등) 규정등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너무나 어렵다. 물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관련 법, 법령, 시행규칙 등을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따라서 향토산업 보조금 집행 기준 등 지침이 필요함.
	관계 공무원과 실무 추진단 책임자급의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이 있었으면.
	수시 문제집(주의할 점)과 성공사례 위주 교육, 사례집 발간 /수시 지도 점검, 교육을 통하여 즉시 방향설정 및 시정조치 /지적재산권 사용 등 사례집 발간 배부.
	정확한 메뉴얼이 필요. 금기사항 같은 제한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
	향토산업 추진 시 적용할 메뉴얼이 필요함. 같은 문제로 여러 사업단에 문의하면 각각 다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함. 다각도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필요함.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민간자본보조(기반시설): 원중 1원차에 집중시킬 수 있는 예산배분이 요구 /연차평가 지양: 1년차 사업 시 주로 사업단 구성, 공장설립 및 상품개발 등의 기초사업에 역집, 이에 1년차에 당장 매출 등의 평가항목은 부적절함.
	정확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 지역자율적 운영이라면 규정없는 것은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게 승인절차를 풀어 주어야 한다.
	일부는 시행지침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해당지자체의 책임자급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한 사업추진이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그결과 관련 기업은 물론 생산자단체들과의 마찰이 많아 이에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함.
	주관기관에 자율권을 확보하여 주고, 지표도 간결하게 하였으면 한다. 대부분의 정부수행이 이쪽 저곳에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서 성과지표가 과도하게 흐르는 경향이 많음.
	매년 평가방식과 지침이 다르게 내려와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많은 부담이 됩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시행될 때부터 정확한 평가방식과 지침이 정해져 있었으면 평가방식 및 지침 등이 변경되는 일이 적었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한지 1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진행하는 실무자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침 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현재가 많이 다른)	
향토산업육성사업 초기 참여업체가 선정된 후 향토산업육성사업 기간 도중에 참여업체를 늘린다는 명분 아래 참여업체를 더 선정한다는 것은 기존 참여업체가 원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축소될 확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도중 참여업체 수를 늘려 기존 참여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위축되어지는 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탄력적인 사업기간 운영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 사업이 시행 되고,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과부분에서는 얼마큼의 성과가 있는지 많은 성과가 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내부 평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사업비, 사업기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 됨.
	중간평가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탈락시키는 제도 필요함.
	사업수행 기간이 3년으로 짧아 사업비 지원 및 수행 3년, 피드백, 컨설팅 원 후 평가로 변경 실시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종료되어도 자립 기반이 취약한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사업계획과 실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동안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서에 음식점 지원이 불가해졌기에 사업 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연되어 사업에 차질이 있음)
	3년의 사업수행기간이 짧아서 성과 분석, 자립적 운영체계 확립이 미흡하므로 종료시점을 몇간 연장하여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사업비지원 3년, 피드백 및 애로사항해결 지원 및 후 사업종료).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원하고 평가를 철저히해서 목표대비 달성이 미흡한 사업단은 지원 자금을 일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함.
	사업평가를 3년 종료시점에서 실시하고 인센티브는 사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종료 2년 정도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함.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함.
	사업기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함.
민간주도 육성 및 자율성 보장	사업계획변경이 자유롭지 못함.
	사업의 주체와 지원조직간의 경계불분명. 이는 이해당사 그룹간의 책임회피와 연계. 따라서 파트너십 관계의 구축과 효율적인 작동원리 필요.
	-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비율을 사업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함 - 성공적인 사업추진모델을 개발할 것.
	사업 수행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사업 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업자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범위 내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항목 자율변경 가능 권한 위임.
	인사이드가 잦아 시군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으니 업무 담당자와 사무국장들의 업무연찬을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초단계 지원 후 자발적 능력배양이 가능하도록 전략구상이 필요함. 즉 지속적인 지원은 자생력 한계에 직면하게 되므로 일정단계에 이르면 민간주도로 운영되도록 정책방향 설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어촌계원이나 비영리법인체등을 중심으로 향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현행규정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비율이 예산의 20%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므로 참여구성원이 6억원과 운영경비를 충당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2.보조사업자의 자부담문제는 지자체의 통제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파트너십을 의무화하여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실행.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시군의 자율적 사업선정 필요.	
지자체의 자율성,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민간주도 육성 및 자율성 보장	어느 정도의 자율성 보장.
	실제적으로 향토산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개별에게 주어진 혜택보다는 기술개발과 제품화, 시설설비의 확충 등 실질적으로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에 전문가 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의 생산량과 소득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향토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리더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행되면 좋겠습니다.
	자율성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규모화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중앙에서 공모방식을 계속하거나, 시도자율평성 형식의 포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시도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시도의 역할이라 함은 농정과 담당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도발전연구원, 지역에 헌신적인 인근 대학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로서 향토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관련 주민과 업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역에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으로 지역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사업단 운영에서 관의 개입을 최소화 -사업단장 및 조직구성은 민간이 담당하고 관은 최소한의 인력배치로 사업추진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
	지역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으면 함.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향토산업은 아직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관리 및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단의 구성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편성이 요구됨.
	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 부여 및 집행 기준에 대한 비율 조정이 필요.
	검정허가를 받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 관외 출장 여비를 향토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망함 /향토사업추진에 농림수산물부로부터 규제 조항이 많아 사업추진 곤란: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향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단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각종 계획, 집행, 사후관리 등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해당 법인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폐단이 있다 /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사업체(법인체)설립을 요구한다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들면 30%의 사업자금 중에서 지자체가 토지나 운영경비 등의 자부담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지자체 주도 보다는 민간 주도 육성.
	1.사업의 수행과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서 지자체의 간섭을 가능한한 배제해 주어야한다. 2.사업을 주관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한다.
	중앙지원을 통한 사업으로 중앙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의 자율권 보장.
지역적 특성 반영	각 지역의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한 지원 필요.
	향토산업과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을 부각시키고 지역의 향토산업을 전통산업과 연계하여 발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함.
	향토산업육성은 지역별 특성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에서 유사하거나 동인한 산업은 배제하여 지역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어촌분야 지원필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지역별 재정과 산업 등 특성을 고려한 사업시행이 필요함.
	향토산업 지정부터 지역민의 의견수렴 필요. 대학과 연계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민 자율적 운영방식이 좋음. 더디게 기다라도 자립성이나 지역특성의 반영에 필수적.
	시군별 및 광역자치단체별 향토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필요.
	지방 받는 브랜드상품개발.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특색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교육	유사한 사업장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 중심으로 벤치마킹 유도바람.
	성공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과 사례집 발간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롤모델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한다. 유사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집체교육 등 사업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많이 찾아내어 주위에 알렸으면 합니다.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에 더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업무 연관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및 집행 지침 구축 필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지원 및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의 향토산업육성 실행 주체인 영세한 사업체가 많다. 지속적인 경상비 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향토산업육성사업인 3개년 중심 사업의 종료 후, 평가하여 그 성과의 우수 여부에 따라 계속 지원하는 향토산업육성을 실행했으면 한다.
	사업완료 후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듯합니다.
	사업 종료 후 경상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
	사업 종료 후 정착 단계까지 사업단 운영비 지원 요망.
	사업 종료 후 정착 단계까지 사업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지역 농특산물을 발전과 생산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모와 사업의 관리 필요.
	사업 종료 후 지원이 부족하여 3년의 사업 진행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있음.
	브랜드에 대한 낮은 인지도, 참여단체의 영세성, 부족한 자금력 등 아무리 좋은 제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당장의 눈에 띄는 경영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유통에 대한 지원, 사업종료 후 상업화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오랜기간 성과를 내는 지역사업으로 발돋움하여 지역과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향토산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융합 플랫폼 기반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길 바람.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현장실무위주로 지원되어야.
	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아직도 형식적이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 하다.
	지자체장 및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앙 행정부의 대안 개발이 절실함.
	권한과 책임이 상응하는 사업추진시스템.
	지원사업은 계속되되 좀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을 듯 싶다.
특별히 없으며 지자체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사업내용 이해와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사업 추진 중에 일자리 창출 등 결과물 내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	
대분류	소분류
기타	정책사업 특성상 투명성과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워 운영위원회, 사업추진체계 구성에 사업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사업단장과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상은 본 사업을 수행하여 매출액, 고용창출, 농가소득 창출 등 사업적인 성과를 거두라고 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단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으며, 운영위원들은 평소에 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 않은가요. 그리고 비상근직 사업단장께서 사업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결단을 적절하게 내릴 수 있습니까.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참여기업이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투명성과 사업적 성과창출에 있어서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군간에 유사중복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시/도의 장기계획 속에서 지원도 가능할 수 있음 사업단 구성에서 시군의 역할과 사업단장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함(사업단의 독립성을 보장) 사업단의 자립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사업단 구성원(단장, 사무국장, 이사 등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함 -주민교유도 중요하지만, 사업단 구성원의 의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음.
	지역의 구성원들의 열의와 사업화 할 수 있는 향토산업을 골라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선정되어지고 활성화 하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져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업 아이템 선정, 지원.
	사업참여기회에 대한 공정성 확보 의 필요.
	산학연간의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주관을 하는 일부 산업체의 경우 사업의 전체적 운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업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면 한다.
	자립화 시 지역 향토산업기업의 공동 출자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모방식의 과당 경쟁(형식주의)의 폐해를 보완할 새로운 공정한 선정 방식 공모 +지역향토산업 여건을 고려하는 배려(균형))의 변화가 필요함.
	시군단위에서 광역단위(도 단위)로 향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향토산업 인센티브평가 시 시군비 부담가중으로 평가 회피 공모사업계획서상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지역관광과 연결이 필요.
	소비지역과의 연대 필요.
	좀 더 생산적인 과제가 되도록 해주세요.

## 부록 2

### 설문조사표

<b>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b>	<b>ID</b>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의뢰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추진 현황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제1기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를 기반으로 농어촌산업 및 농어촌지역정책과 제2기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농림수산물부로부터 용역을 발주 받아 연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본 조사 내용은 “어떤 의견이 몇 %”라는 식으로만 집계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책연구부 김용렬 박사

연 락 처 : 전화 (02)3299-4362, 팩스 (02)960-0163 이메일 kimyl@krei.re.kr

### 1.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한 평가

####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

-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 + H/W 포괄지원
- 3년간 30억 원 지원

※ 지역 활성화

문 1. 향토산업육성사업이 귀하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문1-1. 지역활성화와 관련하여 각 부분별로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성과가 매우 낮다	성과가 낮다	그저 그렇다	성과가 높다	성과가 매우 높다
1) 지역고용창출	①	②	③	④	⑤
2) 지역특화산업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3) 지역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농가 소득 증대	①	②	③	④	⑤
5) 지역 사업체 매출 증대	①	②	③	④	⑤
6) 수출 증대	①	②	③	④	⑤
7) 지적재산권 확보	①	②	③	④	⑤

※ 사업규모와 기간

문2. 현재 3년간 30억 원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비가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적정하지 않다    ② 적정하지 않다    ➔

문2-1로

③ 보통이다    ④ 적정하다    ⑤ 매우 적정하다    ➔

문3으로

문2-1. (문2에서 ①,② 응답자만) 30억 원의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30억 원 미만    ② 40억 원    ③ 50억 원    ④ 60억 원    ⑤ 70억 원
- ⑥ 80억 원    ⑦ 90억 원    ⑧ 100억 원    ⑨ 100억 원 이상

문3. 현재 3년 간의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문3-1로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문4로

문3-1. (문3에서 ①,② 응답자만) 3년 간의 사업 기간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년)

※ 지자체 준비성

문4. 귀하께서 판단하시기에 귀하께서 속한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이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5.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그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업기간이 짧아 충분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지원 자금이 부족하여 지역 내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자금 집행, 조직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전문가 컨설팅, 교육, 정보 제공, 모니터링 등 중앙 단위의 사업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지방비 비중이 커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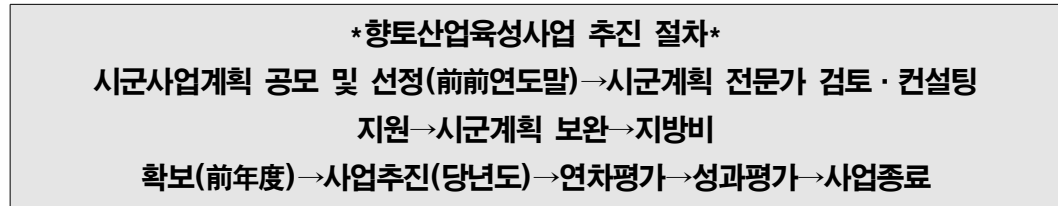
6) 박람회 등 향토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사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 사업의 지속성

문6. 향토산업육성사업에서는 2012년 현재 총 169개의 향토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I.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 프로세스**



※ 공모제 방식의 적절성

문7. 현재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사업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공모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모제 방식으로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 적절하지 않다

➔

문7-2로

③ 보통이다                      ④ 적절하다                      ⑤ 매우 적절하다

➔

문7-1로

문.7-1. (문7에서 ③, ④, ⑤번에 응답지만)공모제 방식이 적절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① 아직 시군의 자율에 맡기기에는 시군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역량이 부족하다
- ② 중앙 단위에서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시군에서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 ④ 중앙 단위의 사업 관리가 성공적인 사업 성과 달성에 효과적이다
- ⑤ 공모제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먹기식 사업비 배분이 될 수 있다
- ⑥ 기타 ( )

**문7-2. (문7에서 ①, ②번에 응답자만)공모제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① 시군 단위의 통합적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을 저해할 수 있다
- ②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 ③ 중앙정부 사업비 확보에만 집중하고 실제 사업 시행에 소홀하게 된다
- ④ 사업 계획 수립과 평가에 불필요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
- ⑤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 ⑥ 기타 ( )

※ 평가의 적절성

**문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시행함에 있어 모니터링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과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추진실적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업 진행에 있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b>컨 설 팅</b>	<b>1) 업무 부담</b>	①매우 부담된다	②부담된다	③보통이다	④부담되지 않는다	⑤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b>2) 적절성</b>	①전혀 적절하지 않다	②적절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연차 평가	1) 업무 부담	①매우 부담된다	②부담된다	③보통이다	④부담되지 않는다	⑤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2) 적절성	①전혀 적절 하지 않다	②적절 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성과 평가	1) 업무 부담	①매우 부담된다	②부담된다	③보통이다	④부담되지 않는다	⑤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2) 적절성	①전혀 적절 하지 않다	②적절 하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문8-1.(문8에서 “적절성” ①, ②번 응답자만)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비교적 단기간의 사업이므로 연차평가는 불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3년은 너무 짧으 로, 성과평가는 기간이 더 지난 후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형식에 치우쳐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평가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아 보 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평가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 |        |           |                |
|--------|-----------|----------------|
| ③ 보통이다 | ④ 준비되어 있다 | ⑤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
|--------|-----------|----------------|

➔ 문12로

**문11-1. (문11에서 ①, ②번 응답자만) 지자체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완전자율적으로 시행하기 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1~3년                      ② 3~5년                      ③ 5~10년                      ④ 10년 이상

※ **중간지원조직**

**문12. 지역 내에서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와 여러 관련 실무 등 향토산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향토산업 육성 전담 실무 조직인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12-1. 지역 내에 향토산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전담 실무 조직을 설립한다면 그 역할은 어떤 조직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 )**

- ① 시·군청                      ② 농협                      ③ 농업생산자 조직  
④ 가공기업 조직                      ⑤ 유통업체 조직                      ⑥ 지역 연구소 또는 대학  
⑦ 새로운 민간 조직 구성                      ⑧기타( )

※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

**문13. 지자체가 유사한 중앙정부 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경우(예를 들어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 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지자체 내에 중앙정부, 도청,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칭 '향토산업육성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된다  
⑤ 매우 도움이 된다

※ **인센티브제 및 자립화방안 실효성**

**문14. 사업종료시점에서 성과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추가 지원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방식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업 시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다음은 인구통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께서 소속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 ⑯ 제주 |      |      |      |      |

**DQ2.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 |          |         |                |
|----------|---------|----------------|
| ① 시군 공무원 | ② 시도공무원 | ③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 |
| ④ 가공회사   | ⑤ 유통회사  | ⑥ 대학           |
| ⑦ 연구소    | ⑧ 농협    | ⑨ 기타( )        |

**DQ3.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              |
|---------------|--------------|--------------|
| ① 1년 미만       | ② 1년 - 2년 미만 | ③ 2년 - 3년 미만 |
| ④ 3년 - 4년 미만  | ⑤ 4년 - 5년 미만 | ⑥ 5년 - 6년 미만 |
| ⑦ 6년 - 7년 미만  | ⑧ 7년 - 8년 미만 | ⑨ 8년 - 9년 미만 |
| ⑩ 9년 - 10년 미만 | ⑪ 10년 이상     |              |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부록 3

##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리스트 비교

향토산업육성사업(11년 종료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11년 선정사업)	
시군	시군	사업내용	참여시군	사업내용
부산			부산, 기장군	미역다시마를 활용한 지역전략식품산업
광주			광주	한국명품김치 산업화
경기	김포	인삼쌀맥주	도내 13개 시·군	명품 경기막걸리 세계화사업
			양주, 포천	경기북부양돈산업 식품산업화사업
충북	보은	보은향토대추산업육성사업	충북, 충주, 진천, 음성	유기쌀 가공식품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충주	신선편이사와 육성사업	괴산, 단양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충남	논산	강경발효젓갈	서천, 보령	명품김 수출산업화 육성사업
	금산	고품질 안전인삼 농식품생산		
전북	고창	향토를 이용한 테마관광	전주, 원주, 순창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사업
	완주	소양철쭉 명품화		
	남원	추어탕 브랜드육성사업	고창, 정읍, 순창	북분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무주	무주천마향토산업		
	전주	전통모주 개발		
전남	강진	웰빙전통도자산업	고흥, 완도, 진도	유자 식품산업육성
	광양	광양매실명품화사업		
	나주	나주쪽진통기술산업		
	담양	담양군 한과 명품화		
	순천	순천만 갈대 산업화		
	영광	영광모시잇송편		
진도	진도 울금(강황) 명품			
경북	경산	맛나베 대추 Fusion Food	청도, 상주	약선가공식품명품화
	안동	천연염색·한지명품화사업		
	영양	고추(씨)를 활용한 R&D사업		
	영주	스타식품개발사업		
	영천	전통염색산업화		
	울진	계(대계·홍계)식품산업육성사업		
칠곡	벌꿀과 차조기를 활용한 제품			
경남	거제	맹종죽관광체험상품화사업	경남, 통영, 거제	명계 부가가치 향상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밀양	얼음골사과명품화사업		
	사천	별주부전테마관광		
제주	제주	제주흑돼지고기명품화육성사업	제주도	제주콩 식품산업육성사업
강원	홍천	홍천잣명품화사업		





---

C2012-28

농어촌산업화 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0.

발 행 2012. 10.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